

통계 88-03
(강의자료)

商 品 學 總 論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目 次

第1部 商品知識의 基礎	7	
第1章 商品·商品學·商品分類	9	
1. 商品의 定義	9	
2. 商品學의 定義	12	
3. 商品分類의 定義	21	
4. 商品分類表의 類型	24	
5. 商品의 二元分類·分類基準·分類原則	28	
第2章 國際共通(統一)商品分類	38	
1. 共通品目表의 歷史	38	
2. 關稅協力理事會	39	
3. CCCN과 SITC	40	
第2部 SITC와 CCCN의 相關係係	49	
第1章 國際標準 貿易分類의 概要	51	
第2章 SITC品目表의 發展沿革	53	
1. 國際統計品目表의 必要	1930年代	53
2. SITC原典의 作成	1950年代	53
3. SITC原典의 改正	1960年代	54
4. SITC Rev.2의 制定	1970年代	56

5 . SITC Rev.3의 制定	1980 年代	57
第 3 章 SITC의 構造 및 特徵 59		
1 . SITC의 定義		59
2 . SITC의 構造		59
3 . SITC의 特色		63
第 4 章 SITC·CCCN·HS의 相關關係 66		
1 . SITC·CCCN·HS의 區分		66
2 . CCCN·HS 와의 連繫必要		67
3 . 用語統一		69
4 . SITC 와 CCCN의 連繫		70
5 . CCCN 해석기준의 採用		80
第 5 章 關稅의 觀點에서 본 SKTC 82		
1 . SKTC의 概要		82
2 . SKTC의 沿革 및 編成原則		90
第 3 部 HS 制度의 概要 95		
第 1 章 HS의 概觀 97		
1 . HS의 定義		97
2 . 統一品目表의 必要		101
3 . HS 品目表의 特色		106

第 2 章 HS 品目表의 構想	108
1. HS 의 開發過程	108
2. HS 의 基本코드	115
3. 品目의 配列	118
第 3 章 HS 制定의 基本原則과 分類基準	119
1. 基本原則	119
2. 分類基準의 例	120
3. 「第 2710 號」와 「第 77 類」	121
第 4 章 CCCN의 改編과 HS	122
1. 概 觀	122
2. 多目的品目表 定立觀點에서의 改編	127
3. 分類의 簡便化·單純化 觀點에서의 改編	130
4. HS 의 主要變更部分	133
第 5 章 HS 의 協約	137
1. 協約의 構成	137
2. 締約國의 義務	139
3. HS 委員會와 잠정 HS 委員會	139
4. HS 의 發効	139
第 4 部 HS 의 品目分類	141
第 1 章 HS 의 3 大構成要素	143
1. 3 大構成要素	143
2. 通則 (GRI)	143

3. 註 (Note)	144
4. 號 (Heading)	144
第 2 章 HS 상 通 則	146
1. 通則의 骨格	146
2. 通則의 適用要領	147
第 3 章 註 (Note)	167
1. 註의 形態	167
2. 定義 規定의 類型 例	168
3. 競合品目의 附屬明示	171
4. 品目分類原則	174
第 5 部 品目分類의 演習	183
第 1 章 H S 의 分類要領	185
1. 問題點	185
2. 分類要領	186
第 2 章 H S 상 紛爭解決	191
1. 概 要	191
2. HS 委員會	191
3. 行政救濟制度	199
第 3 章 演 習	200
1. CCCN 分類상 紛爭例	200

2 . HS 分類상 紛爭例	204
3 . 機械部品의 分類例	214
4 . 實行關稅率表와 HS 補助資料	219

第1部

商品知識의 基礎

第1章 商品·商品學·商品分類

1. 商品의 定義
2. 商品學의 定義
3. 商類의 定義
4. 貨表의 類型
5. 二元分類·分類基準·分類原則

第2章 關稅共通(統一)商品分類

1. 共通品目表의 歷史
2. 關稅協力理事會
3. CCCN 과 SITC

第1章 商品・商品學・商品分類

1. 商品의 定義

一 定義의 多樣：研究者의 立場・研究對象・研究目的

- 經濟學者의 交換理論
- 商學者의 商去來理論
- 法學者의 債權상 契約理論
- 保險研究者의 保險商品論

一 類型

- 商品의 概念에 대하여 「 현대 經濟社會에 있어서 시장의 교환을 목표로 하여 생산하고 그 생산된 財貨가 배급기구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의 過程에 있는 財貨 (goods)를 商品이라 한다 」 유봉노 교수
- 「商品이란 적어도 商人 손에 들어와서 취급되는 모든 貨物을 말한다」 또는 「商品이란 轉賣의 목적으로 산출되어 買入되는 모든 動產을 말한다」 상무달 교수
- 「商品 (Waren, Commodity, Merchandise) 이란 交換 특히 貨幣의 교환용으로 규정된 財貨 (Güter, Goods)이다. 재화는 主로 使用價值로서 관계가 부여된것만이 財貨라 할 수 있다. 그런데 商品은 이 財貨가 交換 특히 화폐와의 交換用으로 규정된것만이 재화로부터 변하여 商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財貨와 商品間은同一 범주는 아니다. 재화의一部分만이

商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世界經濟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은

商品이며 財貨는 아니다」……本間幸作 교수

一 通 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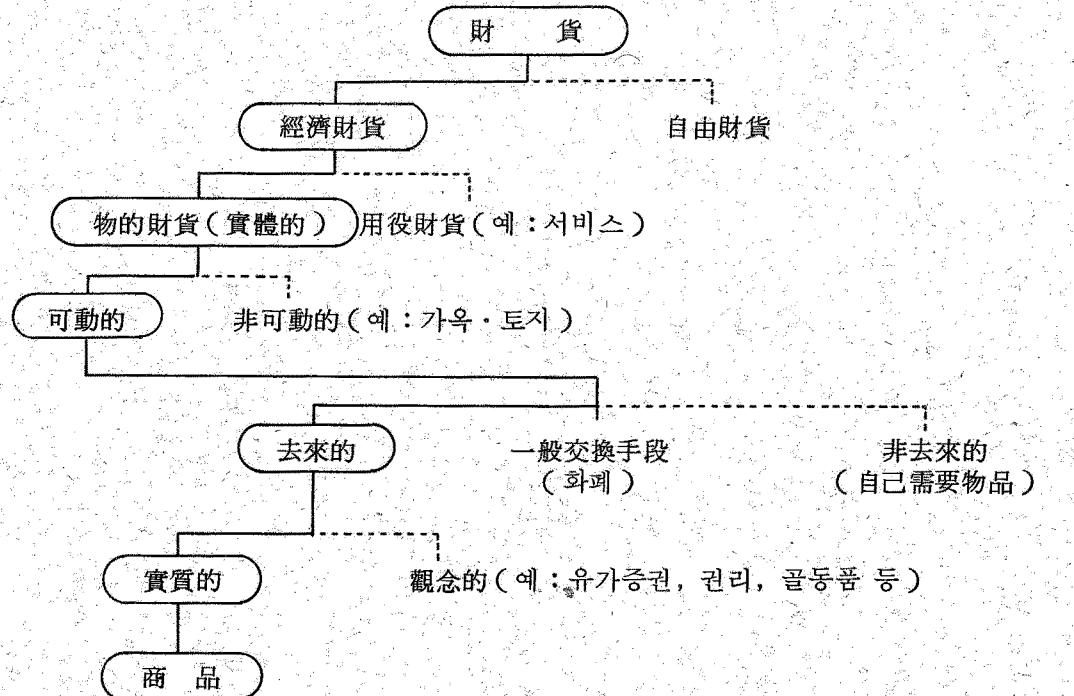
그러나 現代商品學(사회과학적, 특히 經營學的) 입장에서는 「商品」

이란 自然生產物과 技術生產品을 종괄한 상업의 客體로서, 그것

은 實體的·可動的·去來的·實質的 經濟財貨이다」라고 定立된

상품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 한희영 교수

商品의範圍概念



※ 資料：한희영「商品學總論」

참 고

一 商品의 研究對象

- 一般商品學의 研究對象 商品
- HS·SITC 의 研究對象 商品
- HS 와 SITC 의 研究對象 商品

1/ 實物資源의 영향

2/ 通貨量의 영향

HS 體系에서는 金(Gold), 金貨(Gold Coin) 및 硬貨(Current Coin)를 品目表上 포함시키고 있으나, SITC 체계에서는 對象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SITC에서는 이를 物品을 제외물품으로 統計上에 整合할 수 있도록 별도 편성하고 있다.

왜냐하면 「SITC」는 화폐용 金이나 流通中에 있는 通貨나 所有權 등 品目들의 輸出入은 實物資源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 通貨量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이 品目表(SITC)에 의한 統計에서 제외한 것이다(단, 流通中인 銀貨를 제외한 모든 銀製品을 포함한다).

한편, 金이나 硬貨 등의 去來와 實物資源의 交易을 단일화하여 統計를 작성하고자 하는 나라들의 慣例상 편의를 위해서 이들 貨幣類는 例外的으로 다음과 같이 符號(I, II)를 각각 부여하여 HS 와의 연계를 표시하고 있다.

SITC例外코드와 HS 코드의 연계

SITC	品 目	HS
I	貨 幣 用 金	7108.20
II	金貨 및 流通硬貨	7118.90

2. 商品學의 定義

一 定義의 類型

- 商品學의 定義의 대하여는 「商品進化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여기서 일반성과 특수성을 과학적 방법으로 조사·分析·評價하는 應用學이다」, 「商品으로서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天然物과 工產物을 대상으로하여一方에서 自然科學的 基礎와 다른 편에서 경제적 견지 특히 消費의 견지에서研究하는 學問이다 — Kutzelnigg」,
- 「商品學은 상품의 生産으로부터 消費까지의 關聯運動法則을 自然科學的 또는 社會科學的 측면에서 연구하는 學問이다 — 小西 교수」,
- 「商品學은 상품의 生産으로부터 소비까지의 商品進化過程을 自然科學的·社會科學的으로 그 生產·流通·消費構造를 實證的으로 연구한다. 그리하여 未來의 商品像을 정확히 예측하는 학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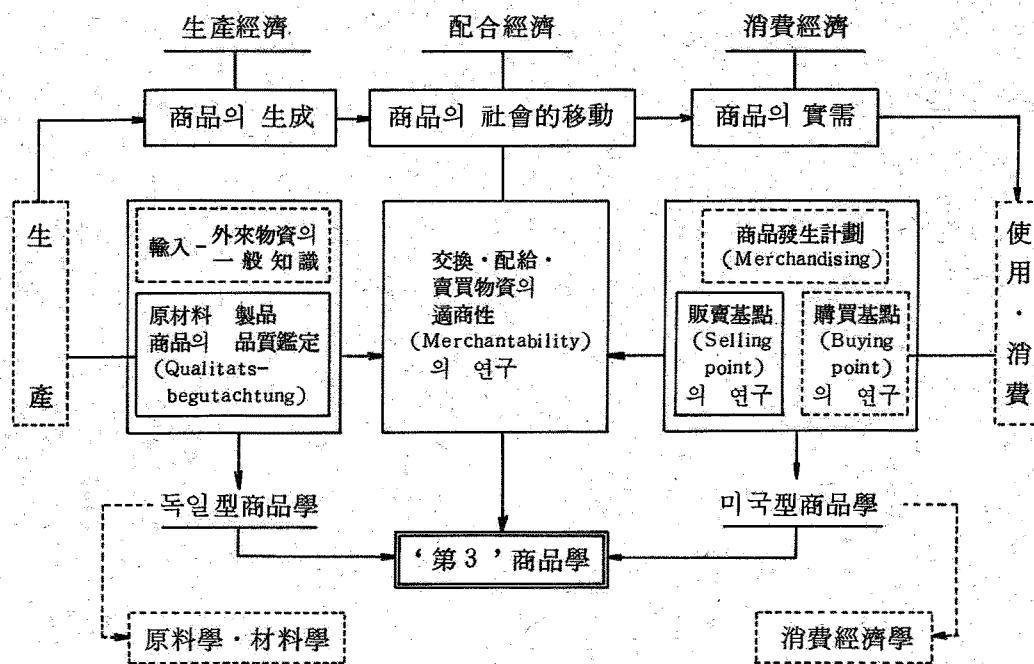
一 通 說

이들 諸說을 바탕으로 「商品學은 商品을 主體로 하여 自然·社會科學的 方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級약하여 定義를 설정할 수 있다. …… 池上隆雄 교수

一 商品學의 科學性과 研究傾向

- 工的商品學 獨逸型
- 商的商品學 美國型
- 第3商品學(兩者 融合) 上坡酉三 教수

第3商品의 構想



※ 資料：上坡酉三，「商品學概論」，同文館，東京，1957. p.22.

참 고

一 商品學과 HS

• 商品學

1/ 總論 : ① 商品學本質論, ② 商品學史, ③ 商品學 體系論,
④ 商品概念論, ⑤ 商品分類論, ⑥ 品質論, ⑦ 商品屬性
論 (포장·디자인), ⑧ 마케팅研究, ⑨ 商品鑑定等

2/ 各論 : 個別商品 (例: 主要商品, 基礎商品)에 대한 組成·構
造·機能 및 特性

• HS·SITC

1/ 總論 : ① 商品概念論, ② 商品分類論, ③ 상품鑑定

2/ 各論 : 個別商品 解說

一 商品學文獻과 HS 解說書

• 商品學

商品學이란 학술적인 면에서 상품을 설명하고 상품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學理的인 科學理論書

• HS 解說書

1/ HS 解說書는 該當 號에 分類되는 물품의 製造機能, 構造,
成分 및 용도등을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있으므로 이런
점에서 商品學에서의 상품에 대한 설명과 유사한 점이
있다. HS 解說書의 설명은 어떤 특정 상품이 어느 號에
분류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지 商品學에서와 같이 商品의
지식을 주기 위하여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2/ 모든 商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한 물품이 이중으로 분류되는例와 분류에서 누락되는例가 없도록 HS商品表상 배열된 품목에 포함되는 物品과 제외되는 物品을 說示한商品分類指針書라 할 수 있다.

• 特 徵

HS解說書는 商品分類指針書로 어떤 號에 分류할 물품을 한정하고 있어 유사한 물품들을 같이 포함시키되 어떤 號에 分류시킨 물품은 당해 號로부터 他號에 分류하는 것이 商品學的으로 타당성이 있더라도 強制規定을 두어 다른 號로 分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事 例

- 商品學 機械商品
- HS解說書 機械類 및 이들 部分品

1. 機械商品	
《學習事項》	
機械 { 狹義의 機械 器械 道具 (=器具)	
◎ 廣義의 機械	
◎ 機械의 發達	
(1) 石器時代	

- (2) 青銅器時代
 - (3) 鐵鋼時代 · 알미늄時代 · 프라스틱時代 · 오토메이션時代
 - (4) 產業革命時代 紡績機械과 蒸氣機關 → 金屬의 大量生產과 利用 → 木製機械에서 金屬機械로 → 工作機械의 發展 (機械工業의 成立)
 - (5) 20 世紀以降 흐르는 作業方式에 따름, 機械制大工業化
- ◎ 機械商品의 分類法
- (1) 統計上의 分類
 - 一般機械 · 電氣機器 · 運送 · 運搬機械 · 精密機械 · 其他
 - (2) 用途別 產業用 · 家庭用 · 製造用 · 事務用
- ◎ 機械의 一般的的性質
- (1) 機械의 構成
 - ① 作業部門 { 動力 또는 原動機部門 (動力의 發生 및 受入部門)
 動力傳達部門 · 作業部門 (直接製作하는 部門)
 - ② 支體部門 (各部를 持하는 部門)
 - (2) 機械의 構成要素 - 部品과 構造
 - (3) 機械의 自然科學的性質 (材料 · 構造 · 性能의 諸性質)
 - (4) 機械商品의 評價
- ◎ 機械의 製作 (自動車)
- (1) 市場調查 (調査部) · 製品計劃 (企劃部)
 - (2) 研究 · 試作 · 태스트 · 設計 · 仕樣書 (設計部)
 - (3) 製造 素材加工 (鑄造 · 鍛造 · ハード加工 · 機械加工 · 車體塗裝) · 總組立 (製造部)

(4) 完成試驗(検査部)

(5) 入倉・販賣(販賣部)

◎ 機械의 經濟的特質

(1) 產業水準의 尺度一大資本·大設備·高度技術

(2) 付加價值額이 크다. (知識集約型製品), 雇用勞動率이 높다.

(3) 耐久性大→陳腐化의 問題

(4) 生產財로서의 使用一設備投資一製造用機械·事務機械

(5) 消費財로서의 使用量增大 …… 生活의 向上

解 說

機械(machine)의 定義—器械·器具·裝置·道具와의 差別

(1) 狹義의 機械, 嚴密한 意味로 機械라 함은 다음의 3個의 條件을 具備하고 있을 必要가 있다는 것이 通說이다.

① 第一의 條件은 機械란, 外力を 加해도 比較的變形하기 어려운 物體의 組立으로 構成되어서, 一定의 運動이 되도록 한 것이다. 물과 공기는 크게 變形하나, 壓縮機나 펌프와 같이 作動하면 훌륭한 機械의 一部로 된다. 또한 벨트·체인 等은 押하면 쉽게 變形하지만, 잡아당기는데는 抵抗力を 가지므로 훌륭하게 機械의 一部를 構成한다. 따라서, 材料가 무엇이든 關係가 없다.

一般的으로 더욱 變形하기 어려운 것은 金屬인것이고, 더욱이 鐵은 價格도 싸고 鐵을 材料로 한것이 많다.

② 機械란, 各部分의 物體間에 限定된 相互運動이 連續的으로 行해질것을 條件으로 한다. 限定된 連續的인 運動이란 例를 들면 머신의 針의 上下運動과 같은 運動이다. 蒸氣보일러는 機械의 一部分은 되나 그 自體로는 機械가 될 수 없다.

③ 機械, 外部에서 加한 에너지를 더욱 有用한 形으로 變更해 서 어느 일정의 연속적인 동작을 하는 것이다. 에너지는 人力·畜力과 같은 生物的 에너지, 風力과 같은 自然力, 水力과 같은 位置 에너지, 水蒸氣·石炭·石油等과 같은 熱에너지, 電力·原子力과 같은 에너지의 어느 것아든 좋다. 그러나 人力과 畜力과 같은 生物的動力以外의 動力이 더욱 代表的인 動力으로 工學에서는 機械라고 말할때 生物的動力以外의 動力으로 움직이는 機械를 지칭할때가 많다.

狹義의 機械는 또한 原動機構·動力 전달機構·作業機構의 3條件을 具備하고 있다.

(2) 器械·器具·裝置와의 區別 (1)의 條件中 一條件을 만족해도 嚴密하게 機械라고는 말할 수 없는것이 通說이다. 例를 들면 計器類 等은 構造的으로는 機械에 類似하나 ③을 하고있어 單純한 人間勞動의 補助를 하는데 지나지 않음으로 本質的으로는 道具와 아무 다를바가 없다. 寫眞機·測量機 等과 慣習上「機」라는 말을 使用하고 있으나 嚴密하게 機械라고는 말할수 없다. 특히 이것을 器械 想은 器具라고 부르고 機械와 區別하고 있다. 이것의 ③을 하고 있는것中 裝置와一般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構造的·機能的으로는 機械와 같이 複雜해서

高度한 機能을 하고 있다. 常識的으로 機能의 一種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와같이 機械와 器械(器具)·裝置의 區別은 具體的으로는 확실치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므로 器械·器具·裝置도 機械中에 包含해서 機械라고 부를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이것을 合해서 廣義의 機械라고도 할 수 있다.

(3) 道具·用具와의 區別 針·끌·톱과 같이 簡單한 構造를 갖고 人間勞動의 補助手段으로 使用되는 것을 道具 또는 用具라고 부른다.

이 와같이 機械의 定義는 廣狹의 여러가지가 있다. 더욱 統計等에서 말하는 機械는 普通、廣義의 機械를 意味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資料：商品（一橋出版）北原三郎 pp.361-364

第 16 部

機械類와 電氣機器 및 이들의 部分品, 錄音器와 音聲 再生機·텔레비전의 映像 및 音響의 記錄機와 이들의 部分品과 附屬品

〔部註〕

5. 이 部의 註에서 “機械”라 함은 제 84 류에 열거된 각종의 機械·機械類·設備·裝備·裝置 또는 기기를 말한다.

總 說

(I) 第 16 部의 一般的인 內容

(A) 이 部에는 第 16 部 註 또는 제 84 류와 제 85 류의 註의 規定에 의하여 제

외되는 것과 다른 部에 보다 구체적으로 摘記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機械類와 電氣機器 및 이들의 部分品과 機械式 또는 電氣式이 아닌 特定의 裝置와 施設(예: 보일러·보일러의 부속기기 및 濾過用機器등) 그 部分品이 포함된다. 이 部에서 제외되는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다.

- (a) 스투울·코프·보빈·리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材料여하를 불문하며構成材料에 따라 分類된다).
- (b) 第 15 部 註 2에 規定한 汎用性 部分品으로서 鐵鋼製와의 와이어·체인·볼트·스크류 및 스프링과 같은 것(제 7312 호, 제 7315 호, 제 7318 호 또는 제 7320 호)과 其他 卑金屬製의 이와 유사한 물품(제 74 류 내지 제 76 류 및 제 78 류 내지 제 81 류), 제 8301 호의 자물쇠·제 8302 호의 門·窓門 등에 사용하는 裝飾 및 附着具類, 플라스틱製의 이들과 유사한 물품도 이 部에서 제외되며 제 39 류에 分류한다.
- (c) 제 8207 호의 互換性工具, 기타 이와 유사한 互換性工具는 作用部分의 構成材料에 따라 分類된다.(예: 40 류 <고무>·제 42 류 <가죽>·제 43 류 <모피>·제 45 류 <코르크>·제 59 류 <紡織用 纖維>·第 6804 호 <研磨材料等> 또는 제 6909 호 <陶磁器> 등).
- (d) 제 82 류의 기타의 물품(예: 工具·투울 텁·칼·칼날·非電氣式의 理髮器 및 特定의 機械式 家庭用 器具) 및 제 83 류의 물품.
- (e) 제 17 부의 물품
- (f) 제 18 부의 물품
- (g) 武器와 銃砲彈(제 93 류).
- (h) 玩具·遊戲用具·運動用具의 特性을 갖는 機械類와 機器 및 이들 물품에 專用 또는 주로 使用하는 것이 明白한 部分品과 附屬品(非電氣式의 모터와 엔진을 包含하지만 電氣式 變壓器 및 無線 원격조정기기는 除外하며, 이들은 第 8501 號·第 8504 號 또는 第 8526 號에 각각 分類한다) (第 95 類).
- (i) 機械의 部分品으로 使用되는 부리쉬(第 9603 호).

(B) 일반적으로 이 部의 물품은 그 材質이 무엇인지를 불문한다. 大部分의 機器는 卑金屬製이지만 이 部에는 卑金屬이 아닌 材料製의 機器(예: 전부가 플라스틱으로 된 펌프) 및 플라스틱·나무·貴金屬 등으로 된 部分品도 포함한다.

다만, 이 部에서는 다음 물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 (a) 플라스틱제의 傳動用 또는 컨베이어용과 벨트나 벨팅(제 39 류), 非硬化 加黃고무제의 물품(예: 傳動用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 4010 호)·고무타이어·튜브등(제 4011 호 내지 제 4013 호)과 워셔어 등(제 4016 호).

- (b) 가죽제품 또는 컴포지션 레더제품(예: 織機用의 피커)(제 4204호) 또는 모피제품(제 4303호).
- (c) 紡織用 纖維製의 物品(예: 傳動用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제 5910호) 펠트페드 및 研磨用디스크(제 5911호).
- (d) 제 69.류의 陶磁製品(제 84.류 및 제 85.류의 總說 參照).
- (e) 제 70.류의 特定의 유리製品(제 84.류 및 제 85.류의 總說 參照).
- (f) 전부가 貴石 또는 半貴石으로 된 製品(天然·合成 또는 再生의 것)(제 7102호·제 7103호·제 7104호 또는 第 7116호) 다만 畜音機 바늘용의 加工한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로서 장착하지 아니한 것은 제 8522호에 分류한다.
- (g) 金屬의 線 또는 帶로 만든 엔드리스벨트(제 15부).

※ 資料: HS 해설서 p-1130

3. 商品分類의 定義

一 定義의 類型

- 「商品이라는 포괄적 특성을 형성하는 共通的 集群中에서 상품의 使用目的 내지 용도에 대응하여 同一의 屬性을 가지는 個別商品群을 확정하는 과정이다」
- 「一商品群과 他商品群과의 구별을 밝히고 그 ‘그룹’마다 일정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商品을 체계적으로 類型化하는 것」
- 隣接科學인 生物學에서는 분류를 「모든 生物을 제각기 지니는 構造上 또는 自然의 관계상 공통의 因子에 의해 ‘그룹화’하는 ‘시스템’」이라 함.
- 稅表分類, 關稅率表分類를 일반적으로 「稅關에서 輸入物品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當該 物品의 관세을 표상 배열

된 位置를 찾고, 정확히 그 물품이 同表上의 품목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는 一種의 作業」이라 定義한다. 따라서 HS 상부분품의 分類란 어떤 商品(예: 1차부분품, 2차부분품, 조립부분품, 전용, 범용부분품 등)을 관세율표상 10 單位 부호 10205 個中 어느하나에 적용시키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 Nomenclature

- 靜態的 名詞
- Convention on nomenclature for 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customs tariffs

— Classification

- 動態的 名詞
-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 商品分類의 必要性

- 地球村의 무수한 商品을 하나도 남김없이 捕捉·研究한다는 것은 能力的으로나 時間的으로도 限界가 있다.
- 결국 이러한 商品種類의 홍수적인 환경 속에서는 단순한 단편적인 상품연구를 위해서는 그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른바 ‘知見과 認識의 體系化’를 도모해야 좋을 것이다.
- 分類必要性

商品分類의 必要性 要約

① 研究上 必要

商品分類는 잡다한 상품그룹을 體系的으로 정리함으로써 商品

의 本體를, 즉 他商品과의 類似性과 相違點을 파악하는데 學問研究上 필요하다. 이는 一商品群과 他商品群과의 구별을 밝히기 위해서는 공통의 상품 특성을 지닌 同系・同種商品을 체계적으로 배열한, 기준되는 商品分類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② 實務・管理上 必要

生産・販賣 등 유통과정에서의 제품差別・多樣化는 상품의 實務上 또는 管理上 상품분류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적정한商品의 分類가 없으면 生產管理나 販賣를 위한 진열을 하는 때 혼란과 불편을 겪는다.

③ 行政・制度上의 必要

한나라 또는 國際間의 輸出入規制, 關稅賦課, 貿易・關稅交涉, 運賃・保管料率 등의 결정에 있어서 商品分類나 品目表는 필수도구가 된다. 실제로 經濟圈域別로 필요에 따라 일정한 分類基準에 따라 商品名을 배열한 品目表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一 商品分類學

- 하나의 學問으로 一般化 되었는가
- 1個의 科學

실제, 商品分類는 상품요소들의 比較研究에 의하여 상품의 下位概念에서 순차적으로 上位概念을 찾아서 [例: HS 6單位의 경우, 5·6單位 小號(商品屬) → 4單位 號(商品目) → 類(商品

門)→部(商品群)] 각 계층(次元)내에서 상품에 공통한 屬性 및 基準과 상품·상품群간의 여러 관계에 따라 배열하는 작업이다. 또한 商品分類學의 주요 목표가 ① 商品의 계층별 概念〔例: 號(目), 小號(屬), 7·8 單位(種)〕의 기준을 연구하고 ② 實제로 사용 가능하고 또한 과학적으로 기초화된 商品體系를 창조하는 것, ③ 科學的 商品命名을 촉진하며 ④ 무수히 다양한 상품을 概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여러 상품간의 諸관계·方法·合法則을 탐구하고 理論化하려는 商品分類는 하나의 과학으로서 ‘商品分類學’이라 일컬을 수 있다.

4. 商品分類表의 類型

— 品目表의 多樣

- 商品研究者의 目的·用途
- 經濟行政活動主體(국제기구·정부·공공단체·기업·개인)의 目的·用途
- 17 種 品目表(CCC가 HS 制定過程에 조사된 A國→B國으로去來되는 貿易상품에 적용되는 品目表)

— 主要品目表

主要品目表의 類型

가. 關稅用 品目表

☆① CCCN(관세협력이사회품목표: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 ☆② NABALALC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관세율표 ; Tariff Nomenclature for the 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 ☆③ TSUSA (美관세율표 ; Tariff Schedules of the United States)
- ☆④ CTC (캐나다관세율표 ; Customs Taiff of Canada)
- ☆⑤ CTJ (일본實行관세율표 ; Customs Tariff of Japan)
- ☆⑥ TSK (한국관세율표 ; Tariff Schedules-of Korea)

나. 統計用 品目表

- ☆① SITC (국제표준무역분류 ;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 ☆② NIMEX (歐洲공동체무역통계표 ; Nomenclature of Goods for the External Trade Statistics of the community and Statistics of Trade between member states)
- ☆③ ICC (캐나다수입통계표 ; Import Commodity Classification (Canada))
- ☆④ ECC (캐나다수출통계표 ; Export Commodity Classification (Canada))
- ⑤ CCIO (산업원泉에 의한 품목분류 ; Classification of Commodities by Industrial Origin)
- ⑥ NIPRO (공산품품목표 ; Common Nomenclature of Industrial Products)
- ⑦ CPC (주요상품분류 ;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 ⑧ SKTC (한국표준무역분류 ; Standard Korean Trade Classification)
- ⑨ CCCNK (한국관세행정통계분류표 ;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of Korea)
- ⑩ HSK (한국통일상품분류 ; Harmonized Systems of Korea)
- ⑪ Schedule B (Export) (United States) (미국수출통계표)

다. 운송료率用 品目表

- ☆① WACCC (세계 항공화물분류표 ; World wide Air Cargo Commodity Classification)
- ☆② WIFT (서인도, 대서양횡단항로협회운임율표 ; Freight Tariff of the Association of West India, Trans-Atlantic Steamship Lines)
- ☆③ STCC (표준수송상품부호 ; Standard Transportation Commodity Code)
- ④ CSTE (歐洲수송통계용품목부호표 ; Commodity code for European Transport Statistics)
- ⑤ NST (수송통계용표준품목표 ; Standard Commodity Nomenclature for Transport Statistic)
- ⑥ FEFCFT (극동해 운동맹 운임요율표 ;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 Freight Tariff)
- ⑦ UICNUM (국제철도연합 표준상품분류표 ; Standard Commodity Nomenclature of International Union of Rail ways)

라. 保険料率用 品目表

- ① MIKA Tariff (日本 보험요율용 품목표)
- ② MITA (한국 보험요율용 품목표)

마. 其 他

- ☆① SFTC (경제 상호원조이사회의 무역 표준분류표 ; Standard Foreign Trade classification of the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 ② ISIC (國際標準產業分類 ;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 ③ ICGS (국제 표준상품 用役分類 ;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all Goods and Services)
- ④ NACE (歐洲공동체 경제활동용 일반산업분류 ; General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ies within the European Communities)
- ⑤ SINAP (경제 활동 상품통합분류체계 ; System of Intergrated Nomenclature for Activities and Products)
- ⑥ BEC (廣경제 범주분류 ; Classification by Broad Economic Categories)

* ☆부호가 있는 15個 品目表는 HS 제정에 참고자료로 活用되었음.

5. 商品의 二元分類 · 分類基準 · 分類原則

一 本質的分類와 應用分類

- 品目の 分類는 그 목적·입장·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本質的 分類」와 「應用的 分類」의 2種으로 大別된다.
- 本質的 分類란

[前者는 一定한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체계적·합리적으로 행하는 商品의 分類形態를 말한다] 이는 個別商品의 特성분석·구조·사용가치 규명과 기타商品研究의 체계화와 이론화를 위하여 사용된다.

본질적 분류는 ① 總論的分類, ② 理論的分類, ③ 基本的分類 등으로 다르게 표현되고, 응용분류는 ① 各論的分類, ② 人爲的分類, ③ 便宜的分類, ④ 實踐的分類, ⑤ 社會學的分類, ⑥ 水平分類(慣用的分類), ⑦ 約定的分類 등으로 표기되고 있다.

- 應用的 分類란

「經濟·經營政策 및 기타 특정 목적과 관련하여 實用的 見知(生產·流通·消費 등 실태파악)에서 한정된 범위의 상품에 대하여 행하는 상품의 분류형태를 일컫는다. 統計, 課稅·立法·行政·마케팅·運輸·倉庫保管·荷役·金融·保險 등 산업분야별 필요로부터 商品을 배열하여 사용하고 있는 각종 品目表나 料率表 등이 이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貿易商品의 分類의 경우도, 응용분류를 채택하고 있는데 例컨

데 CCCN의 分類體系를 보면 機械類·電氣機器(제 16 부), 車輛(제 17 부), 武器類(제 19 부)는 15 部의 卑金屬(鐵鋼)보다 下位概念의 상품임에도 同一次元(階層)의 「部」로 편성하고 있다.

一 商品의 分類基準

- 分類基準의 水平·垂直的 組合

- 1/ 商品의 分類基準이란

상품의 구분을 완전하고 철저하게 행하여 商品 또는 商品에 대한 共通性과 그 認識을 정돈하여 商品의 配列體系를 정립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基準의 形態에 따라 商品의 分類가 달라진다.

- 2/ 體系的 品目表 作成의 不可能

1 개의 分類基準으로 다양한 商品을 品目表上에 統合·整리하여 體系化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商品의 配列

〈例 - 1〉 1次元(面)……一列展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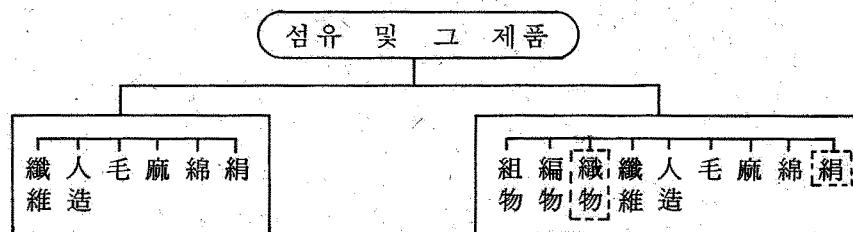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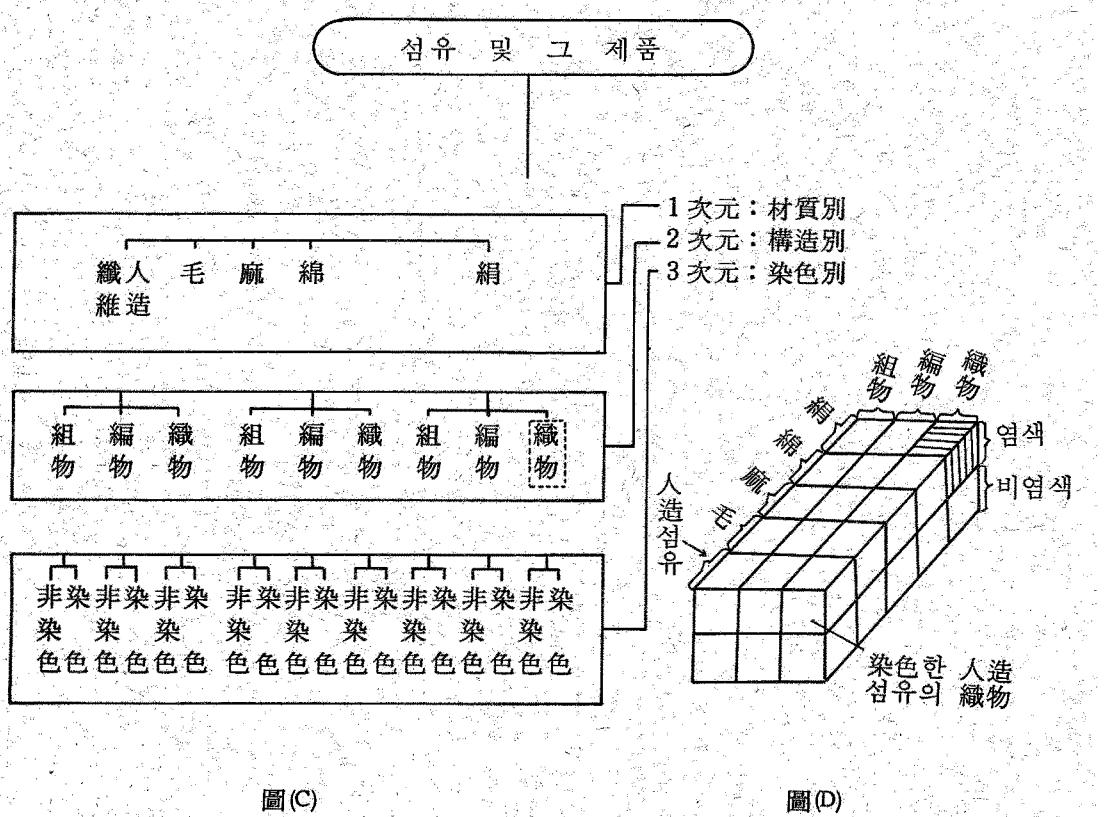


圖 (A)

圖 (B)

〈例 - 2〉 2次元(面)……複列展開



3/ 分類基準의 要素

分類基準의 要素

學問的立場	商業的立場	貿易立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純粹屬性 (1) 품명, 브랜드名 (2) 구성 (성분, 함유물 조성 등) (3) 감각 (색깔, 향, 맛 촉감 등) (4) 형상 (형태, 크기, 두께, 길이 등) (5) 物性 (밀도, 빙점, 점도, 酸價 등) (6)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商業必要性 (1) 용도 (사용목적) … 소비용품, 산업용품 (2) 생산원천 (Origin of Production) … 제 1차산업 생산 품, 제 2차산업 생산 산품 (3) 화학적 성분 (질질 구성분) … 무기질 상품, 유기질 상품 (4) 실체 구성원질의 속성 (발생근원) … 동물성 상품, 식물성 상품, 광물성 상품 (5) 단위별 존재형태 … 고체, 액상, 분상, 黏體, 固體, 液體, 氣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CCCN (원칙: 산업별 분류) (1) 상품의 素因 (屬・成分・ 순도 · 質量 · 形態) (1+2) : 상품의 소재 (2) 상품의 재료 [생산(산업) 원천] (3) 가공단계 (例: 11부) (4) 상품의 기능 (例: 9405) (5) 상품의 용도 (例: HS 64, 65, 84, 95 류 등) (6) 용도 · 기능 · 혼합 (例: 84 류, 85 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적 屬性 (1) 主로 생산에 관련된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원 (천연, 인공여부) ○ 생산방법 ○ 생산지 ○ 생산산업의 종류 		

學問的立場	商業的立場	貿易立場
○ 가공처리정도 ○ 생산시기, 생산소요 기간 ○ 생산자 ○ 생산에 要하는 원 료, 재료 (2) 주로 유통에 관련 된 물품 ○ 거래시기 ○ 저장기간 ○ 포장상태 ○ 운송방법 ○ 거래 수량 ○ 단가 ○ 판매의 레벨 (도매 소매 등) ○ 판매자 (3) 주로 소비에 관련 된 물품 ○ 사용하는 기간 ○ 기능·성능·효과· 능률	膠狀商品 (6) 加工度…원료품(미 가공품, 미제품, 조 제품), 제조품(반 제품, 완제품) (7) 생산지명…예 : 미 Cotton, 인도綿, 이집트綿 (8) 사용기간 (9) 재생산가능성 (10) 필요성(긴요성) (11) 거래지역…국내상품 국제상품 (12) 생산지…국산품, 외 래품 (13) 유통기업의 업종등	(7) 용도·재질·혼합 (例 : HS 9401 등) (8) 화학구조(例 : HS 29류, 39류) (9) 제조방법(例 : 펠프 류) ● SITC (원칙 : 물품별 분류) (1) 상품의 성질 (The nature of the merchandise) (2) 상품의 용도(例 : 식료품과 비식료품) (3) 상품의 재료(例 : 展皮類, 채유用씨, 생고무) (4) 상품의 가공단계 (5) 시장관례 (Market Practice) (6) 세계무역상 상품의 중요성 (The impo-

學問的立場	商業的立場	貿易立場
○내구성·내용년수		rtance of commodity in terms
○내용자·소비자		of world trade)

一 次元別 配列標識

• HS의 配列

상품의 分類체계 가운데 上位次元(段階)에서 이용되고 있는 분류기준은 통상 材質·用途와 產業形態가 그 기준이 되고 있다.例컨데, HS(CCCN도 마찬가지)의 경우 상위개념의 商品群 21개 부(Section) 가운데 앞쪽(1~6部)은 農畜產物, 중간쪽(7~15部)은 工產品, 끝쪽(16~21部)은 高度產業生產品 순으로 편성하고 있다.

• 配列次元〈段階〉標識

한편, 商品分類體系에 사용되고 있는 配列次元(단계) 標識에는 여러 가지 用語가 있으나 上位概念의 상품에서 순차별로 8段階의 分類方式, 즉 「群：Warengruppen」→「門：Warenklassen」→「目：Warenordnungen」→「屬：WarenGattungen」→「族：Warenarten」→「亞族：Warenunterarten」→「種：Warensorten」→「等級：Qualitätsklasse」이라는 用語로 구분 사용되도록 1962年9월의 「第1回 國際理論會議」에서 권고(추천)되었다.

〈分類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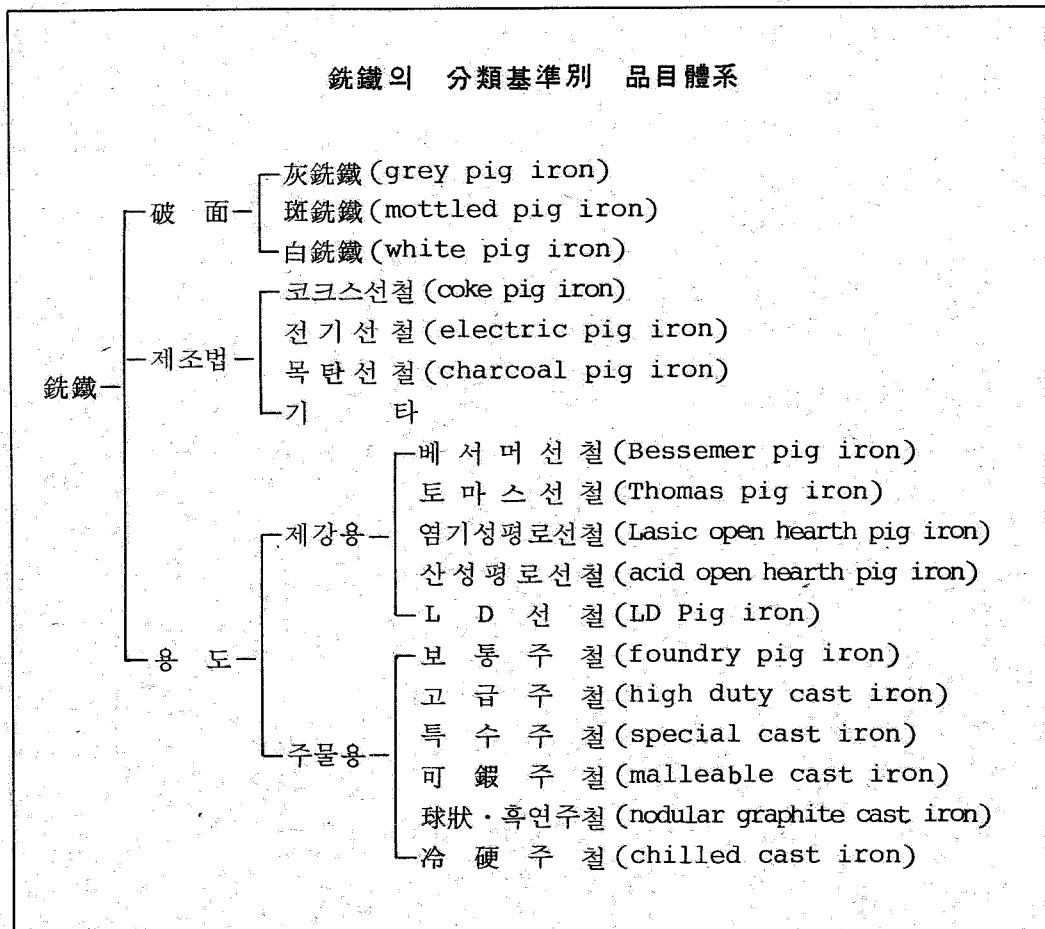
商品群	食 料 品	家 庭 用 品
商品門	飲食物	家庭用化學·化學製品
商品目	乳·乳製品	비누洗劑
商品屬	乳	비누
商品族	牛乳	身體洗滌用 비누
商品亞族	飲用乳	精製비누
商品種	2.5%脂肪 含有飲用乳	藥用添加物·精製비누
等 級	—	藥用添加物·精製비누·特等級

— 分類基準別 品目配例

• 配列과 商品의 命名

同種·類似商品群이라도 품목분류체계상 配列位置와 상품의 命名은 그 分類基準(例: 素材, 製造法, 加工, 機能, 用途 등)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그 分類基準의 設定이 科學的·合理的 바탕에서 이루어진 경우라야 품목표상 同種·類似商品群의 概觀이 가능하고 상품의 命名도 간결하고 論理的일 수 있다.

• 銑鐵의 分類基準別 品目體系



一 商品의 分類原則

• 分類原則이란

예컨대 狹義商品名(또는 Name)과 廣義商品名(또는 Class)이

共存하는 경우, 狹義品名이 우선한다 (=협의품명 우선분류원칙),

또는 用途商品名과 機能商品名이 併存하는 경우 機能商品名이

우선한다 (=用途, 機能品名間 機能品名의 우선분류원칙)는 등 어

면 1個商品이 2個 이상의 號(또는 稅番)에 競合하여 공존

하는 때 어느 號가 우선한다는 분류에 관한 原則을 지칭한다.

- 一意性(一物一處)分類原則

2個 이상의 材料 또는 單位機械로 混合·構成된 組成品을 分류하여야 하는 경우, 예컨대 50% 天然絲(綿絲)와 50% 人造絲(나일론絲)로 된 혼방직물, 本體와 部分品·附屬品·豫備品, 2個 이상의 기능을 가진 機械로 구성된 複合機器가 동시 수입 신고된 경우 부분품·부속품·예비품과 複合機器는 품목표(관세율표)상 어느 위치(號 또는 稅番)에 해당시켜야 하느냐 등 어려움이 있다. 이에 稅表(商品分類·品目表)은 「하나의 상품을 단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一意性分類原則(또는 一物一處 分類原則)에 접근하기 위하여 通則(GIR:General Interpretation Rule)과 註(Note)등 分類方針이나 原則을 설정하고 있다.

- HS 상 品目分類原則의 규정例

HS상 品目分類原則의 規定 例

	通 則 (GRI)	註 (Note)
제 1 義的 最優先適用 原則	GRI. 1 號・註의 최우선 適用原則	<p>① 一體에의 분류 원칙</p> <p>② 個別分類원칙</p> <p>③ 主用途・主機能에 의한 분류 원칙</p> <p>④ 歸屬度關數에 의한 분류원칙</p> <p>⑤ 定型規格에 의한 분류원칙</p> <p>⑥ 通則의 규정에 의한 분류원칙</p> <p>⑦ 包裝品・세트에 관한 분류원칙</p> <p>⑧ 最終號・類似品의 분류원칙</p> <p>⑨ 先類・後號의 분류원칙</p> <p>⑩ 部分品・附屬品의 분류원칙등</p>
제 2 義的 從屬適用 原則	<p>GRI. 2 ① 不完全・分解物品 등의 분류원칙</p> <p>④ 混合・結合・組成品의 분류원칙</p> <p>GRI. 3 ① 狹義品名 우선분류원칙</p> <p>④ 主要特性 우선분류원칙</p> <p>④ 最終號 우선분류원칙</p> <p>GRI. 4 類似品에의 분류원칙</p>	
補助的 適用原則	<p>GRI. 5 ① 케이스 등 容器類 분류원칙</p> <p>④ 包裝用材料와 포장容器類 분류원칙</p> <p>GRI. 6 小號의 분류원칙</p>	
備 考		

第2章 國際共通(統一)商品分類

1. 共通品目表의 歷史

年 代 表

SITC	年 度	BTN(CCCN→HS)
○ 국제統一統計品目表 필요인식	1853	○ 統一關稅品目表 필요인식
	1913	○ 국제공통분류표 (Brussel classification) 작성. (5部 186品目)
	1923	○ 세관절차간소화 협약
	1927	○ 통일관세品目表 骨格提示권고 (L.G.)
	1931	○ 잠정 제네바 品目表 (21部, 86部, 991號)
○ 국제무역통계를 위한 商品最少目錄 제정	1937	○ 1차 개정 제네바 品目別제정
	1938	OECD(61.10)
	1947	OEEC(48.4)
	1948	CEEC(47.7)
○ SITC Original제정	1950	○ 브랫셀品目表(案) (B.N.-Nom Nomenclature) 작성 연구단(47.9) Nom
	1955	○ BTN 協約 성립
	1959	○ 기본 3 협약
○ SITC Rev.1제정	1960	○ BTN 개정 의정서 채택
	1965	○ BTN 發効
	1972	○ 1차 BTN 개정
○ SITC Rev.2제정	1975	○ 2차 BTN 개정
	1976	○ BTN→CCCN 改稱
	1978	○ 3차 BTN 개정
	1983	○ HS 協約 성립
○ SITC Rev.3제정	1985	
○ SITC Rev.3시행	1988	○ HS 發効

※ 現 經濟協力開發機構 (OECD : Organization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의 모체인 CEEC는 美國務長官의 이름을 딴 마샬계획 (戰後 유럽부흥계획 ; Marshall Plane, ERP: European Recovery Program) 을 기초로 1947년 12월 파리에서 벨기에·스웨덴 등 16個國이 유럽경제부흥회의를 개최하여 공동부흥개혁안의 작성을 위하여 창설한 國際機構로 그 후인 1948년 4월에 유럽경제협력기구 (OEEC :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로 개칭되고, 이어 오늘의 OECD로 承繼되었다.

2. 關稅協力理事會

— CCC란

「관세협력 이사회」의 略語로 英文名 'Customs Cooperation Council' 의 頭文子로 따라서 結性한것이다. 本部는 벨기에 브뤼셀에 位置해 있다」

— CCC의 設立目的

CCC란 1950년 12월 15일署名된 「CCC設立을위한 協約」에 따라 創設된 國際機構이다. 同協約에는 「CCC를 설립하는 目的是 物品分類와 評價에 관한 協約을 적용·해석하는데 필요한 執行機構를 창설함으로써 關稅制度에 있어서 고도의 협조와 定型化를 보장하고, 이와 관련된 關稅法規의 개선내지 발전에 필요한 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이 機構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3. CCCN(前 BTN)과 SITC

- CCCN

- 定義 : BTN 協約의 附屬書
- 用語 : CCC Nomenclature, Brussel Tariff Nomenclature
- 채택國

< 1987 현재 >

1 / 世界 153 개國 (가맹국 52 개國, 非가맹국 101 개國)

2 / 我國 (1962. 관세율표반영, 1971. 기별공고반영, 1968 協約加入)

< 1988 현재 >

1 / CCCN 가맹國 49 개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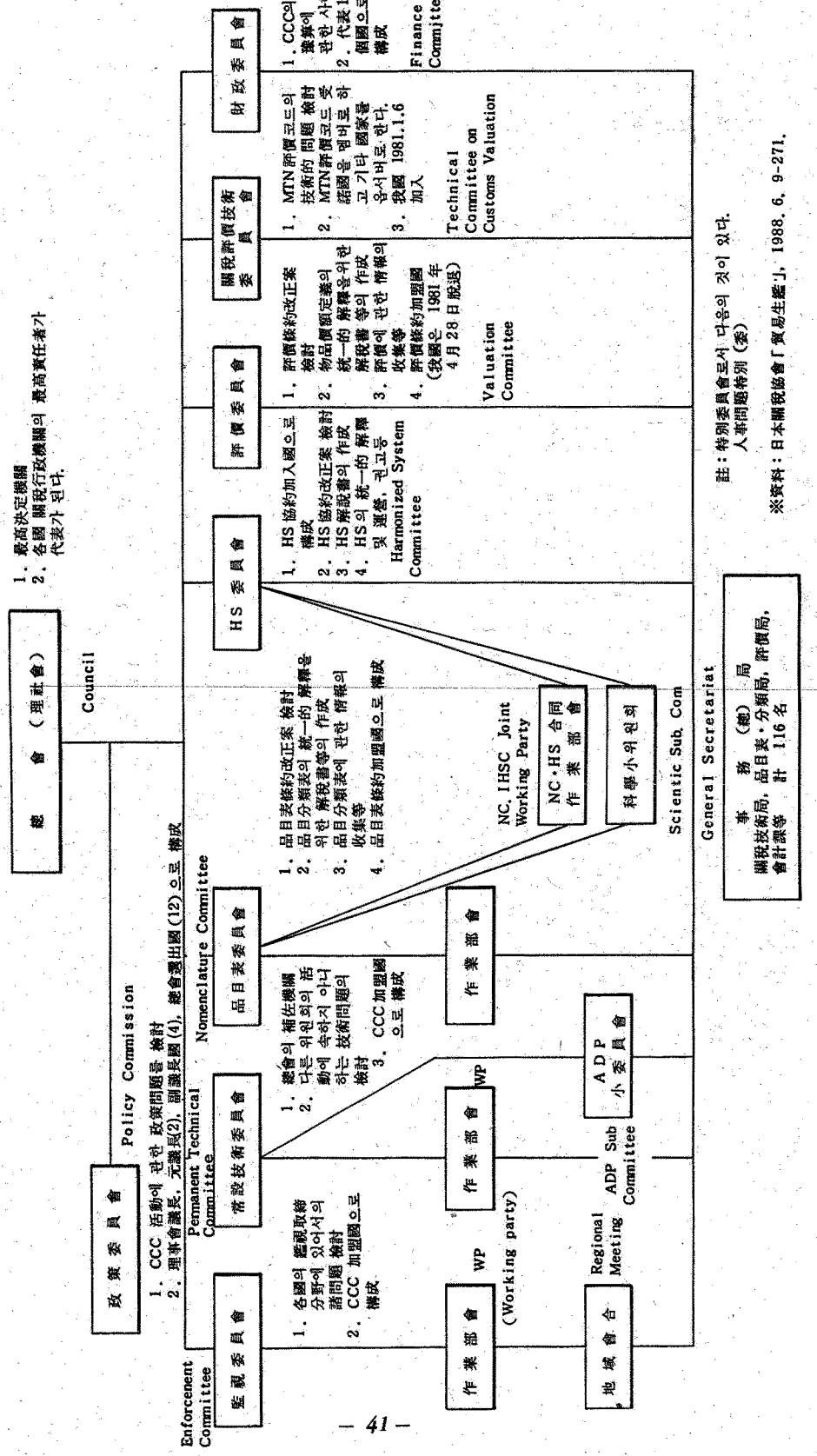
2 / HS 가맹國 43 개國 (※ CCC Doc. 34.832 E, 1988.7.25)

◦ 分類構造

먼저 一般原則에 있어서 關稅專門家들은 關稅政策運營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을 主眼으로 關稅品目表를 만든 것이므로 同品目表는 同種의 產業部分에 관련되는 모든 물품을 함께 分類 (同一한 原料에서 얻어지는 物品은 同一 “類”에 分類하고 原料부터 完製品의 順序로 配列해 나가고 있음) 함으로써 ① 輸出入業者로 하여금 이 品目分類 System 内에서 物品의 位置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② 物品의 製造工程에 따르는 相對的인 產業保護程度를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見解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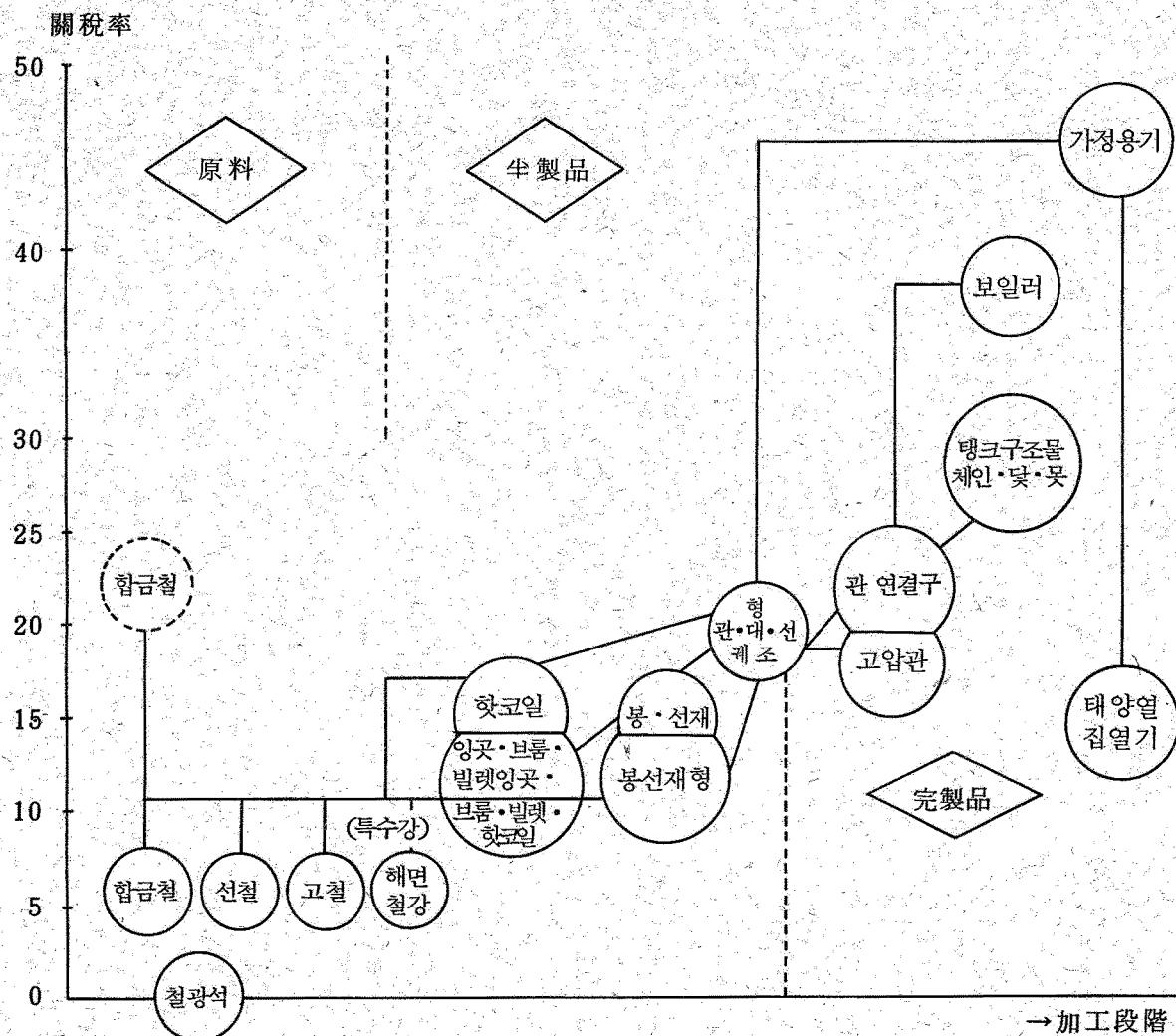
(1988年3月)

關稅協力理事會 機構圖



鐵鋼의 加工段階別 差等稅率

○ 1987 關稅率表 (TSK) 構造



※주: 이 類는 我國 TSK의 전형적인 가공단계별 산업보호 (자동세율) 체계임.

철광석 (0%) → 선철 (5%) → 잉곳·브롬·빌렛·핫코일 (10~15%) → 관·대·선

형 (20%) → 관연결구류 (25%) → 일반제품 (30%) → 가정용제품 (50%)

- SITC

○ 定義

CCCN이 關稅目的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통일품목 분류표라면 SITC는 통계目的을 위하여 제정된 특정용도의 통계용 통일 품목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SITC는 對外貿易의 대상이 되는 商品의 통계분류표로서 경제분석과 상품별 무역의 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商品統計基準을 제시한다.

○ 分類構造

이에 반하여 統計專門家들은 統計品目表는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상품을 비교하는데 장점을 얻기 위하여 ① 食料品・原料加工品・機械類와 같이 物品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② 食材料, 中間製品, 完製품과 같이 加工段階別 및 產業構造別(食品・纖維・化學・鐵鋼・機械產業 등)로 분류하고 있다.

一 CCCN 과 SITC 의 比較

• 分類體系比較

CCCN과 SITC 分類體系 比較

表 別 區分	CCCN	SITC Rev. 2
全 體 構 造	<p>21 Section (大分類) 99 Chapter (中分類) 1101 Heading (小分類)</p> <p>Section 1 動物製品, 生産品 01.01 산 말(馬) 01.02 산 소(牛) 01.03 산돼지 01.04 산양 및 山羊 01.05 산加禽類 01.06 기타산동물</p> <p>Section 2 植物製品, 生産品 Chapter 6 ...</p> <p>Section3 動・植物性의 油脂 Chapter 14 ...</p> <p>Section4 調製食料品, 飲料 Chapter 15 ...</p> <p>Chapter 16 ...</p> <p>Chapter 24 ...</p> <p>Section21 美術品, 花集品 및 骨董品 Chapter 99 ... Heading 9906..</p>	<p>10 Section (大分類) 63 Division (中分類) 233 Group (小分類) 786 Sub-Group (細分類) 1924 Basic Item (基本分類) 本項目細分類</p> <p>0 食料品部 및 산동물 00 산동물類 001 ... 群 001.1 牛 001.2 羊 및 山羊 001.3 豚 001.4 家 001.5 馬 001.6 기타동물</p> <p>01 鳥獸肉類 및 그 調製品 011 鳥獸肉類 011.1 牛肉 011.2 羊 및 山羊의 肉 011.3 豚肉 011.4 食禽 및 그 肉 011.5 馬肉 011.6 屠肉 및 內藏 011.8 기타 011.81 家禽의 内藏 011.82 기타</p> <p>기타 食 09 調製品 013 獸肉類</p> <p>特殊 9 取扱品 89 雜 品 899 雜 品 971 金 등 971.03 러기 등</p> <p>기타 899 雜 品 971 金 등 971.03 러기 등</p> <p>金부스</p>
部分構造(例)	<p>CCCN N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紬 : 원료(누에고치) : 5001 · 紬 : 사(생사) : 5002 · 紬 : 직물(전직물) : 5009 · 毛 : 원료 : 5301 · 毛 : 사 : 5306 · 毛 : 직물 : 5311 · 綿 : 원료 : 5501 등 · 綿 : 사 : 5505 · 綿 : 직물 : 5507 등 <p>CCCN (재료별→가공단계별)</p>	<p>SITC N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纖維原料 : 一 견 : 261 · 纖維原料 : 一 모 : 262 · 纖維原料 : 一 면 : 263 · 纖維絲 : 一 견 : 651.1 · 纖維絲 : 一 모 : 652.2 · 纖維絲 : 一 면 : 652.3 · 纖維織物 : 一 견 : 653.1 · 纖維織物 : 一 모 : 653.2 · 纖維織物 : 一 면 : 653.3 <p>SITC (가공단계별→재료별)</p>

* 資料: 한희영, 「商品學總論」 p.84, 89, 232, 235 參照

SITC의 類構成表 (2)

X Y	0	1	2	3	4	5	6	7	8	9
0	산 動物	고 기 제 품	낙 농 품 및 알	어 개 류	곡 가 식 공 및 품	채 과 소 및 실	설 벌 탕 · 꿀	커 료 피 · 향 신	동 물 사 료	기 타 식 용 품
10		음 료	연 그 초 제 품							
20		원 모 피 및 피	채 열 유 용 매	생 고 무	코 및 르 목 크 재	페 프 및 지	섬 유 그 스 트	미 가 공 의	금 광 부 속 석 리 성 및 기	기 물 성 물 질
30			석 탄 · 연 코 탄	석 제 판 유 품 물 그 및 질	천 제 조 연 가 스	전 력				
40		동 유 물 성 지	불 식 기 휘 물 발 성 성 등	기 타						
50		유 화 학 기 물	무 화 학 기 물	염 유 착 연 색 제 료 및 제	의 약 제 품 및 제 품	정 향 유 및 등	비 료	플 라 스 틱	원 가 플 라 형 아 스 태 보 티	기 타
60		가 손 죽 질 모 및 피	고 무 제 품	크 나 르 무 크 제 및 품	종 판 이 지 및 등	직 직 률 체 를 통	비 광 금 속 물	철 및 강	비 철 금 속	금 속 제 품
70		원 및 동 설 기 비	특 산 기 업 수 용 계	금 공 작 속 용 계	일 기 장 계 반 및 비	사 무 계 용 등	통 녹 재 신 음 기 및 파 기	기 타	도 차 로 주 행	기 수 송 장 타 비
80		조 건 립 축 식 물	가 부 구 분 및 품	여 행 용 백 품 등	의 제 품 복 등	신 발		통 및 제 기 구 치	휴 대 시 계	잡 제 품
90		우 소 포 편 물		특 취 급 수 불				주 화	금	

※ 독해 : 생고무 (Y(20) + X(3) = 23) → 23 류

H S 類의 構成表

X Y	0	1	2	3	4	5	6	7	8	9
0	산동물	육	어(무척수류생)	낙농품	돈녹모용	수목	야채	과실	차	
10	곡류	전밀가분류	종공식자업인삼용물	식액물성즙	식련조물물	동유식물지	육조어제의품	당류	코코아	곡분
20	채통과조즙소림등	조제식품수	음료(사조제)료	연(대용물)초	토시멘트석트	금(및금광속재속광)	석유	무화합물	유화합물	
30	의약품	비료	유색연제소	향화장료품	비누	단백질계질	화(화공품)약	사물진용품	화생산공업품	플라스틱
40	고무	피혁	피혁제품	모피	목재	코르크	갈짚포벽지제품	펄교프지	지	(서적)
50	견직물	양모직물	면	기타직물	인섬조장유	인단섬조유	부필직포프	카페트	특수직물	도용포제방직품
60	메리야스물	의류	기타방직제품	보마고의	신발류	모자	우산	우모인발	석스티플라 등	도내도자자화제기념물
70	유리	진주금등속	철강소재	철강제품	동	니켈	알미늄		납	아연
80	석(주석)	기비타금의속	공구	비제금속품	기원자계료	전기기기	철기관도차	자부부동분차속품	항우공선	선박
90	광등부학기부기속품	시계	악부부분기속품	가침조구명구류품	완부부구분등속품	잡	꼴동품			

※ 독해 : 고무 (Y(40) + X(0)= 40) → 40 류 품

• 特色比較

CCCN과 SITC特徵別 比較

	CCCN	SITC
目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關稅目的 品目表 - 生產段階別의 稅率差等 - 機能・用途類似品의 均衡稅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統計目的 品目表 - 貿易統計資料 수집 - 經濟分析比較 容易
分類原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同一類에 同一原料로 부터의 製品을 一括分類 • 多數의 分類基準組合 - 組合原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分類: 材質別 - 小分類: 生產段階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物品種類別 - 食料品, 加工品, 原料品 等 • 左同 - 組合原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分類: 用途, 生產段階別 - 小分類: 材質別
特掲對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貿易量의 大소에 불구하고 다음 조건의 것이 特掲됨 - 產業保護・關稅徵收必要品 - 높은 附加價置品 - 貴重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貿易量이 많은 것 中心特掲 - 稅率의 高低 不拘 - 主要交易品
細分類基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貿易量이 많아도 다음 물품은 細分하지 아니함. - 低稅率品 - 無稅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貿易量이 적은 것은 高關稅의 물품도 細分類하지 아니함.
品目表解設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體解說書 있음. - 分類意見 差異 解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體解說書 없음 - CCCN 解說書 採用

◆ 해석기준 ◆

<1>

[FOREWORD]

The Correlation Table enables data based on the SITC, Revised, to be transposed into the framework of the BTN.

Accordingly, these SITC, Revised, titles cannot be regarded as finally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corresponding BTN heading. This scope is governed solely by the provisions of the Brussels Nomenclature itself (Interpretative Rules, Section conjunction, where appropriate, with the Brussels Explanatory Notes).

(CCC Brussels Nomenclature 1970) p.-184

<2>

[INTRODUCTION]

20 The titles of the headings of the SITC Rev.3 have been aligned with the Text of the HS or CCCN heading wherever feasible but the full text of HS is not included in this publication. The content of each heading is identical in turn is determined by the documentation of the Customs Co-operation Council.¹⁹⁾

< SISC Rev. 3 P. XI >

주; 19) Alphabetical Commodity Indexes for the SITC Rev.3 and HS Will be prepared jointly by the Statistical offices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Secretariat of the Customs Co-operation Council.

第2部

SITC와 CCCN의 相關關係

第1章 國際標準 貿易分類의 概要

第2章 SITC品目表의 發展沿革

第3章 SITC의 構造 및 特徵

第4章 SITC·CCCN·HS의 相關關係

第5章 關稅의 觀點에서 본 SKTC

第1章 國際標準貿易分類의概要

현재 UN통계국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國際貿易統計年鑑」 yearbook of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 「商品別貿易統計」 Commodity Trade Statistics, 「統計年鑑」 Statistical Yearbook, 「統計月報」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의 집계시에 사용하고 있는 品目表와 我國의 경제·流通분석, 商品別貿易資料의 國內外的 비교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品目表은 「SITC」로서, 정확히 말한다면 「SITC Rev.3」이다.

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는 1950 年 「SITC 원전」의 채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세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즉,

1950 年의 「SITC original」

1960 年의 「SITC Revised」

1975 年의 「SITC Rev. 2」

1985 年의 「SITC Rev. 3」 등이 그 예이다. 「SITC」는 “국제표준무역분류”라 번역되고 있다.

「SITC Rev. 3」은 「HS」 Harmonized System라는 多目的品目表의 제정에 즈음하여 UN 統計委員會가 「SITC」와 「HS」체계와의 연계·전환을 위한 「SITC Rev. 2」의 개정의 必要를 느껴, 이의 실현을 위하여 UN통계국이 작성한 것으로, 이 統計品目表은 1985年5月에 개최된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사용에 관한 결의안으로 승인·채택된 것이다.

이에 따라 UN은 1988년부터 각 나라가 「SITC Rev.3」에 의거, 무역통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각 나라는 SITC를 기초로 品目別의 貿易統計를 집계하여 UN에 報告하고 UN은 이 보고자료에 의해 UN 가맹국의 무역(수출입) 통계를 品目別로 比較對查할 수 있도록 編成하고 있으므로 SITC는 국제적 통계분류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당국은 HS의 국내도입에 대처하여 HS 체계에 의한 「한국통일상품분류 : HSK」, 「新관세율표」와 「HS 관세율표 해설서」를 완성하였으며, (MOF : 재무부, 주관), HS 체계와 상호 조화된 SITC Rev. 3 체계의 새로운 제 8 차개정 SKTC (Standard Korean Trade classification)를 제정하였다. (EPB : 경제기획원, 주관)

第2章 SITC 品目表의 發展沿革

1. 國際統計品目表의 必要 … 1930年代

통일된 國際標準貿易品目表는 오래전부터 關稅分野에서 뿐만 아니라 統計分野에서도 실로 심각하게 요구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분석과 상품별무역자료의 국제비교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으나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비교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다시말하면, UN은 1937년에 작성한 「세관품목분류초안」=「UN 품목표」=「잠정제네바 품목표」 Draft Customs Nomenclature의 개정案을 기초로 1938년에 「국제무역통계를 위한 商品最小目錄」 Minimum List of Commodities for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을 발간하여 경제·流通 분석과 상품별 무역자료의 국제 비교를 가능케 한 것이다.

2. SITC原典의 作成 … 1950年代

UN 통계위원회 제3차 총회에서 그간의 국제무역구조의 큰 변화에 따른 경제분석과 상품별 무역자료의 국제비교·분석이 보다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각 나라, 정부간 단체 및 국제기관의 증가된 요구에 맞도록 동「상품 최소목록」의 개정에 관한 권고안이 채택되고, 1950년 7월 12일에 개최된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UN 통계위원회 제5차 총회의 권고에 따라 UN 통계국이 작성한 (이때

각국 정부와 전문고문단 Expert Consultant의 협력을 거친) SITC

Original이 정식으로 승인된 것이다. 이 品目表는 10部 Section,

52類 Division, 150群 Group, 570項目 I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品目表는 1948~50년간에 통계분야뿐 아니라 관세분야에도 통일된 국제적 표준분류의 필요가 요구되어 「구주관세동맹연구단」

European Customs Union Study Group이 1937년의 제네바품목표

(제1차개정)를 기초로 1948년에 브랏셀品目表(BTN)草案을 작성하고 1950년에 關稅協力理社會(CCC)가 BTN을 완성할즈음 제정된 것이다.

당초의 BTN과 SITC의兩品目表는 상이한 목적을 위해 전연별 개로 작성된 품목표이기 때문에 전체 혹은 세부계획의 일치나 조화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1951年에兩品目表間을 연계한 「TWO-Way Coding Key」가 제정 되었다.

3. SITC原典의 改正…1960年代

세관에서 작성된 BTN에 의한 각종 상품자료를 SITC체계의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BTN체계상 품목을 SITC체계상 품목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이럴 경우 대단한 불편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다시 전환 분류하는 데에는 상당한 통계자원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1951년부터 1956년 사이에兩品目表間의 대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品目의 연계작업이 있었다. 그 결과 「SITC-BTN연계표」 New Table가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 연계표는一方의 品目表의 각 項目的他方의

品目表의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가를 表示한 것이다. 1對1의 對應은 아니다.

그후 SITC와 BTN을 어느 것이나 全完하게 對應케 하고一方의 表에서 작성된 통계를 他方表의 통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연계표의 필요욕구가 높아져 이의 실현을 위해 UN과 CCC가 1958년부터 60년까지 共同作業을 진행하였다.

〈表-1〉 BTN과 SITC연계

'51 ~ '56년형연계표			'58 ~ '60년형연계표		
BTN		SITC	BTN		SITC
Heading	품명	Division	Heading	품명	Division
0701	야채	054.1 054.4 054.5	0701	A 감자 B 토마토 C 기타	054.1 054.4 054.5
2710	석유, 석유제품	331.02 332.1 332.2 332.3 332.4 332.5 332.91	2710	A 조유 B 휘발유 C 등유 D 경유 E 중유 F 윤활유및윤활제품 G 기타	331.02 332.1 332.2 332.3 332.4 332.5 332.91
8459	기타의자재	771.7 719.8	8459	A 원자로및그부분품 B 기타	771.7 719.8

(註: AB…는 補助單位를 나타내는 符號이다.)

이 결과, BTN 1098 호 Heading 중 119 號가 총 333 품목으로 細分되고 當該細分品目을 포함한 BTN 각 항목의 품목범위와 일치하도록 SITC의 각 항목의 크기를 다시 정하고, 이 항목을 SITC의 배열로 나열한 「SITC Rev.」를 제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SITC Rev.의 각 항목은 무역상품의 급속한 증가와 상품 패턴의 변화, SITC와의 연계필요에 따라 개정된 1955년의 BTN의 각 항목과 1對1로 거의 대응하게 되었다.

위의 [표-1]은 1951~1956年型의 BTN-SITC 연계표와 1958~1960年型의 BTN-SITC 연계표간의 차이를 例示한 것이다.

4. SITC Rev. 2의 制定…1970年代

통계위원회 제15차 총회(1968年11月)에서는 SITC Rev. 제정 등기와 같은 자유로 대외무역통계의 편성 및 분석에 적전하도록 SITC Rev.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이의 실현을 위해 UN통계국은 2회의 전문가회合 Expert Group을 개최하였고(1차: '69년 11월, 2차: '70년 6월), UN 경제·사회이사회는 1차회합의 결과 및 UN통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豫備草案을 작성→2차 회합에서의 예비초안에 대한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의견 검토반영→1972년 1월에 SITC Rev. 2 원안제정→기본골격승인→통계위원회 18차회의('74년 10월)에 서의 전문가회합등의 意見書(例: 전문가 회합, 각국 및 국제기구가 제시한 견해)와 SITC/BTN 작업단의 작업결과에 관한 권고

를 받아들여 UN 경제사회이사회(1975) 이를 채택하였는데 이것이 「SITC Rev. 2」이다.

여기 SITC/BTN 작업단은 CCC가 BTN과 SITC 간의 관계를 품목對 품목으로 연계하도록 설립한 작업 그룹이다.

5. SITC Rev. 3의 制定… '80 年代

세계무역패턴, 과학기술의 변화는 현행 CCCN의 Sub-Division(細分)만으로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주요 무역국과 국제기구들은 1970년에 통일된 경제관계 品目表(통일 코드)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CCC에 統一코드의 제정 가능성을 검토 의뢰하기에 이르러, 統一코드의 제정작업을 HSC(Harmonized System Committee)가 1973년에 CCC 내에 구성되고 同委員會에 의하여 1,011개의 4단위 체계의 CCCN을 베이스로 5,019개의 6단위 체계의 HS가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UN통계위원회 21차총회(1981년 1월)에서 「HS」 및 「New CCCN」의 시행에 맞추어 3차개정 SITC가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1982년에 UN통계국이 SITC Rev. 2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각국 정부, 국제기구의 자문과 전문가단의 도움을 받아 최종안인 「SITC Rev. 3」를 완성하게 된 것이다.

이에 「SITC Rev. 3」안이 통계위원회 23차 총회(1985년 2월)에서의 수정·승인과 권고에 따라 22차 경제사회이사회(1985년

년 5월 28일)에서 채택되었다.

한편, UN 회원국들은 SITC Rev.3에 의한 무역통계자료들을 가능 한 국제적으로 널리 또는 빠른 시일내에 보고하도록 권고받고, UN기구가 진행하는 SITC '데이터'는 가능한한 SITC Rev.3에 기준하도록 권장하였다.

第3章 SITC의 構造 및 特徵

1. SITC의 定義

CCCN이 關稅目的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통일품목분류표라면 SITC는 統計目的을 위하여 제정된 특정용도의 통계용 통일품목분류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SITC는 對外貿易의 대상이 되는 商品의 통계분류표로서, 경제분석과 상품별무역의 국제비교를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商品統計基準을 제시한다.

무역관련통계를 위하여 1950년대에 SITC와 EC의 NIMEX(구 주공동체무역통계표)가 考案되었고, 운송통계를 위하여 ECE의 CSTE(Commodity Code for European Transport Statistics) 품목표 등이 작성, 사용되어 왔다.

SITC의 形態는 ① 1950년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된 무역통계를 위하여 작성된 SITC原典 ② 1960년의 BTN과 SITC 간의 1對1 對應을 위한 SITC 원전의 개정판인 SITC Rev. ③ 1974년, 그 시점의 최신 BTN과 SITC 간의 대응을 위한 SITC Rev.의 개정판인 SITC Rev. 2 ④ 1985년의 多目的品目表인 HS체계와의 연계를 위한 SITC Rev. 3 등 4개 類型으로 구분된다.

2. 「SITC」의 構造

「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

tem 가

- GRI : 解釋에 관한 통칙
- Note : 註(部, 類 및 小號의 註)
- Section : 部
- Chapter : 類
- Sub-Chapter : 節
- Heading : 號(4 단위)
- Sub-Heading : 小號(6 단위)
- Numerical Codes : 관련 코드번호

등으로 구성되고 코드번호(부, 류, 절, 호)는 아라비아 숫자에
의한 10진법으로 편성되고 있는 반면에

「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는

- Section : 部
- Division : 類
- Group : 群(細目)
- Sub-Groups : 小群(細目)
- Item : 項目
- Title Description : 部, 類, 號의 표제, 品名
- Numerical Codes : 관련 코드번호

— 아라비아숫자

— 로마숫자(예외 물품 집계)

로 구성되어 있다. SITC는 HS와 같은 분류지침을 규정한 분류
표의 「解說에 관한 通則」「註」 등이 없다. 따라서 특정한 號
의 범위나 정의의 결정은 편의상 CCCN(HS도 마찬가지)의 해

석기준(예: 해설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HS의 코드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10진법에 의하여 부여하고 있으나, SITC의 경우, 금·통화등 통계표에 포함되지 않는例外的인 物品에 대한 HS와의 대응을 위하여 아라비아숫자에 의한 코드번호외에 로마숫자의 코드번호가 부여된 임의의 호(例: 1화폐用 金等)가 있다.

〈表-2〉 SITC Rev. 3 상 로마숫자의 別途分類號 발췌

REV. 3	HS or CCCN	SITC REV. 2
I GOLD, MONETARY	7108.20	I
II GOLD COIN AND CURRENT COIN	7118.90	II

SITC의 각 상품별 코드번호는 CCCN·HS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DP(自動資料處理機)로 각 단계에 해당하는 자료를 얻는데 편리하도록 만들어 졌는데, 즉 최초의 1자리 숫자는 「Section」, 2자리 숫자는 「Division」, 3자리 숫자는 「Group」, 4자리 숫자는 「Sub-Group」, 더細分되는 경우에는 5자리 숫자로 표기하는데 이는 「Item」을 나타낸다.

SITC Rev. 2의 경우, 5자리 숫자를 끊거나 5자리 숫자에 꿀호로 끊은 알파벳 문자를 추가하여 (例: 65 1.99(a) : yarn true hemp, 65 1.99(b) : paper yarn), 補助號로 잠정 Heading을 사용하였다. 잠정 Heading은 BTN Heading 중 경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Heading 을 통합 삭제하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남아 있도록 설계된 Heading 을 가리킨다.

그리고 각 나라는 自國의 必要에 따라서 1 자리를 追加하여 6 자리 또는 그 이상의 단계로 세분하여 code 化 할 수 있다.

SITC Rev. 3 과 SITC 원전, Rev. Rev. 2 간의 구조별 항목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항 목 비 교

구 分		별 표	SITC 원 전	SITC Rev.	SITC Rev. 2	SITC Rev. 3	비 고
구 성	부 Section(대분류)	10	10	10	10	10	1 자리수
	류 Division(중분류)	52	56	63	67	2 "	
	군 Group (소분류)	150	177	233	261	3 "	
	소군 Sub-Group (항목분류)		625	786	1,034	4 "	
	◦ 4 단위 未細分		368	351	314	4자리밖에 "0" 표기(예:XXXX0)	
	◦ 5 단위 細分		(257)	(435)	(720)		
항 목 Item		570	944	1,573	2,805	5 자리수	
최 종 항 목 수		570	1,312	1,924	3,119		

(최종 항목수에는 별도例外物品集計항목 I, II를 포함하지 아니하였음)

SITC의 최종항목수 (4-5 자리수 항목)는 위 표에 의하여 SITC가 發展·改編되면서 증가되고 있는 면을 볼 수 있다.

3. SITC의 特色

가. 分類對象面의 特徵

SITC Rev. 3은 SITC 原典, SITC Rev. 1,2의 경우와 같이 무역거래에 관계되는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제정되었다.

통계위원회는 SITC Rev. 3가 관세區域에 들어오거나 또는 나가는등 이동의 결과로 同상품의 원재료가 추가되거나 감소되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포함한다고 권고하였다.

貿易商品의 거래는 ① 보통의 상품거래외에 ② 정부무역거래(예: 외국 원조물자, 전쟁배상금, 군수품거래) ③ 외국특허권소유거래, Foreign Concessionnaire 및 ④ 우편거래도 포함된다. 또한 ⑤ 外國船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어류수입과 ⑥ 國內船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어류수출도 여기에 포함한다. ⑦ 이들이 국가의 대외무역통계에 포함되는 한 창고, 보세창고, 재수입품, 재수출품, 병거거래(Trade in bunker) 및 外國船機(선박과 항공기)에 저장하는 비품 등도 SITC Rev. 3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수송을 목적으로 어떤 나라를 지나는 通過貨物은 제외된다.

금 및 발행되어 유통중에 있는 通貨나 소유권 권리증서(증빙)에 대하여는 그의 이동이 물적 자산보다는 어느 면에서 금융자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SITC는 이를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銀은 대하여는 발행이 끝난 은화를 제외하고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상품무역과 금 및 통화의 거래에 관한 자료를 단일 보고서에 집계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 나라의 편의를 위

해서 SITC는 이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示唆되어 있는데 그와 HS의 대응관계는 앞의 <표-2>와 같다. 이와같이 취급은 HS·CCCN의 금과 통화들을 포함 분류하는 것과 다른점이라 할 수 있다.

나. CCCN·HS 와의 比較

SITC는 巨視的 경제분석을 위한 통계 품목분류표라 말할 수 있다. SITC는 우선 모든 물품을 「식료품 및 동물」의 그룹과 「광공업품」의 그룹으로 크게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SITC와 CCCN·HS兩者間의 조화는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두 분류체계간을 완전히 조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SITC와 CCCN간의 상이한 분류기준에 의한 구조상 차이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例가 섬유분야인데, SITC는 1차 가공단계(상이개념)별로 섬유원료→絲→직물순으로 크게 분류하고 2차로 원료(하위개념)별의 견→모→면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CCCN의 경우는 1차원료별로 즉, 견→모→면 순으로 大別하고, 2차로 가공단계별의 섬유원료→絲→직물로 각 배열하고 있다.

SITC의 경우, 국제무역량이 많은 물품은 主要交易品으로 인정하여, 관세율의 高低를 불문하고 特掲細分하고 있으나 반면에 CCCN이 경우, 산업보호, 관세징수의 필요가 있는 물품, 높은 부가가치품, 귀중품 등이 무역량의 多小에 불구하고 특별세분되고 있다. 다시말하면, 관세취급자들에게 관심있는 품목이 통계취급자들에게는 관심밖의 품목으로, 무역통계 취급자의 관심품목이 관세취급자들에게는 관심밖의 품목으로 각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CCCN·HS는 분류의 통일을 위하여 분류에 관한 규칙 (Rule)이 설정되고, 용어도 간명하면서도 아주 엄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관세율표는 법상의 품목표로 세금의 징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으므로 그 적용이 비교적 정확하다. 그러나 SITC는 권고적 품목표로 통계자료도 CCCN (HS도 마찬가지)의 경우보다 부정확하다.

第4章 SITC·CCCN·HS의 相關關係

1. SITC·CCCN·HS의 區分

국제기구·정부·공공단체·기업이나 개인등 산업·經濟圈域別 활동주체들은 각자의 상품분류의 필요·용도에 따라 나름대로의 편리한 상품 품목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면 각 나라의 관세당국은 관세의 목적으로 「관세 협력 이사회 품목표」 CCCN·「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 연합관세율표」 TSK 등, 통계취급자들은 경제분석과 상품별 무역 자료의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SITC·NIMEX·「캐나다 수입통계표」 ICC·「한국 관세 행정 통계분류표」 CCCNK 등, 운송·보험업자들은 운송·보험료율의 적정한 부과를 목적으로 「세계 항공화물 분류표」 WACC·「해상 보험료율표」 MITK·「극동 해운운임동맹 운임요율표」 FEFC Freight Tariff 등을 각각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者들은 각 나라 권역마다 서로 다른 品目表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品目·商品名·商品의 定義·분류체계나 코드번호 등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깨닫기 시작하고, 이와 같은 연유에서 국제무역의 촉진을 위해 세계적으로 統一된 品目表를 制定하여야 한다는 要望이 높아짐에 따라 統一된 관세목적의 국제品目表인 CCCN과 아울러 세계무역의 통계(무역 비교, 경제분석)를 목적으로한 국제品目表인 SITC가 제정된 것이다.

물론 CCCN은 당초 관세목적뿐 아니라 통계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정·권고된 것으로 관세목적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In Brief, CCC발간 81.7 참조)

실제로 CCCN은 관세징수를 위한 관세율표나 관세행정에 필요 한 자료집계를 위한 통계품목표로 각국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예 : CCCNK, 「일본수출통계품목표」 ESSJ 등). 반면에 SITC의 경우도 국제무역의 통계 (예 : 수출, 수입, 운송통계) 뿐 아니라 관세목적으로도 일부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면 남미의 일부 국가나 영연방국가들에 의하여는 SITC가 관세 목적이 品目表로도 사용되어 왔다. (ST/ESA/STAT/SER.M/34 Rev. 2, UN 통계국 발간 참조).

물론, CCCN과 SITC는 관세·통계에兩用되어 왔으나, CCCN의 경우 主用途는 관세목적, SITC의 경우 主用途는 통계목적으로 제정된 품목표임으로 양자간은 구분되고, 뿐만 아니라, SITC는 운송·보험·창고·기타 분야에 공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多目的 공통품목표인 HS와도 구별된다.

2. CCCN·HS 와의 連繫 必要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들은 경제분석이나 무역상품별 통계자료를 「SITC」에 의하거나 「SITC·CCCN 상관표」에 의거 整合해 오고 있으며, 주요 국제기구들도 SITC를 세계무역통계자료의 집계를 위한 기본품목표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관세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품목표에는 CCCN (BTN의 後身, 1976. 6월에 CCCN으로 개칭)으로 현재 동 품목표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150여 국가에 달한다.

SITC는 UN이 권고(Recommendation)하는 「勸告型 品目表」이나, CCCN은 국제협약상 채택된 「協約型 品目表」이다.

CCCN은 여러 국가, 특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세관에서 품목분류를 해 오던 체계를 따른 것인데, 관세행정의 필요에 맞추어 품목의 분류기준은 체품원료에 따라 그룹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통계취급자 (예: 국제기구, 정부, 단체등) 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CCCN에서 얻기 위하여는 이를 SITC체계로 품목분류를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SITC는 巨視的 경제분석을 위한 품목표로서 분류체계가 그 목적상 식품·원료·화공약품·기계류 및 산업원천별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제무역통계의 작성시 사용되는 자료는 그 자료자체가 CCCN의 분류체계에 기초하여 세관 통관창구에서 처리된 수입신고서로부터 집계하고 있다.

그러나 양품목표간에는 기본구조의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양 분류체계 사이에 긴밀한 상호연계를 설정할 필요를 오래 전부터 느껴왔다. 이러한 연유로 CCCN체계로 집계된 세관의 자료를 SITC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연계표를 제정하는 작업이 「관세협력이사회」 CCC 와 「국제연합통계위원회」 UNSC에 의하여

공동으로 1951년부터 착수되어 그 작업의 결과 처음으로 「Tw-way Coding Key」가 개발되고, 여러 차례의 변경을 거쳐 마침내 1985년 2월 SITC Rev. 3와 HS·CCCN간 상관표의 制定에 까지 이르렀다.

SITC와 HS 간의 관계도 HS가 비록 다목적품목표의 분류체계로 편성되어 있으나 主要격은 CCCN을 母體로 하고 있으므로 SITC와 CCCN 간의 관계와 거의 同一하다.

3. 用語統一

兩品目表간에 표기된 품목명의 相異는 실제 동일한 품목이라도 분류체계상 배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SKTC는 통계 필요상 통용되는 상품명을, CCCNK는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일반화된 상품명을 각각 선별했기 때문에, 용어간에 상이가 있을 수 있으나, SITC Rev. 3의 품명의 구성은 HS 품목표상의 품명을 거의 copy 한 정도이다.

따라서 HS와 SITC간의 자료전환과 비교가 더욱 쉽게 되었다.

(※ ISI Report, 1984. p-983)

품명통일의 例示

S I T C	C C C N (과H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de No. 661.31 ... Rev. 「Paving and Flagstones of nature sto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de No. 6801 ... CCCN 「Road and paving setts curbs and Flagstones of nature stone (Except sl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de No. 661.31 ... Rev. 2 「Road and paving setts, curbs and flagstones of natural stone (except slate)」 <p style="margin-left: 2em;">〈註 : CCCN 품명에 일치시켰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de No. 6801 ... CCCN 「上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de No. 661.31 ... Rev. 3 「右同」 <p style="margin-left: 2em;">〈註 : HS 품명과 일치시켰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de No. 6801.00 ... HS 「Setts, cubstones and Flagstones, of natural stone (except slate)」

4. SITC와 CCCN의 연계

가. 相關表의 定義

「SITC와 CCCN간 상관표」 (a Correlation table, SITC and CCCN)는 CCCN形 관세율표에서 집계된 통계자료를 간편·신속·정확하게 SITC를 베이스로 집계한 통계자료를 CCCN으로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시 말하면 SITC와 CCCN의同一 품목간을 연계한 表 Table이다.

상품분류란 ① 하나의 상품群과 다른 상품群과의 구별을 밝히고 그 「그룹」마다 일정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상품을 체계적

으로 類型化하는 것, 또는 ② 상품이라는 포괄적 특성을 형성하는 공통적 集群가운데서 상품의 사용목적, 용도에 대응하여 동질적 속성을 가지는 個別商品群을 확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각종 품목표 Nomenclature는 분야별 사용목적에 따라 그에 맞는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상품들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品目마다 코드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때 품목표상에 계기하고 있는 상품(품목)들의 명칭은 ① 「集合상품명」 ② 「合成・複合상품명」 ③ 「並列상품명」 ④ 「混合型상품명」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각 품목표간의 상품을 분류·연계시키는 작업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상품명칭들은 각 품목표마다 다르게 표시되고 있어 그 배열편속되고 있는 商品에 관한 定義나 범위의 동일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한편의 품목표상 집합상품명과 다른 쪽의 합성·병렬·혼합형 상품명과 분류 연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나. 相關表의 변모

- ① SITC Original 과 BTN 간 연계 (Two-way coding Key 제정)
UN이나 CCC의 상품분류 전문가들은 SITC와 BTN은 국제무역분야에서 불가분의 관계와 상호 의존성을 가지므로 양자간 자료의 신속·정확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여, 1951년에 UNSO와 CCC가 SITC원전과 '50 BTN(1950년의 BTN) 초안의 동일 품목간 연계를 위한 「Two-way coding key」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양품목간에는 분류체계, 품목명 Title, Description, Texts 및 품목범

위가 相異하여 1 품목 對 1 품목으로 완전하게 일치하는 대응표는 아니다. 예를 들면 채소의 경우 BTN에서는 하나의 호 Heading 「0701」에 포함 분류하고 있으나, SITC에서는 감자는 「054.1」 토마토는 「054.4」 기타 채소는 「054.5」로 3분 배열하고 있어, 채소 1 품목은 감자등 3 품목과 연계되는데 이런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② SITC 원전과 '55의 BTN간 연계 (New Table 제정)

UN, GATT, ECE 및 CCC는 1955년에 '50의 BTN 초안에 대한 전면 改正에 맞추어 현행 상관표도 「개정 BTN」을 기초로 조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리하여 관계 전문가들이 이 1956년 4월에 '55의 BTN과 조화되는 「新상관표」 New Table를 제정하게 되고, 이어 유럽경제회의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同表가 각국에 통고된 것이다.

1958년 8월에 UN기구가 주최한 관련 기술회의에서는 SITC 번호가 병기된 하나의 관세율표형 코드 「Tariff Codes」의 구성에 관한 검토가 있었다. (CCC발간, Bulletin No. 5 참조) 그러나, 新相關表도 양자간의 연계를 위한 항목세분을 하였음에도 무역통계취급 자들에게 만족을 줄만한 것이 못되었다.

③ SITC Rev와 '59의 BTN간 연계 (1차 상관표작성)

그리하여 만족할만한 신상관표 작성의 노력이 계속되어 1959년 5월에는 CCC본부에 UNSO, EEC, GATT, OEEC 등의 대표각 모여 SITC·BTN간 품목의 일치를 위한 SITC의 개정을 진행할 것을 합의하고 동년 10월에는 뉴욕의 UN본부와 파리의 OEEC

본부에서 修正相關表案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동년 12월에는 위 회합에서 검토된案이 다시 손질되고 전문가들에 의해 SITC Rev로 알려진 SITC/BTNⅢ, 상관표안 Draft Correlation Code, New Code가 최종 작성되었으며, 이案은 비로소 1960년 4월에 UN통계위원회에서 새로운 안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일반적으로 「1次相關表」라 부르고 있는 것은 이案을 말한다. 그런데 이案은 종전의 상관표보다 SITC와 BTN간의 상관관계를 거의 완전하게 표출하고 있다.

BTN 품목표에서는 SITC 품목표의 Sub-Group(4단위), Item(5단위)의 품목간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BTN總 1098號(4단위 Heading) 중 113號를 334개의 「統計小號」 Statistical Subheading로 세분하였다. BTN상 통계소호는 아라비아숫자로 된 4자리 밖에 영문 A, B, C……등으로 표기되고 있는데 補助號라 호칭한다. (예 : BTN 1701(A) : 설탕)

다만, 「통계소호」는 권고적 사항으로 「호」의 경우와 같이 협약상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SITC Rev와 '60의 BTN의 최종 항목수를 대비해 보면 1332 항목대 (별도분류- 7개호 포함) 1319 항목으로 전체적으로는 1品目대 1品目간의 대응을 이루고 있다.

상관표는 다음과 같이 ① BTN의 號와 보조호 순서별로 주로 SITC 「소그룹」(4단위) · 「항목」(5단위)를 연계한 형과 (例 1) ② SITC의 코드번호별로 BTN의 호·보조호를 연계한 형(例 2)으로 설계되어 있다.

〈 예 1 : BTN 순서별 〉

BTN No	SITC No	품명
17,01		Beet Sugar and Cane Sugar Solid
	061,1	A. Raw Sugar
	061,2	B. Other

〈 예 2 : SITC 순서별 〉

SITC NO	품명	BTN NO
061		
061,1	Sugar,beet and cane, Raw, solid	1701 (A)
061,2	Refined sugars and other products of Refining Beet, and cane Sugar, solid	1701 (B)

④ SITC Rev. 2 와 '74의 BTN 간 연계 (2 차 상관표 제정)

사실상 1960년이후 무역 규모의 급속한 증대와 상품 패턴의 변화로 무역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결과로 UN 통계위원회, 15차 총회(1968.11)에서 무역 통계의 집계와 분석에 적합하도록 하는 SITC Rev의 개정이 권고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개정안의 검토를 맡은 전문가단이 1969年 初에 창설되었다. 동 전문가단은 1969년 말부터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1972년 1월에 SITC Rev. 2 개정안을 작성하기에 이르렀고 BTN과의 상관관

계도 재검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2년 9월에 CCC는 SITC/BTN 작업단(새로운 CCCN/SITC의 상관표 작성을 목적으로 관세·통계전문가와 유관 국제기구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위원회)을 설치하고 9차례의 회의를 개최 1974년 9월에 상관표 작성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통계위원회 18차 총회('74.10)에서 각국 및 국제기구의 의견서, 전문가단의 견해와 CCC 임시위원회의 상관표 작성안을 토대로한 최종안의 승인을 거쳐, UN 경제·사회이사회 본회의('75.5)에서 마침내 최종안이 채택되었다. 물론 동 SITC Rev. 2는 BTN의 號·小號를 연계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이 표는 1차 相關表와 구분하여 「2차 상관표」라 호칭한다.) 이즈음, CCC에서 SITC Rev. 2와의 연결을 위해 '65의 BTN(1차개정) 및 '72의 BTN(2차개정)의 1098개 號에 대한 號의 削除, 통합, 신설 등 수정작업을 한 개정안이 작성되었는데(3차 BTN개정안), 同案은 1976년에 승인되고 1978년에 발효되었다. 동 CCCN 품목표(BTN의 後身)의 號의 구성은 2차 BTN 개정안의 1098개 호중에서 90개호의 삭제, 2개호의 신설, 260개호의 통합, 분할등 총 1011개호로 축소되고 이것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In Brief, 그런데 이 BTN연계型의 SITC Rev. 2는 1976년 1월 1일부터 사용하도록 권고되었다.

⑤ SITC Rev. 3와 HS간 연계(3차 상관표 제정)

1970년대에 품목표의 사용자들이 CCCN의 보조號만으로는 SITC와의 연계 등 그들의 필요에 불충분하다는 사실의 발견과

분류체계·용어·코드번호가 통일된 품목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표명에 따라 이런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한 HS 품목표의 개발이

'7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83년 6월 61/62차 CCC

총회에서 「HS 협약」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CCCN은 협약상 4 단위 號와 권고호인 5 단위 보조용 統計號

로 구성되고 있으나, HS는 협약상 4 단위 號와 5·6 단위 小號로

구성된 것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1981년 1월 UN통계위원회

21차 회의에서 HS와 New CCCN이 발효될 때까지 SITC Rev.

3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데 관심을 표명하고, 다음 해에는

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작업의 기본방향은 SITC Rev. 2의 일반적인 특성과 구조는

그대로 살리면서 HS, 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of all Economic Activities), CPC (Central Pro-

duct Classification) 등 분류체계를 참작한다는 원칙 하에 진행되

어, UN통계위원회 2·3차 회의 (1985년 2월)에서 최종안이 수정·

승인되고, 1985년 5월 UN경제사회이사회 23차 회의에서 SITC

Rev. 3가 채택되고, 1988년부터 무역통계자료의 집계에 사용하도록

각 나라에 권고되었다.

동 품목표의 본문은 코드번호 순서별, 품목별로 3 단위 (Group)

4 단위 (Sub-Group), 5 단위 (Item)에 대응되는 HS 4 단위 (Head-

ing), 5~6 단위 (Sub-Heading)를 상호 연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부록에는 HS 또는 SITC Rev. 2의 코드번호 순서별로

SITC Rev. 3의 대응항목을 연계하고 있다. 이 표는 위 2 차상

관표에 이어 세번째 개정된 SITC Rev. 3과 HS 간을 연계시킨 품목표라 하여 편의상 「3次 相關表」라 호칭하고 있다.

특히 SITC Rev. 3의 品目名은 HS의 품목명과 거의 동일하게 표시하고 있어 1品目對 1品目の 연계가 아주 쉽다. 그러나 3차 상관표는 HS의 항목수가 SITC의 細分 項目數 보다 많기 때문에 SITC의 1개 항목에 HS 2개항목 이상이 집합·연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2차 상관표가 CCCN의 1개항목에 다수의 SITC 항목이 연계된 것과 비교된다.

SITC Rev. 3의 제정작업시 당초 동품목표의 편성·항목수는 약 7,000개 項目으로 편성된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나, HS항목수 보다 의 세분은 HS의 세계적 실시에 장애가 된다는 반대의견에 부딪쳐 최종항목 3,119개 (별도분류 2개호와 3단위 미세분 8개號는 불포함)로 축소된 것이다. SITC 와 CCCN간 연계 항목수를 상관표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SITC·CCCN·HS의 단위별 항목 대비표

단위 내용별		상관표별		1 차 상관표		2 차 상관표		3 차 상관표	
		SITC.R	BTN(60)	SITC.R-2	CCCN(76)	SITC.R-3	HS		
3 단위	3 digit	(177)	-	(233)	-	(261)	-	-	-
	• 3 단위 未細分	(13)	-	(15)	-	< 7 >	-	-	-
	• 3 단위 細分	(164)	-	(218)	-	253	-	-	-
4 단위	4 digit	(625)	(1,098)	(786)	(1011)	(1034) <1033>	(1241)		
	• 4 단위 미세분(A)	368	985	351	749	314 <313>	311		
	• 4 단위 세분	(257)	(119)	(435)	(262)	(720)	(930)		
5 단위	5 digit	(944)	(334)	(1573)	(1094)	(2805)	(3558)		
	• 5 단위 미세분(B)	944	334	1511	1094	2805	2453		
	• 5 단위 세분 (C)	-	-	(62)	-	-	(1105)		
위	5 단위 최종항목 (D) (A+B+C)	1,312	1319	1924	1843	3119 <3118>	3869		
	6 digit (E)	-	-	146	-	-	2255		
6 단위	• 6 단위 미세분(E)	-	-	-	-	-	-		
	• 6 단위 세분	-	-	-	-	-	-		
위	6 단위 최종 항목(F) (A+B+E)	-	-	2008	-	-	5019		
	Rome 숫자에 의한 별도 분류호 (G)	7	-	2	-	2	-		
최종항목총계 I=D+G J=F+G		I:1319	I:1319	J:2010	I:1843	I:3121	J:5019		

資料 : ① BTN(60)은 CCC사무국 발간 "The CCC Nomenclature"(1979.9) p-34 참조

② CCCN(76)은 CCC발간 "CCC Nomenclature" (1976.5版) 참조별표 - 2

註 : 위 표중 <> 부호는 SITC Rev.3 원전의 집계오류숫자를 표시한 것임

(예 : 33류 최종기본항목 8개를 7개로 착오집계)

⑥ 3 次 相關表의 例外取扱品目

「SITC 와 HS・CCCN 간의 상관표」는 CCCN 형 관세품목표를 사용하는 수많은 나라가 동관세품목표에 적합한 자료들을 SITC 형 통계자료로 간단・신속・정확하게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기능의 發生은 양자간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UN과 CCC는 각 나라에 관세 목적을 위하여 HS・CCCN 체계를, 생산・수출입 통계 등의 목적에는 SITC 체계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2개의 분류체계는 각 분야에서 자체의 목적을 위하여 양자를 보완 공용함으로써 관세요구, 통계, 경제 연구의 필요를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시 말하면, 양자를 연계한 상관표를 만들어 세관에서 접두한 CCCN의 데 이타를 經濟統計자료로 전환할 수 있다. (CCCN→SITC). 그러나 유일하게 HS에 1개의 基本號 (2710)로 계기되어 있는 石油製品 (SITC, Group 334)은 연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료의 상호 전환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석유제품의 경우, 각 나라마다 各種石油商品別 정의와 규격이 相違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가 곤란하여 연계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대다수의 국가는 석유제품을 실제상 무역거래되고 있는 ① 輕質油, ② 中質油, ③ 重質油 등 3종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나 我國, 日本 등은 ① 휘발유, ② 灯油, ③ 輕油, ④ 重油 등 4종으로 구분하고 있어, 아국 국내의 석유제품과 외국석유 제품과의 대응・연계는 실제상 어렵다.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의 「경질유」에 편속시킬 수 있는 아국의 석유제품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같이 HS의 제정시에 석유제품의 세분에 대한 의견이 나라마다 엇갈려 基本 「號」만 남겨 놓는 결과가 된것이다.

따라서 HS의 시행후 당분간 석유제품은 HS의 基本號에서 집계된 자료를 手作業으로 분리하여 SITC체계의 자료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석유 및 석유제품에 관한 HS의 1개 기본호 (2710,00)에 연관되는 SITC Rev. 3의 기본호는 334.1 등 8개(5단위 : 5개, 4 단위 : 3개)이다.

5. CCCN 解釋基準의 採用

SITC상 각 항목의 題名 Title은 가능한 간단한 문구로 당해 항목의 내용이 되는 품명 Description을 충분히 표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그 제명은 CCCN·HS의 관련 「호」, 「보조호」, 「소호」의 원문 Texts 와 꼭 일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SITC의 제명이 CCCN의 「호」와 「보조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기준으로 되는것이 아니다.

이 범위는 「CCCN解설서」상 해당 해설내용과 관련시켜, CCCN 자신의 규정(해설규칙, 부, 류, 소호의 Note, 호 및 소호의 원문)에 따라 결정된다. SITC의 각 항목의 題名에 관한 정확한 정의나 범위는 사실상 CCCN의 해석 적용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SITC의 경우, 분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CCCN의 명시 규정에 의존하게 된다.

예를들면 ① 「마늘」은 SITC 050.4의 「채소」에 분류되는가 또는 075.2의 「향신료」에 포함되는가에 관한 구체적 지침이 SITC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CCCN 7류 해설에서 「마늘」은 채소에 분류한다는 요지가 명기되어 있다. ② 「대나무 組物材料」는 SITC 242.3의 목재에 포함되는가 또는 292.3의 조물재료에 포함되는가가 SITC에는 분류 지침이 나와있지 아니하나 CCCN에서는 14류 주에 「竹은 조물재료에 분류된다」는 요지가 명기되어 있다. ③ 「尿素」의 경우도 CCCN상 29류의 유기화합물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또는 31류의 비료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등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데, 순수한 것, 화학용의 시약이라도 질소비료에 포함한다는 요지가 CCCN에 명시되고 있다.

SITC는 물품의 합리적인 분류를 위하여 SITC의 해석을 CCCN의 해석·적용기준에 따르고 있는 것이다.

第5章 關稅의 觀點에서 본 SKTC

1. SKTC의 概要

가. SKTC(前 KSCC)의 定義

多量形像의 형태를 가지거나 통계적 수치의 형태로 설명되어야 할 모든 經濟過程은 체계적인 분류에 따라 그들의 규모가 表示 되도록 요구된다. 이와같은 요구에 따라 국제경제나 一國內의 國民經濟 實體를 구성하는 상품(서비스)의 生산→유통→소비實態와 동향파악을 통계적 수량적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통일된 장치(品目表)가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

예를들면, 「KSCC」, (Korean Standard Commodity Classification), 「JSCC」(Japan S.C.C) 등 國內표준상품분류(Domestic S.C.C)와 「SITC」「NIMEX」등 국제적인 표준상품 분류가 그例의 品目表이다.

SITC는 序文에 「이 표는 경제분석과 상품별 무역자료의 국제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상품통계를 제시하기 위한 품목표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SITC상품 인덱스, UNSO, 1963.10 발간). 이에 SITC는 국제경제와 무역상품의 분석 비교를 목적으로 통계작성에 편리하도록 一定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部→類→群→小群→項目, 표제, 품목명과 10진법에 의하여 부여된 관련 코드 번호로 구성된 商品·流通動向을 통계적·수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一種의 품목표라 定義할 수 있다.

KSCC(경제기획원 고시 제14호 1964.4.7)는 SITC가 國際的 무역상품과 경제동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國內外상품과 경제동향에 관한 여러가지 통계작성에 유용하도록, 국제용의 SITC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상품을 총망라 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 이므로, 이를 간추려 KSCC는 SITC의 기본항목(1~5단위)을 유지하면서 그 항목을 더 세분(6~7단위)하여 무역거래 대상 품뿐 아니라 국내에 생산·유통되는 모든 상품을 통계·집계를 할 수 있도록 한 一種의 품목표이다.

나. SKJC, CCCNK의 制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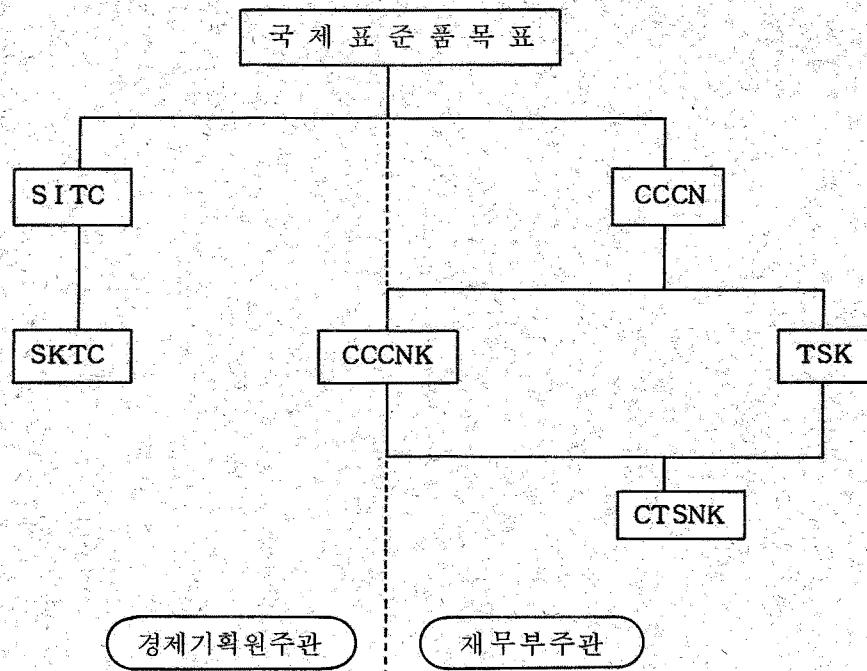
① 기본해딩의 追加 細分

무역상품의 통계·집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SITC와 CCCN(주로 관세목적)은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 채택되어 각 나라들은 협약이나 권고문에 표기된 동 품목표의 기본 골격에 각 나라의 경제와 商易의 필요에 따라 항목을 더 세분, 편성하여 DSCC로 사용하고 있다.

아국의 경우 경제기획원은 UN의 권고에 따라 SITC를 재편성 KSCC(=SKTC)와 CCCN을 더 세분한 CCCNK(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of Korea)를, 재무부는 관세징수와 관련하여 CCCN을 재편한 한국관세율표(TSK: Tariff Schedule of Korea)와 TSK 체계에 CCCNK를 組立·再編한 CTSNK(Combined Tariff and Statistic Nomenclature of Korea)를 각각 제정하여 주관 운용하고 있다.

이를 圖表化 해보면 다음 〈表-7〉과 같다.

〔表-7〕 DSCC의 母體



“關稅行政統計品目表”(CCCNK)는 CCCN에 準據, ① SITC가
要請하는 項目과 ② 國內貿易政策·產業政策의 必要에 의한 項目
을 新設·削除한 國內細分號：8 單位로 구성되어 있다. CCCNK
(SKTC도 마찬가지)의 개정은 我國의 무역 政策과 產業政策上
經濟(貿易)動向을 把握해야할 必要性이 높은 品目에 대해서는
統計細分을 分割 또는 新設을 하거나, 한편 貿易規模가 적어 貿
易動向을 把握할 必要性이 없게 된것에 대하여는 商易行政上 見

地에서 (예를들면 동관절자의 간소화, 迅速化) 統合·削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② SKIC (6차개정)의 構成

SICK Rev. 2의 Basic Heading은 4 단위 (Sub-Group)에서 더이상 세분되지 아니한 항목 351개 (A), 5 단위 (Item) 항목 1,573개중 5 단위로 끝나는 항목 1511(B), 6 단위 미세분 (5 단위 밖에 팔호로 둑은 알파벳문자)된 164개(C) 및 별도 분류항목 2개(D)를 합한 계 2010 (= A + B + C + D)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SITC Rev. 2는 크게 5 단계 형태의 수직하향식 분류체계로 1 단계 : Section (部, 넓은 경제범주에 의한 상품구분) → 2 단계 : Division (類, group을 넓게 특성에 따라 집단으로 요약, 상품 부류간을 구분) → 3 단계 : Group (群, 국제무역통계에서 정상적으로 요구되는 데이터와 밀접한 상품명) → 4 단계 : Sub-Group (小群, 최소화된 포괄상품명…Class 수준의 상품명) → 5 단계 : Item (항목 개별적, 구체적 상품명…Name 수준의 상품명)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4 단위 이하를 세분한 CCCN과 기타 경제분류표와 연관이 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그런데 동 SITC를 국내에 채택함에 있어서 어떤 나라에서는 그들의 무역패턴의 변화와 事情으로 특정 계층의 상품에 대하여는 SITC에 설계된 전체적인 명세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상품에 대하여 각국은 SITC의 上位水準의 데이터만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또는 SITC의 기본골격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다른 방법으로 SITC를 도입하기를 희망한다. SITC Rev.3에서는 이런점에

대비한 예외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SITC Rev.3 서문,

18 항 참조)

韓國標準貿易分類(SKTC)의 구성은 SITC의 기본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4 단위와 5 단위를 아국의 국내생산유통 상품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상품의 분석 비교와 경제동향분석에 적합하게끔 6, 7단위 까지 추가 세분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6 단위에서 7 단위로 세분하는 경우, 코드의 부여는 6 단위밖은 콤마로 영문 알파벳문자를 끓는 방법으로 표기하고 있다. SKTC의 편성을 예시해 보면 다음 <표-8>과 같다.

[表-8] SKTC 재편例

SITC Rev. 2		SKTC	
Code No.	Description	Code No.	Description
661.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면 시멘트, 섬유시멘트 및 비내화금속 광물의 건설자재	661.8	좌동
661.81	아스팔트 또는 유사재료의 제품(석유액정, 콜탈핏치)	661.81 (A) (B) (C) (D) 661.819	좌동 아스팔트제품 블록 건축용 보오드 용기(주형) 기타 기타 아스팔트 유제품

③ CCCNK의 편성

현행 CCCN은 크게 3 단계의 수직 하향식 분류체계로 즉 1 단계 : Section (部), 2 단계 : Chapter (類 1, 2 단위) 3 단계 : Heading (號 3, 4 단위)으로 구성된 관세 통계목적의 품목표이다.

최종항목은 1011 개호중 4 단위 未細分 749 개호(A)와 262개호에 서 세분된 5 단위 (4 단위 밖에 팔호로 뮤는 알파벳으로 표시된 항목) 1094 개호(B)를 합한 계 1843 개 (= A + B) 號로 識히 5 단위로 세분한 것은 SITC Rev.2의 최종항목 2010 개와 상호연계를 위한 것이다. 무역상품의 데이터는 세관의 CCCN을 기초한 통관자료에서 수집하고 있어 CCCN의 영향력은 대단할 것이다.

아국에서도 관세징수와 관세행정 통계목적을 위하여 CCCN분류체계를 기준한 TSK, CCCNK 및 CTSNK를 제정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CCCN의 기본적인 분류체계에 따르면서 5, 6 단위 이하에는 관세징수의 면에서 高關稅品, 고부가가치품, 산업보호의 면에서는 수출입 多頻度品, 무역량이 많은 물품, 통계적 면에서는 경제분석, 관세율 책정시 자료확보의 필요와 국제무역상품의 국제비교성 제고등에 중점을 두고 항목을 세분 추가한 형태의 품목표들이다. 그런데 8 단위 최종항목수는 현재 CCCNK가 7920 개 CTSNK 가 7915 개로 발표되고 있다.

BTN 협약상 세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Heading (4 단위) 까지는 각 나라가 세분시 一致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義務 단위) 5 단위 이하의 세분은 임의로 할 수 있다.

④ TSK의 편성

TSK(Tariff Schedule of Korea)의 한글명은 「한국 관세율표」로, 이는 관세법상 별표 관세율표(동법 제7조)와 現業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세율표(예: 한국 관세연구소 발간) 등 2種으로 구분된다.

「관세법상 별표 관세율표」는 CCCN의 4단위 체계의 기본항목을 관세정수 정책면에서 다시 이를 5~8단위까지 세분하고, 이 세분품목마다 관세율을 점선(….)으로 연결한 품목표로서 관세율이 연결된 품목을 세목(稅目)이라 하며, 현행 관세율표상 세목의 수는 總 2039개이다. (동숫자는 KTA발간 월간무역 관계법규집수록 法律 제3666호에서 집계) 별표 관세율표는 이런 점에서 「本來의 關稅率表」라 할 수 있다.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세율표는 「본래의 관세율표」의 분류체계에 CCCNK 분류체계의 통계품목을 편입시킨 품목표이다. 따라서 동관세율표는 「관세법상의 관세율표」와 수출입 통계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제정한 경제기획원 고시사항인 SKTC의 부록으로 등재된 「관세행정통계분류표」를 연관한 품목표라는 점에서 관세·통계 연관품목표(CTSNK: Combined Tariff Statistical Nom-enclatare of Korea)라 할 수 있다. 따라서 CCCNK, TSK, CTSNK는 相異한 것이다.

〔表 - 9〕 CTSNK 制定過程

〈TSK〉

번 호	품 명	세 율 (%)						
		기 본					1988 이 후	점정
		1984	1985	1986	1987			
7303	철강의 웨이스트와 크립	5	5	5	5	5	2	
7304	철강의 쇼트, 그리트(선별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와이어 펠리트							
	1. 쇼트	10	10	10	10	10		
	2. 그리트	10	10	10	10	10		
	3. 기타	10	10	10	10	10		

〈CCCNK〉

기본 항목 번호	세 분	항 목	항 목 명	SKTC
7303	730301	7303100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30302		선철과 주철의 웨이 스트와 스크랩	
		73030201	합금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30303	73030299	스텐레스강의 것	
		73030300	기타(합금철)의 것	
7304			기타 철강의 웨이스 트와 스크랩	
			철강의 쇼트, 그리트 (선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와이어 그리트	
	730401	73040101	철강쇼트 및 그리트	671.3
		73040102	철강의 쇼트	671.3
		73040200	철강의 그리트	671.3
			철강 와이어 펠리트	671.3



번 호 Heading No.	품 명	Description	세율 Rate of Duty (%)							단위 Conces sion
			기본 General					1988 이 후	점정	협정 Conces sion
			1984	1985	1986	1987				
7303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Waste and scrap metal of iron or steel * of pig or cart iron * of alloy steel ** of stainless steel ** other * other	2	5	5	5	5	2		Mt
0100	* 선철과 주철의 것									Mt
02	* 합금강의 것									Mt
01	** 스테인레스강의 것									Mt
7304	철강의 쇼트·그리트(선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와이어 펠리트	shot and angular grit of iron or steel, whether or not graded wire pellets of iron or steel	10	10	10	10	10			Mt
0101	1. 쇼트	1. shot	10	10	10	10	10			Mt
02	2. 그리트	2. grit	10	10	10	10	10			Mt
0200	3. 기타	3. other	10	10	10	10	10			Mt

〈CTS NK〉

2. SKTC의 沿革 및 編成原則

가. SKTC의 沿革

我國의 무역통계집계를 위하여 사용해온 통계품목표의 유형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1951년 이래 무역상품과 유통통계의 집계를 위해 1950년에 처음 제정 발간한 「SKTC」(SITC原型), 1962년과 1963년의 IBM기계 집계에 사용키 위하여 발간한 1960년의 「개정 SKTC」, 1962년 발간 「개정 SKTC」 및 1963년 발간 「개정 SKTC」등이 있다. (이상 한국은행발간) 그러다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주관하에 통계자료의 국내외 비교를 위한 「한국표준상품분류」(KSCC)를 1964년 4월 7일에 제정하였는데 이品目表가 정부가 만든 첫 통계用品目表이다. 그후 동 KSCC는 여러차례 개정되어 1987년의 7차 SKTC에까지 이르렀고, 지금은 HS체계에 의한 SITC Rev. 3와의 대응을 위한 8차 SKTC에 이르렀다.

① 1차개정 KSCC (경제기획원 고시 제4호)

KSCC-Original은 Division (2단위) 이하에서 국내상품의 생산과 거래에 적합하도록 편성하였기 때문에 SITC의 분류체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국제무역상품의 분류에는 이용되지 못하였다. 이리하여 KSCC와 SITC의一致로 국제상품의 분류에 활용하고자 1967. 12.23일 1차 개정하였던 것이다.

② 2차개정 KSCC (경제기획원 고시 제2호)

1차개정 KSCC는 Item (5단위) 이하에 6단위, 7단위로

세분한 최종항목의 상품명 (Description) 을 영문으로 병기하지 아니하고 國文만으로 표기한 형태를 가졌으므로 실제 이용상 불편이 많아 영문병기의 형태로 1971. 11. 8 일 2 차 개정하였다.

③ 3 次改正 KSCC <告示 제 11호>

UN 統計委員會 第 18 次總會에서, ① 그간 UN이 推進한 SITC /CCCN 간 作業結果, ② 各國 및 國제기구의 意見書와 ③ “品目分類專問家會合”의 見解 등을 종합한 最終改正案의 採擇 · 勸告에 따라, UN 경제 · 이사회가 1975. 5 월에 이를 採擇 · 承認함으로 「SITC Rev. 2」가 세계적으로 施行하게 됨으로 SITC Rev. 2 를 기초로 KSCC 의 개편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리하여 1976년 12 월 3 일에 制定한 것이 「제 3 차 개정 KSCC」이다. 이 品目表는 KSCC (SKTC) 와 CCCN 的 最終항목간을 연계한 最初의 相關表이다.

④ 4 次改正 SKTC (告示 第 24 號)

1972 年의 2 次 BTN 改正案은 1978년부터 「3 次改正 CCCN」 으로 개정 시행하게 되었다. 3 차개정 CCCN 은 「2 차개정 BTN」 의 해당 (號) 가운데, 세계무역실적량이 적은 90 個號의 削除, 260 個號의 統合 · 分割과 주요무역품과 관련되는 號의 3 個號 新設로 종전 BTN 체계의 1098 個號가 1011 個號로 조정縮小 개편된 品目表이다. 이와 같은 「3 차개정 CCCN」의 시행에 즈음하여 SKTC 는 SITC Rev. 2 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면서 CCCN 과 연계를 위한 개정의 필요가 있어, 「4 차개정 SKTC」를 제정하고 1978년 12. 23 일에 확정하게 된 것이다.

⑤ 제 5 차 개정 (1982.1.1, 경제기획원 고시 제 55 호)

제 5 차 개정은 제 4 차 개정과 유사한 형식의 보완적 개정으로 국내무역구조의 변동과 새로운 상품의 증가, 국내산업보호 등 의 요청에 따라 137 개 항목의 신설, 20 개 항목의 내용수정과 5 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이에 연관되는 CCCNK를 상관적으로 보완하였다.

⑥ 제 6 차개정 (1984.1.1, 경제기획원 고시 제 70 호)

제 6 차 개정은 4, 5 차 개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제 2 차 개정 국제표준무역 분류체계의 범위내에서 제 5 차 개정이후의 보완이 요구되는 신규 품목의 신설과 산업정책상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주요품목 또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품목중에서 수출입의 비중이 큰 품목에 대한 세분신설 등 수출입 구조의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468 개 항목을 세분 또는 신설하였으며, 수출입 실적이 없거나 세분의 실익이 없는 항목 등 31 개 항목을 삭제하고 내용의 보완이 요구되는 53 개 항목에 대하여 내용을 보완 조정하였으며, 이들과 연관된 CCCNK를 상관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동 분류의 유용성을 제고하였다.

⑦ 제 7 차 개정 (1987.1.15, 경제기획원 고시 제 87 - 2 호)

제 7 차 개정은 제 2 차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 범위내에서 1984년 이후 무역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부 품목을 보완하고자 8 개 품목을 삭제하고 1 개 품목을 분류조정함으로써 무역통계를 좀 더 현실화 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국제표준무역분류의 3 차 개정이 임박함에 따라

한국표준무역분류가 개정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므로 최소한의 필수적 보완만을 추구하였던 결과이다.

⑧ 제 8 차 개정 (1988.1.1, 개정기획원 고시 제 87-18 호)

한국표준무역분류는 무역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 2 차 개정 국제표준무역분류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CCC 및 UN에서 관세업무의 능률성과 통계업무의 질적개선을 위하여 CCC 주관하에 관세목적분류인 CCCN 체계가 HS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HS체계와 연계시켜 국제표준무역분류가 3 차 개정되고, 1988년부터 제 3 차 국제표준무역분류 체계에 의거 범세계적으로 무역통계를 작성하도록 권고하였다.

따라서 HS체계와 연계된 SITC Rev. 3 체계의 제 8 차 개정 한국표준무역분류를 완성했으며, HSK 및 SKTC를 연계함으로서 무역관련 통계업무의 원활화를 기하였다.

나. SKTC의 편성原則

SKTC는 전술한 바와 같이 SITC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SITC의 기본항목을 다시 아국의 생산상품과 무역상품의 통계작성 및 산업무역정책상 중요성을 감안하여 더 세분한 통계 품목표로서 SKTC는 다음과 같은原則에 의하여 편성되었다.

- ① SITC의 기본 분류체계와 항목(5, 6 단위)에 일치시키고 국내의 개발 및 예상되는 신규상품을 더 세분(6, 7 단위)하였다.
- ② 대외무역과 경제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국제성이 높은 통계집

계뿐 아니라 아국의 생산상품의 자료를 집계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SITC의 분류품목에 관한 해석은 UN의 권고에 따라 CCCN의 해설 즉, 해석기준에 따른다.

④ 코드(Cde)의 구성은 10진법에 의한 순서로 하되, SITC에 결번을 둔 경우(예: 013, 0133……, 0131, 0132가 결번되었음) 이에 따랐으며,

⑤ 숫자부호 「9」는 기타 항목을 나타내는데 다만, 부분품이 함께 분류되는 때는 부분품 항목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⑥ 부호의 끝자리가 「0」인 경우에는 더 세분하지 아니함을 표시하는데 즉, 4, 5 단위 항목을 더 이상 세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 단위까지 「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예, 742.1 → 742.100) 그러나 SITC는 3 단위에서 더 세분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표에 부호 「0」를 표기하고 있으나(예, 023 → 023.0) SKTC의 경우는 「0」을 표기하고 있지 않다.(예, 742.1 → 742.1, 742.100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

⑦ SKTC와 CCCNK, BEC (Classification by Broad Economic Categories)의 항목간을 연계시켜 이용상 편의를 도모하였다. 즉, 수출입상품의 자료는 CCCNK에 의해 整合되므로 CCCNK의 항목들이 SKTC 세분작업시 반영하였다.

第3部

HS制度의概要

第1章 HS의概觀

第2章 HS品目表의構想

第3章 HS制定의基本原則과分類基準

第4章 CC CN의改編과 HS

第5章 HS의協約

第1章 HS의概觀

1. HS의定義

- 用語

HS는 Full Name이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HS協約과 그 附屬書」이고, 통칭은 「Harmonized System:調和制度」로 「HS」는 그의 略稱이다. 부속서장 原名은 HS品目表(HS Nomenclature)라 표기하고 있다.

- 4개型의定義

(가) 目的·用途面에서의定義

CCCN이 關稅目的에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特定用途의 國제적 統一品目表라면 HS는 關稅·統計·運送 등 貿易節次上 개재하는 모든 分野에 共用하기 위하여 CCCN과 SITC를母體로 만들어진 多目的·多用途 共通品目表라 할 수 있다.

(나) 業務節次面에서의定義

HS란 貿易商品이 輸出國의 生產者로부터 輸入國의 消費者에게 引渡되기 까지의 各種의 流通段階에 있어서 각 단계의 圈域마다 品目表의 利用者가 이 品目表를 사용할 것을 妥當하고 있는 多目的·總合的인 統一商品名 및 「코드」로 구성된 分類體系(品目表)이다.

(d) 構造上の 定義

HS·CCCN의 構成과 같이 品目表 全體와 分類方針에 관한 通則 (GRI)과 모든 國際貿易商品이 커버될 수 있도록 21部, 97類(유보된 77類 포함), 1241 號(4單位號), 5019 小號(6單位號)의 體系와 各部, 類, 小號의 머리에 그 類의 分類方向, 他 類와의 관계, 用語의 定義 등을 記載한 註(Note)로 構成되어 있다. 또한 일부 類에서는 節을 설정하여 商品分類의 理解를 돋도록 하고 있다.

HS-CCCN의 構造比較

H S	分類構造	CCCN
6	通 則 (項)	4
21	部	21
38 (77類는 留保)	(部 註)	27
97 (77類는 留保)	類	99
319	(類 註)	269
33	節	30
124	號 (Heading)	1011
5019	小 號	-
33	(小號註)	-

(라) 協約上의 定義

HS協約 第1條에 「本協約의 附屬書에 규정된 號(Heading) 小號(Sub-Heading) 및 그들과 관련된 「코드」番號(Numerical Codes), 部(Section), 類(Chapter), 小號의 註 (Note)와 HS解석에 관한 通則(GRI)등으로 구성된 Nom-enclature(品目表)」라고 그 構造와 定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HS와 New CCCN

「HS」는 「New CCCN」과 구분된다. 關稅協力理事會는 HS의 4 단위 수준에서는 HS를 현행 CCCN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CCCN의 4單位까지는 HS와 동일 수준으로改正되어야 한다는 合意를 보았으며, 이에 同合意事項은 CCCN의 勸告改正案으로 HS 협약 성립일자와 같은 날인 1983년 6월에 채택되었다. 이 勸告案이 「New CCCN」인 것이다. 따라서 New CCCN은 「HS 4 단위 水準의 品目表」라 불리운다. 예컨대 New CCCN의 경우, 배합고무가 4 단위인 「4005 號」라는 1個號로 규정되고 있으나, HS의 경우는 4 단위 「4005」와 同號의 所屬 6 단위 「4005.10 小號」, 「4005.20 小號」, 「4005.99 小號」등 4개 小號로 다음과 같이 편성되어 있다(HS는 HS 위원회 New CC CN은 NC가 각 제안한 것이다).

HS 와 New CCCN 코드 對比

〈HS 코드(6單位)〉

〈New CCCN 코드(4單位)〉

Heading No.	HS Code	品 名	Heading No.	品 名
40.05		加黃하지 아니한 配合고무(一次製品 또는 판, 시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에 한한다)	40.05	加黃하지 아니한 配合고무(一次製品 또는 판·시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 에 한한다)
4005.10		•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배합한 것		
4005.20		• 용액과 분산액 (小號 第 4005. 10의 物品을 제 외한다)		
4005.91		• 기타 • 판·시트 및 스트립		
4005.99		• 기타		

品目表間構成要素對比

품목표별		CCCN	HS	New CCCN
구성요소별				
통	칙	4개항(1-4)	6개항(1-6)	5개항(1-5)
註	部	27	38	38
	類	269	319	319
	小號	0	33	0
號	4단위	1,011	1,241	1,241
	5.6 단위	0	5,019	0

2. 統一品目表의 必要

一 要 請

상품명의 統一과 통일된 상품명을 分類기준에 따라 배열하고
거기에 共通의 背番을 부여하여 각 經濟・產業分野에 공용될 수
있는 分類體系와 品目表를 요청.

一 HS 制度에 대한 國際動向

主要國際・國家機構들의 1960년대 말에 있어서 HS制度와 관련한
動向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UN統計局

유엔統計局은 제2차 改正 SITC Rev. 2商品分類가 시행된 이
후 10여년 이상이 경과하고 近年의 무역상품의 構造變化와
관련하여 현행 SITC의 機能과 役割의 한계로 다양한 통계
상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면이 있어 根本的인 改正을 희
망했다. 이리하여 1969년 11월에 주요 국가와 관계 국제기관
으로부터 蒐集한 改正意見을 검토하는 「專門家會議」를 개최
했다. 이 회의에서 SITC의 근본적으로 대폭 개정하자는 의
견과 통계의 連續性 確保를 고려하여 특별히 중요한 부분만
을 改正할 것을 주장하는 意見이 있었는데 後者が 채택되었
다. 前者の 의견을 가졌던 者는 이 결정에 많은 불만을 표
시하여 빠른 期日 내에 SITC를 재검토하든가 SITC 이외의
解裝置가 없는가 하고 실마리를 풀려고 하였다. 이 會議에
서 전문가들도 「HS」와 같은 國際적 이용이 가능한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國際共通品目標를 요망했었다.

(나) 關稅協力理事會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國際共通品目表 가운데 CCCN이 가장 科學的인 品目表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안고 있어 關稅協力理事會는 새로운 HS의 制定을 고려하였다.

첫째, CCCN은 關稅用으로 制定되었기 때문에 運送·保險 및 그외 商業用의 料率表나 品目表에서는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3回의 CCCN 개정시 SITC와의 連繫作業에서 그 어려움이 실증되었다.

둘째, 美國·카나다 등 主要貿易國은 CCCN이 아닌 獨자적 인 品目表(例: TSUSA, CTC등)를 사용하고 있어 CCCN은 國際的인 統一品目表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세째, CCCN의 4單位號(Heading)는 범위가 광범위하여 실제로 國際間에 關稅引下協商時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네째, 貿易資料의 自動電送과 「컴퓨터」用의 國際的 統一品目表로서는 부적당하다.

(다) 유럽經濟委員會

유럽經濟위원회(ECE)는 1969년 6월에 개최된 제1회 전문가 회의에서 국제무역에 관한 절차의 簡素化와 標準化를 검토하면서 이를 촉진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국제적 수준에서 사용 할 수 있는 표준적 코드번호를 부여한 정확하고 상세한 구

분이 가능한 商品分類體系를 만드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라) 國際航空運送協會

國際航空運送協會 (IATA) 는 1969년에 航空運賃率表의 基準 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운송절차에 있어 國內外的으로 同時資料處理가 가능한 새로운 品目表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서 런던空航에서의 航空貨物取扱總合電算處理 「 시스템 」 (LACES) 의 경우, 貨物의 入出庫, 保管, 通關 등 一連 的 事務處理를 機械化함에 있어 모든 관련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統一된 用語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마) 英國貿易節次簡素化委員會

영국무역절차간소화위원회 (SITPRO) 는 1968년에 貿易書式의 간소화를 위하여 설립된 官·民合同의 推進機關으로 그동안 活動實績이 많았는데, 이 機構 역시 상품코드의 標準化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무역서식 간소화 운동의 實効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새로운 商品分類體系 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새로운 分類體系는 BTN(CCCN前身) 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案을 내놓기까지 하였다.

- 統一商品名. 背番
-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A : 統一商品名

〈例1〉 瓶(Cup)

{ Cup 또는 glass CCCN, SITC 등
 Tumbler 운송, 보험 요율 표 등

〈例2〉 벤젠, 벤졸

{ 兩者區分 CCCN,
 兩者未區分 TS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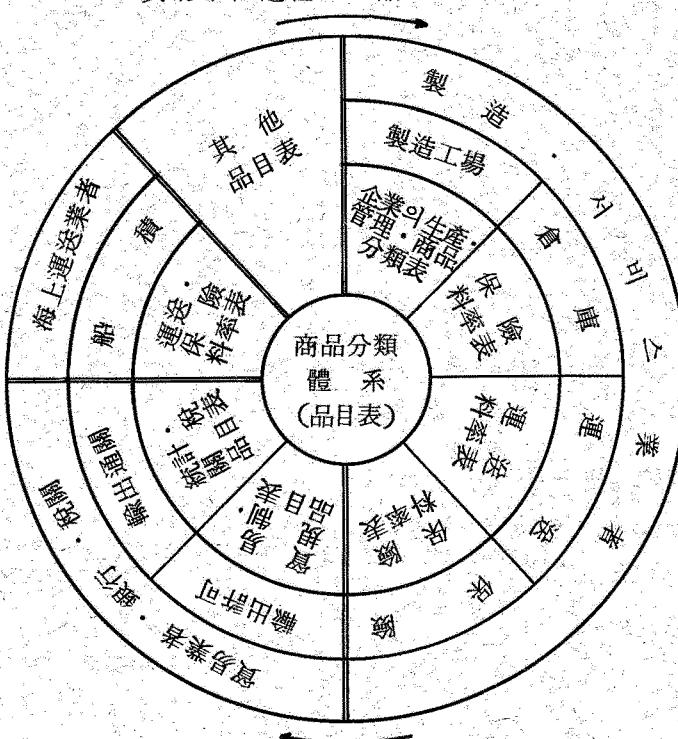
• B : 統一된 背番

貿易商品을 A국으로부터 B국으로 이동할 때 17종의 다른

商品分類體系 때문에 分類轉換作業을 하는데 많은 비용과 노

력이 요구되었다.

貿易單位過程別 品目表 例



一 開發理由要約

첫째 : CCCN未採擇國(약 20개 國家)과 採擇國간에 무역교섭의
共通基盤이 없으므로 輸出入統計등의 비교에 많은 노력이 요구
되고 따라서 關稅率表의 國제적 통일효과를半減시키고 있다.
특히 주요 무역국인 美國과 캐나다가 CCCN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問題가 되었다. 美國과 같은 貿易大國이 독자의 분
류체계를 채택하여 관세율표를 정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의 관계자(國
家·貿易業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지금까지도 日本을 위시하여 많은 국가가 미국에 대하여 CCCN
채용을 요청하여 왔고 미국 자신의 行政府側에서는 그 도입을
시도한 일도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美國議會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캐나다가 세계 대다수 국가가 사용
하고 있는 分類表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새로운 分類表
開發의 큰 이유가 된다.

둘째 : 무역상품 구조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에 부응해서
CCCN체계의補完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新規商品인 로켓·人
工衛星·光화이버등이 CCCN의 '바스켓'品目(기타 품목)에
포함되어 統計資料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주요 무역
상품들은 새로운 號를設定할 필요가 있다.

세째 : 민간의 保險·運送(陸·海·空)등에 있어서 商品分類의
공통성이 없어서 貿易關係者에게 큰 부담과 노력이 소요되는바,
무역관계 모든 分野에 사용될 통일된 品目表의 制定必要가
생겼다.

※ 資料 : CCCN 발간 HS概要

3. HS 品目表의 特色

「HS」는 多目的・多用途의 國제적 共通品目表로서 통일된 용어와 코드로 구성되고, 貿易書式의 標準化・貿易資料電送시스템化를 고려하고 있어 業務를 簡素化하였을 뿐 아니라 分類가 합리적이고 명확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용이 간편하다. 이는 이 品目表가 다음과 같은一般的特徵이 있기 때문이다.

(가) 貿易資料電送의 可能化 및 書式의 標準化

HS는 무역상품이 하나의 商品分類體系圈域에서 다른 分類體系圈域으로 이동할 때마다(예, 통관관계·육·해·공의 운송단계→보험→창고·항만의 보관단계 등) 별개 品目分類를 하는데 소요되는 時間과 努力を 대폭 절감할 뿐 아니라(코드番號別 자료便覽) 國際間의 데이터 전송의 가능과 貿易書式의 標準化를 쉽게 한다.

(나) 貿易・關稅交涉에 有用

공통의 品目表는 무역 등 統計分析・比較를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세계 무역의 分析的 研究에 있어 중요할 뿐 아니라 각 국의 貿易・關稅交涉에 크게 유용하다. 國際貿易・關稅交涉에 있어 아주 細分된 분류수준의 資料가 필요할 경우, 相異한 품목 표로부터는 資料를 수집한다 해도 상품의 定義가 다르기 때문에 만족한 資料를入手할 수 없다.

(다) 相對國 關稅資料와 貿易協定 遵守 檢索容易

自國 관세율표의 索引으로 무역 상대국의 關稅率을 색인할 수

있어 상대국의 稅率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共通品目表를 사용하므로 關稅讓許 등 貿易協定이 정확히 실현되고 있는가를 체크하기가 쉽다.

(甲) 分類의 正確과 明確性

HS는 가능한 간결한 形態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어 技術分野의 용어나 貿易·關稅用語를 選別·統一하여 모든 利用者が 쉽게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리하여 HS는 CCCN과 마찬가지로 이 품목표 전체의 分類指針으로 머리쪽에 '通則' (GIR)을 두고, 또한 이 표의 部·類에 관한 분류 지침으로 註(Notes)를 두어 用語의 正義 등을 규정하여 분류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한다.

(乙) 自發的 追從

그간 CCC의 品目表委員會 (NC)에서 찬성 또는 불찬성이라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한 事案은 그 채택 여부가 協約的 義務事項은 아니지만, 그 결정내용은 CCCN協約加入國뿐 아니라 協約未加入國으로서 CCCN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국제공통 품목표로서의 利點과 國際道義에 의하여 CCCN을 세계적 품목표로 採擇하고 있는 것이다. HS도 CCCN과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범세계적 채택이 예상된다.

第2章 HS品目表의 構想

1. HS의 開發過程

一 沿革

HS의 制定年度

年 度	主 要 業 務	備 考
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코드 관심표명 — 주요 무역국, 국제경제기구, EC • EEC 統一코드 制定必要 結論에 도달 — 무역관련 부담경감 — 데이터 자동電送시스템의 효율화 • 통일코드 제정 가능성 검토 견의 — ECE→CC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 6월 35/36次 CCC 총회 — CCC사무총국 : 統一코드의 作成主體는 CCC가 수행 하여야 한다는 提案을 총 회에 제시 — 총회 : 위 報告承認 — 結果 : 통일코드 개발연구단 (SG:Study Group)發 足
70.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성 여부 검토 — CCC에 통일코드 개발연구 단 設置 1차 예비회의 (70.10) 2차 예비회의 (70.12) 	
7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코드의 개발 可能・必要 불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1년 6월 37/38次 CCC총회 — 연구단 報告 : 統一코드의

年 度	主 要 業 務	備 考
7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단 보고 - CCC총회 승인 • 구체적 작업 실시방법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작업팀 (Technical Team) : HS Text 작성 -운영단 (Steering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작업 팀 감독 	<p>開發可能, 必要不可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회 : SG가 提案한 案 승인 • 第 1 期 작업 착수 • TT와 SG設立
71.12 72. 初	• 작업의 구체적 방법론 종결	
73. 5	• H.S.C 구성	• 1973년 5월 41/42 차 CCC총회
7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本格 HS개발작업 착수 -第 1 次 HSC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단報告 : HSC設置 -총회 : 위 설치안 승인
7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 앙케이트 실시 -사용상품 분류표의 명칭 및 사용 목적 -코드 (Code) 번호 단위와 총 품목수 	
83.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협약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品目分類局 發足 -감정 H.S.C 발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3년 6월 61/62 차 CCC총회 -HS 협약 채택 -New CCCN 권고
83.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차 감정 HSC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H.S.C → Interim. H.S.C (대차) 	
8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동작업팀 첫모임 -CCC내의 N.C(Nomenclcl- 	

年 度	主 要 業 務	備 考
85. 6	ature Committee) 와 잠정 H.S.C로 구성 • HS해설서 개정	
86. 3	• HS해설서 영문판 발간	
86. 6	• HS협약실시를 위한 회의 (65/66 차 CCC총회) — 협약가입국 : 45개국	
86. 7	• HS 양허 재협상 개시	
87. 9	• HS協約, 正式締約國은 29個國 • CCC사무총장의 HS 발효확정선언	• 無條件加入 : 7個國 • 署名後此准 : 22個國 (관세 · 경제 同盟 포함)
88. 1	• HS의 범세계적 시행	
88. 4	• 제 1차 HSC 개최	

— HS 開發研究團의 報告

1970 年 關稅協力理事會는 유럽經濟委員會로 부터 關稅 · 貿易當局, 統計學者, 運送人, 保險業者, 生產業者등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國際共通品目表 (HS型品目表) 的 制定可能性을 연구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 받음에 따라 HS開發研究團을 設置하게 되었다. 同研究團은 그 동안 調查研究 결과를 정리하여 HS의 制定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불가결하다는 요지의 暫定報告書를 37/38 次 關稅協力理事會 總會 (1971년 6 월)에 제출하

였고, 이어 41/42 次 關稅協力理事會 總會(일명 교토總會, 1973년 5 월)에서 다음과 같은 最終報告書를 上程하였다. 이 報告書는 實務作業을 맡은 同研究團 소속의 品目分類 專門家「팀」이 작성한 것이다.

- (1) HS 制度의 制定은 가능할 뿐아니라 國際貿易의 促進이라는 長期的 利益을 고려할 때 그 制定은 필요불가결하다.
- (2) HS 制度는 CCCN 과 SITC Rev. 2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 두가지 品目表는 최근의 貿易條件을 고려해서 다소의 修正이 필요할 뿐아니라 HS의 制定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CCCN의 상당 부분이 修正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HS 制度가 성립된 후에도 필요하다면 HS 制度도 修正될 수 있어야 한다.
- (3) BTN(CCCN의 前身)이 HS 制度의 핵심부분을 구성하여야 하며, 4 單位의 分類體系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HS는 正式協力(Convention) 보다는 勸告(Recommendation) 形式으로 채택하여 BTN의 보완적 商品分類「코드」로 발전시킴이 바람직하다.
- (4) 새로운 制度를 制定하는 過程에는 關稅·統計 및 運送分野의 필요를 충족시키던 종전 各種 個別品目表를 충분히 참고하여야 한다.
- (5) 이 制度는 關稅協力理事會의 주관하에서 制定되어야 하지만 國際機構 및 關聯團體가 그 작업기간동안 충분히 이해관계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協約의 施行計劃에도 참고하여야 한다.

그 의사를 반영시키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HS 開發專門家團 新設

1971년 9월의 研究團會合에서 유럽經濟委員會에 의하여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는 類似作業과의 경합문제, 「텍스터」의 作成을 담당할 專門家團 (T.T:Technical Team)과 이를 지휘할 監督團 (SG:Stearing Group)의 編成과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문제 등을 討議하는 과정에서 이들 機構를 신설하자는 합의에 따라 專門家團과 監督團이 設置되었다.

同專門家團은 1973년 5월 HS委員會(HSC)와 技術作業班(Technical Team:HSC 보좌 실무「팀」)이 재편되기까지 HS制定의 실제적인 준비작업을 해 왔다.

一 本格的 HS 開發着手

(1) HS 委員會 設置

關稅協力理事會는 연구단 소속의 專門家團報告書를 承認하는 과정에 專門家團이 提示한 指針에 따라 HS「코드」를 制定할 것과 그 施行을 관장할 HS委員會를 設置할 것을 결정하는 동시에 關稅協力理事會事務局내에 기술作業班 (Technical Team)을 設置하여 HS委員會의 作業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특히 HS制度의 理念과 主要 目的이 「多目的」이기 때문에 많은 國家·國際機構 및 國家機構 등이 참여하도록 개방하였는데, 새로운 制度의 重要性이 광범하게 認識된 탓인지 60여개국 20여개이상의 國際機構·國家機構가 실제로 HS委員會와 技術·事務作業班에 참석하여 많은 제안을 하였고 의사표

시를 하였다. (表 3 참조)

〈表 3〉 HS 參與國家 및 機構

區 分		參 加 員 會
國 家	회원	인디아·오스트레일리아·日本·카나다·英國·美國
	회원	알제리·필리핀·아르헨티나·이란·포루투갈·아일랜드·사우디아라비아·오스트리아·이스라엘·세네갈·방글라데시·이태리·싱가포르·벨지움·아이보리코스트·남아프리카·브라질·스페인·카메룬·캐나·수단·韓國·스위스·中共·마다가스카르·탄자리아·콜롬비아·말라위·泰國·쿠바·말레이지아·트리니다드토바고·체코슬라바키아·모리타니아·튜니지아·덴마크·멕시코·터키·에치오피아·모로코·우간다·핀란드·나이지리아·자이레·그리이스·노르웨이·그레나다·파키스탄
政府間 國際機構 (14)	회원	關稅協力理事會 (CCC : 品目分類委員會) 關稅協力理事會 (CCC : 事務局) 유럽經濟委員會 (ECE) 유럽共同體 (EC)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 (GATT) 北大西洋條約機構 (NATO) UN 統計局 (UNSO)
	비회원	カリブ해 沿岸國共同體 (CARICOM) 亞細亞太平洋經濟社會理事會 (ESCAP) UN 食量 및 農業機構 (FAO) 國際關稅同盟 (BITD)

區 分		參 加 員
비 회 원		國際 올리브油委員會 (IOOC) 經濟協力開發機構 (OECD) UN 貿易 및 開發會議 (UNCTAD)
회 원		유럽貿易振興機構 (ETPO) 國際航空運送協會 (IATA) 國際船舶協會 (ICS) 國際標準機構 (ISO) 國際鐵道聯盟 (UIC)
民 間 國際機構 (9)	비 회 원	유럽 펠프·종이 및 版紙產業聯合會 (CEPAC) 國際商工會議所 (ICC) 國際貨物輸送聯合會 (FIATA) 國際合成立早生產者機構 (HSRP)
國家 機構 (2)		國際商業節次簡素化委員會 (SIMPRO FRANCE, 프랑스) 國際貿易節次簡素化委員會 (SITPRO, 英國)
其 (1) 他		世界貿易 分類體系를 위한 UNSO/SOEC 共同實務委員會

(2) HS의 制定과 世界性

HS品目表는 「關稅協力理事會事務局에서의 同表草案作成」→「關稅協力理事會會員國과 HSC 「읍서벼」國에의 配布」→「各國의 意見收斂」→「反映草案修正」→「HSC에의 提出」→「草案承認」

→ 「 NC에의 檢討의뢰 」 → 「 NC의 檢討 」 → 「 HSC의 最終承認 」
→ 「 合同會議의 最終決定 」 → 「 關稅協力理事會總會에의 提出 및
採擇 」 등 順으로 制定하고 HS協約으로 成立하기에 이른 것
이다. 특히 制定過程에 HS의 多目的性 때문에 많은 國際機
構, 國家機構 및 國家들이 正式會員 또는 「 읍서버 」로 동참
하였을 뿐아니라, 各界의 「 멤버 」가 참여했다. 例를 들면 民
間 「 레벨 」에 있어서는 電算과 關聯한 問題는 IBM專門家, 鐵
鋼業界의 「 리더 」格인 日本鐵鋼聯盟, 化學・製紙工業分野에는
美國・카나다의 民間技術者가 參여하였고, 또 關稅協力理事會事
務局은 우편에 의하여 각 나라의 大學, 博物館 및 美術館의
專門家로부터도 의견을 수집・참조했다.

2. HS의 基本코드

一. 新商品코드 開發의 指針 HS개발연구단 작성

- ① 코드는 利用者에 있어서 「 오퍼레이셔널 」한 것이어야 하고
또한 諸요에 따라 伸縮的으로 사용이 가능한 弹力性이 있는
것이어야 할 것
- ② 分類體系의 基本으로서 이미 상품 그룹별로 對應關係가 되어
있는 BTN/SITC를 채용하는 동시에 기타 기존의 分類 및 統
計의 連續性도 배려할 것
- ③ 商品名稱은 기술적 特성만을 이용할 것
- ④ 新分類體系에는 世界的으로 보아 중요한 貿易商品을 전부 特
掲할 것
- ⑤ 符號는 일정 단위수의 숫자로서 각 單位마다 그 그룹의 숫자

자는 특정한 의미를 가지도록 조성할 것

- ⑥ 新分類體系의 보완을 위해 될 수 있는 한 완전한 알파벳순으로 색인표를 작성할 것
- ⑦ 신규의 商品 그룹을 分類體系 전체의 秩序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追加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 ⑧ 新分類體系는 手作業의 事務處理 및 電算處理 등의 機械作業 등 어느 곳에나 적합하도록 할 것

一 商品分類基準

- 當初 새로운 分類基準에 의한 品目表
- CCCN을 基礎

一 背番의 單位

- 4 單位 : 스위스, 오스트리아
- 6 單位 : EC
- 8 單位 : 美國, 카나다
- 6.8 單位 : CCC 事務局 (2 개코드 開發推進)

一 觀告施行

- 4 單位 : 協約
- 5.6 單位 : 勸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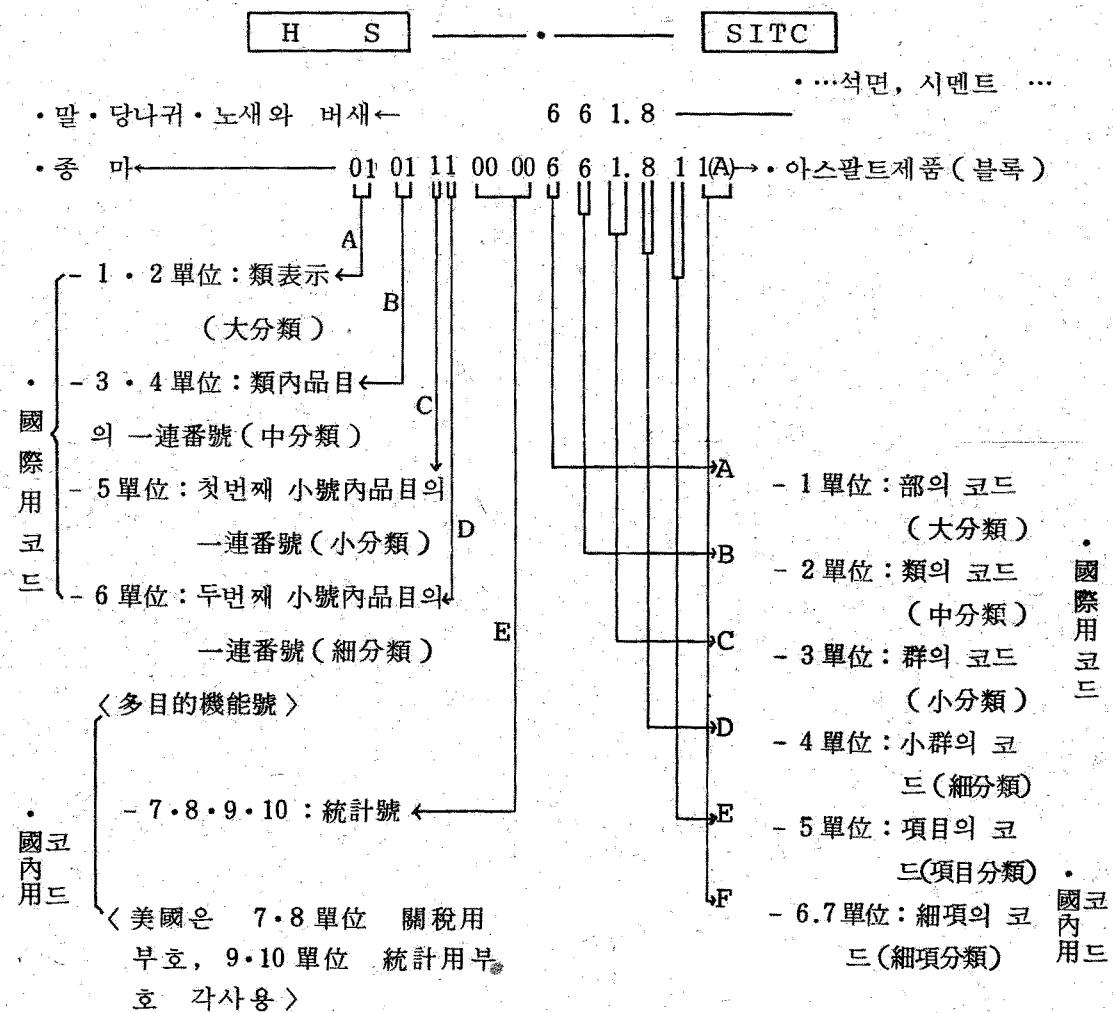
一 特掲品의 特색

- 輸出入額이 700 萬 US \$ 이 상인 품목과
- 貿易額이 700 萬 US\$ 이 하인 경우라도 國際的 流通에 있어서 중요성이 인정되는 貿易商品

- CCCN의 補助號에 제기된 品目
- 그 이외에 현존하는 他品目表上상품의 分布圖를 참고
- 地域間 상품의 균형을 고려

一 背番의 意味

背 番 比 較



3. 品目的 配列

— 垂直的 배열

部 → 類 (2 単位) → 號 (3 · 4 単位) → 小號 (5 · 6 単位)

— 水平配列

- 部 (1 ~ 21 部) (例: 15 部 < 卑金屬과 그제품 > → 16 部 < 기계 · 차량 >)
- 類 (1 ~ 97 類) (例: 1 類 < 산동물 > → 41 類 < 동물의 가죽 > → 64 類 < 가죽신발 >)
- 節
- 號 (例: 5101 號 < 羊毛 > → 5107 號 < 絲 > → 5111 號 < 織物 >)

第3章 HS制定의 基本原則과 分類基準

1. 基本原則

— CCCN의 3 대 기본원칙

(1) 單純性：國際的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친 공인된 用語 (Term) 와 言語 (Language)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國際貿易關係者가 쉽게 내용을 이해하도록 한다.

(2) 精密性：모든 物品이 가장 적정한 號 (Heading)에 分類하도록 한다.

(3) 適用上의 客觀性：CCCN을 基礎로 한 각국의 關稅率表上 品目的 分類를 國제적으로 통일한다.

HS 또한 CCCN과 SITC를 母體로 하여 원활한 國제 무역의 진작, 貿易統計의 蒐集·比較·分析을 쉽게 하고, 國際交涉에 필요한 정확하고 비교가능한 ‘데이터’의 蒐集을 용이하게 하며 나아가서 商業目的의 품목분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한다.

— HS의 2 대 기본原則

(1) 簡單·簡明性—用語는 가능한 한 간단하고 간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國際的으로 인정되는 技術用語 이외에는 技術用語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특정한 나라에만 통용되는 用語는 모두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6 단위 小號의 표현은 그 표현만 보면 利用者의 누구라도 이해가 가능하도록

2. 分類基準의

一 第 84 類의 品目分類體系

X Y	0	1	2	3	4	5	6	7	8	9
0 원자로, 동 원소분리 기	증기발생 보일러	증기발생 보일러	증기발생 보일러	보일러	증기발생 부속기기, 증기원동기	보일러용의 가스발생기	증기터빈	대연기관 (파스톤식 불꽃첨화식)	8407 8408 g의부분품 (E)	读圖法: 座標式〔先Y, 後X〕 例: 印制 기기→제 8443호 解: 8400 + 40(X+3)A = 8443 분류기준별 상품그룹 · A: 기동발 · C: 발동형 · B: 용도(산업)별 · D: 기타 기계 · E: 부분품
10 수차, 수레 터빈 (A)	터보재트 터보프로필 라 리 번	반동엔진, 공기, 원동 기	터프 ELV	해체 입축기	터프 ELV	터프 ELV	로운바이너 리, 오른 메이커리오 븐	로운바이너 리, 오른 메이커리오 븐	8407 8408 g의부분품 (E)	读圖法: 座標式〔先Y, 後X〕 例: 印制 기기→제 8443호 解: 8400 + 40(X+3)A = 8443 분류기준별 상품그룹 · A: 기동발 · C: 발동형 · B: 용도(산업)별 · D: 기타 기계 · E: 부분품
20 광택로울러 (금속유리 용온제외)	원심분리기 여과기	병용기, 층 진포장기 (내제외)	층 진포장기 (50mgs)	층 진포장기 (50mgs)	분사 포착기	인치호이스 포착기	크레인, 스 트래블캐리 어	스케치 터, 컨베이 어	8407 8408 g의부분품 (E)	读圖法: 座標式〔先Y, 後X〕 例: 印制 기기→제 8443호 解: 8400 + 40(X+3)A = 8443 분류기준별 상품그룹 · A: 기동발 · C: 발동형 · B: 용도(산업)별 · D: 기타 기계 · E: 부분품
30 재설기, 말 뚝박는기계 의부분품	8425 8430 농원예용 디스크로우 비료살 포기	농원예용 디스크로우 비료살 포기	탈곡기, 수 착기	착기	착기, 낙농 기계	포도수, 사 과주용, 배 쇠기	영업용기계 가금사육기 농	국물분류체 분업용기계	8407 8408 g의부분품 (E)	读圖法: 座標式〔先Y, 後X〕 例: 印制 기기→제 8443호 解: 8400 + 40(X+3)A = 8443 분류기준별 상품그룹 · A: 기동발 · C: 발동형 · B: 용도(산업)별 · D: 기타 기계 · E: 부분품
40 제본기 (B)	지의기공기	식자용기기	인쇄기	인쇄기 방사기	인조섬유 방사기	방전준비 기체, 방적 기, 권사기	직조기 등	판물제이스 제조기	8444 8447 의 보조기 제	读圖法: 座標式〔先Y, 後X〕 例: 印制 기기→제 8443호 解: 8400 + 40(X+3)A = 8443 분류기준별 상품그룹 · A: 기동발 · C: 발동형 · B: 용도(산업)별 · D: 기타 기계 · E: 부분품
50 세탁기 적물처리장	제통기	유연 처리기, 가 죽체품체조 기	화로, 텐 틀양곳용 주행과 조기	금속암연기 제	금속암연기 제	가공작기 체, 도자기 (도로우벤 행비행동) 치, 나사전 조기 등)	마시금센터 선	마시금센터 선	8444 8447 의 보조기 제	读圖法: 座標式〔先Y, 後X〕 例: 印制 기기→제 8443호 解: 8400 + 40(X+3)A = 8443 분류기준별 상품그룹 · A: 기동발 · C: 발동형 · B: 용도(산업)별 · D: 기타 기계 · E: 부분품
60 연식기, 호 령	기어질식기 절단기	금속기공기 제 (단조기 형비행동)	가공기체 (도로우벤 행비행동) 유리의 나사전 조기 등)	가공기체 제, 도자기 (목제풀코 고무)	가공기체 제, 도자기 (목제풀코 고무)	8456 8466 주지식공구 의 부분품 (E)	주지식공구 비철기식 압축기 식)	8456 8466 주지식공구 비철기식 압축기 식)	8456 8466 주지식공구 비철기식 압축기 식)	读圖法: 座標式〔先Y, 後X〕 例: 印制 기기→제 8443호 解: 8400 + 40(X+3)A = 8443 분류기준별 상품그룹 · A: 기동발 · C: 발동형 · B: 용도(산업)별 · D: 기타 기계 · E: 부분품
70 제신기, 금전등록기	컴퓨터	기타사무기 기 (주화 류기, 등자 기)	8469-8472 의 부분품 (⑤)	광물성 재료와 파식 기	전구, 전지 판, 유리열 판, 가공기 기	차동판매기 기	기동판매기 고무, 프라 스틱	8469-8472 의 부분품 (⑤)	8469-8472 의 부분품 (⑤)	读圖法: 座標式〔先Y, 後X〕 例: 印制 기기→제 8443호 解: 8400 + 40(X+3)A = 8443 분류기준별 상품그룹 · A: 기동발 · C: 발동형 · B: 용도(산업)별 · D: 기타 기계 · E: 부분품
80 주형틀, 주 형	관행, 빌보 바이링	전동축 크랭크, 변 송기	가스켓트연 결구	기계류의 부품 (기타 ...)	8469-8472 의 부분품 (⑤)	8469-8472 의 부분품 (⑤)	8469-8472 의 부분품 (⑤)	8469-8472 의 부분품 (⑤)	8469-8472 의 부분품 (⑤)	读圖法: 座標式〔先Y, 後X〕 例: 印制 기기→제 8443호 解: 8400 + 40(X+3)A = 8443 분류기준별 상품그룹 · A: 기동발 · C: 발동형 · B: 용도(산업)별 · D: 기타 기계 · E: 부분품

하였다.

- (2) 正確性—용어의 定義와 單位가 명확한 것이 國際的 혹은 貿易關係者 상호간의 分류의 不統一을 막는데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一 解說

機械類를 포함하는 제 16 부 제 84 류는 다른 2 개 이상의 分류 기준을 혼합하고 있는데 前段 (8401, 8424 호) 은 機能 (圖 A 그룹) 을 中 (上) 段 (8425 ~ 8478 및 8480 호) 은 用途 (表 B 그룹) 를 中 (下) 段 (8481 ~ 8484 호) 은 범용성 (圖 C 그룹) 을 각 分類基準으로 정하여 배열하고, 後段 (8478 호) 은 기타 기계 (圖 D 그룹) 가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品目分類基準 的 복잡한 혼합은 HS의 다른 類에서는 볼 수 없는 特例事項에 해당한다. 한편 부분품은 同類內 5 개처 (8409·8431·8466·8473·8485) 에 분산·배열하고 있다.

「 84 類 」 는 86 개의 4 單位 號로 구성되었는데 分류체계는 위 圖의 같다.

3. 第 2710 號와 第 77 類

- 基本號만으로 구성된 「 第 2710 號 」
- 表題없는 「 第 77 類 」

第4章 CCCN의 改編과 HS

1. 概觀

HS의 구성과 CCCN의 개편내용을 綜合, 검토해 보면 CCCN의 改編方向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壓縮할 수 있다.

(1) CCCN 分類體系 再定立의 관점에서 개편하여 新共通品目表를 작성한다.

<예> 가. 通則 (GRI) : 현행 通則 4개項에서 6개項으로
追加

나. 註 (Note) : 해설서상 규정을 部類의 註로, 類註를 部註로 규정

다. 類號 : 品目の 통합·분할에 따른 類의 정의와 범주
를 수정

라. 號 : 多用途를 위하여 6單位 細分 小號 新設 및 號
品目の 統合·分割

마. SITC 와의 相關性 : SITC 品目과의 연계를 위한 CCCN
의 補助號

(4단위外 알파벳 문자부호)를 주된 小號 (5~6단
위)에 收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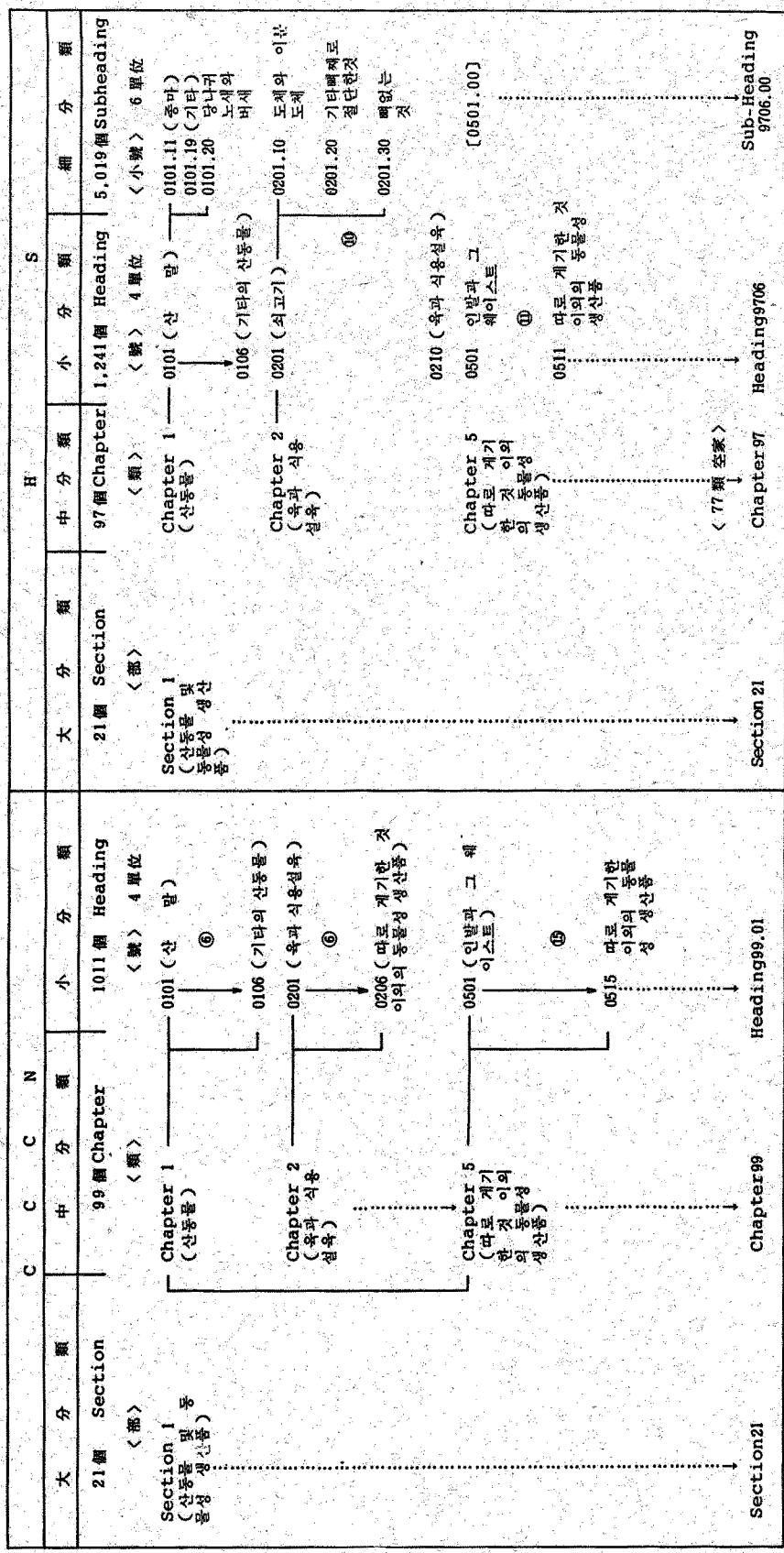
(2) 分類의 간편화·단순화의 관점에서 개편하여 누구나 알기 쉬운
多目的 共通品目表를 작성한다.

<예> 가. 解說書 내용의 號에의 移記 등으로 號內容의 速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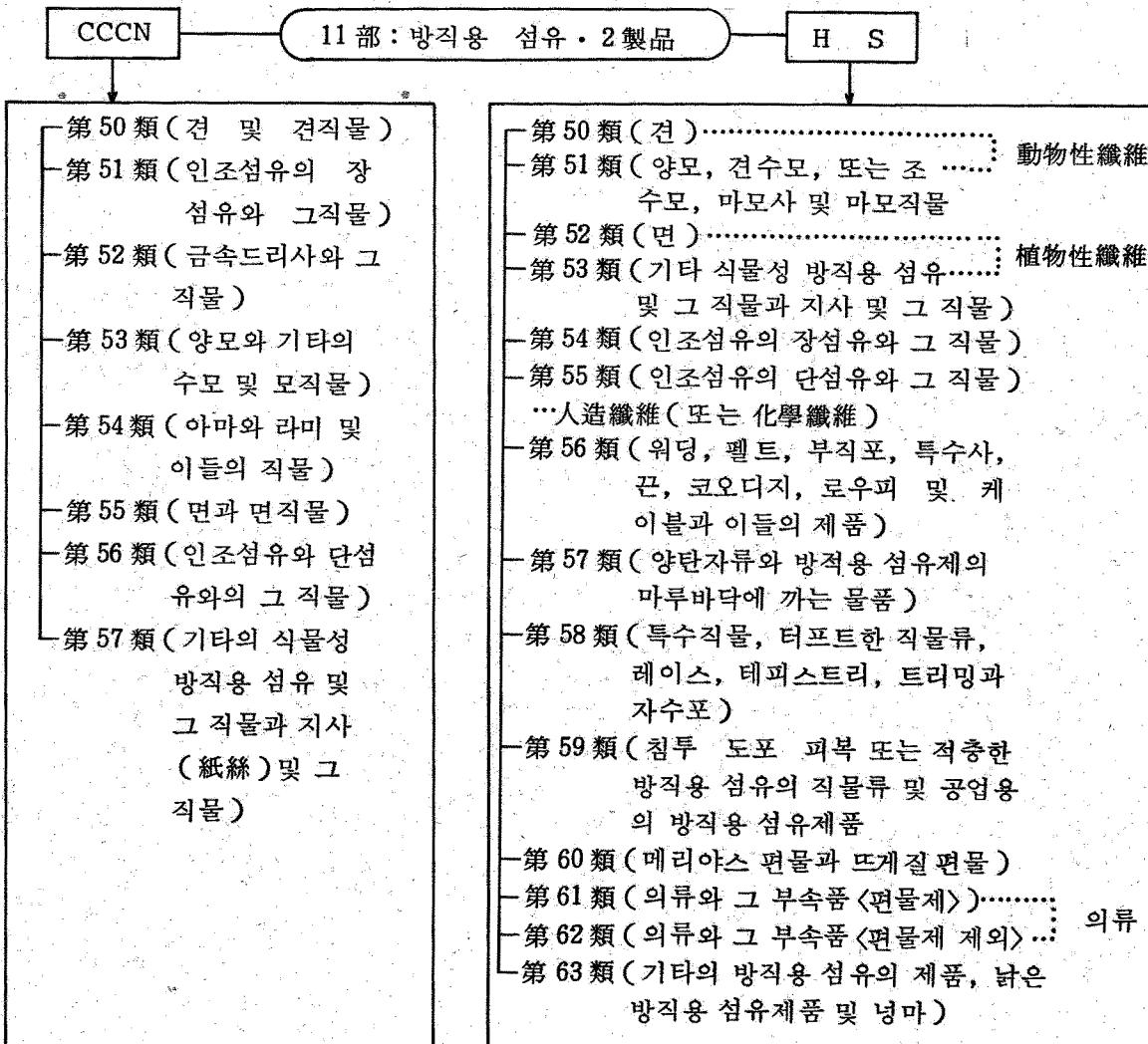
나. 신규 개발 상품등 主要貿易商品의 특계

다. 分類의 容易度 提高

CCCN 과 HS 분류체계 (I)



纖維品目體系의 變更 (2)



第71類의 개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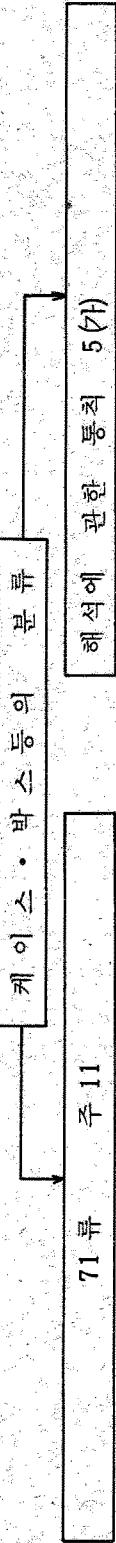
제 7101 호 및 제 7115 호 : 진주
주 4(1) “진주”에는 양식진주를 포함한다.

제 7102 호 : 귀석 (다이아몬드를 포함한다)

제 7116 호 (주 10) : 모조신변장식용품
—비금속제의 것
—2종 이상의 재료의 것
—커프스 단추는 제외 (제9801호)

71 류 주 3(자) : 주화 제외 (제 72 류)

71 류에는 회중 시계 줄·손목시계 줄 및 시계 팔찌를 포함한다.



2. 多目的 品目表 定立觀點에서의 改編

가. 통칙 (GRI) 규정의 追加新設

— 新設 (2개 항)

① 제 5 항 「케이스·포장容器類의 分類規定」

② 제 6 항 「小號의 分類規定」

— 단서추가

① 第 3 項 가 단서 「狹義品名表現의 同一看做」

— 용어변경

① Imported→Presented 등

나. 註 (Notes) 규정의 調整新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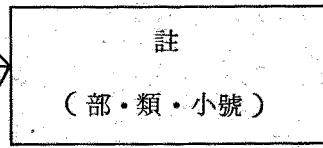
CCCN의 註 变경

〈CCCN〉 → 〈HS〉

② 類 註

④ 해설서

⑤ 小號 (6 단위)



① 通則

② 號

③ 修正

〈CCCN〉 → 〈HS〉

〈예〉

CCCN의 解說書→HS의 註

C C C N		H S	
所 屬	해설서 내용	所 屬	註 内 容
84 類 (8453 號)	이 號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었거나	84 類 주 5 - 나 -	제 8471 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었거나 연결

C C C N		H S	
所 屬	解 釋 서 내 용	所 屬	註 内 容
	(이하 右의 HS 註와 同一)	(2)	되어 작동하는 것으로 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기계는 각 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호 에 분류하거나 만약 기 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 가 없으면 여타 호에 분류한다.

다. 號(Heading)의 再編

— 기본코드 4 單位에서 6 單位 擴大

HS 와 CCCN의 比較

CCCN	HS	品 名	CCCN	HS	品 名
0101	0101	말·당나귀·노새와 버새 —말	0104	0104	면양과 산양
		0101.11	0104.10	—면양	
		—종마	0104.20	—산양	
		0101.19	0105	가금류(닭<갈루 스·도메티커스종의 것>	
		—기타			
		0101.20			
		—당나귀·노새와 버새			
	0102	소(물소를 포함한 다.)			오리·거위·칠면조
0102	0102.10	0102.90			및 기니아새에 한 한다)
		—종우			— 1 마리의 중량이

CCCN	HS	品 名	CCCN	HS	品 名
	0102.90	-기타			185 그램 이하의
0103	0103	돼지			것
	0103.10	-종돈		0105.11	--닭(갈루스 도
		-기타			메스커스종의 것)
	0103.91	-- 1 마리의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 의 것		0105.19	--기타
	0103.92	-- 1 마리의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 의 것		0105.91	--닭(갈루스 도 메스커스종의 것)
				99	--기타
			0106	0106.00	기타의 산동물

- CCCN 補助號에 背番 (6 단위) 부여

CCCN 과 SITC 의 品目간 連繫 및 小號賦與

CCCN	품 명	SITC	HS
0102	소(물소를 포함한다)		[0102]
	A. 종우	001.11	0102.10
	B. 기타	001.19	0102.90
0104	면양과 산양		[0104]
	A. 면양	001.21	0104.10
	B. 산양	001.22	0104.20

一 號(Heading)의 調整

- ① 號의 追加
- ② 號의 分割
- ③ 號의 統合
- ④ 號의 移轉
- ⑤ 號의 削除 또는 留保
- ⑥ 類(Chapter)內에서 號 再編

3. 分類의 簡便化·單純化 觀點에서의 改編

가. 解說書上 內容→通則·註·號에의 移記

〈例〉 解說書 內容—號의 本文에 反映

C C C N		H S	
所 屬	解 說 書	所 屬	本 文
13부 69류 6907 號	6907 : 포장용과 노용 또는 벽용의 타일(…)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 도 포함한다. (1) …… (2) …… (3) 모자이크 큐브.	6907 號 6908 號	鋪裝用, 爐用·벽用 타일, 도자체의 모자이크 큐브 및 이와 유사한 것 (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 " (유약을 시공한 것…)
9203 號	비중계, 기타 이와 유사한 機器, 온도계… (A) 비중계 기타 이와 유사한 浮秤	9025 號	액체, 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Floating) 측정기 : …

나. 新規 開發商品 等 主要 貿易商品의 特掲

近年의 技術進步과 貿易構造의 變化에 對應한 商品分類의 改善例

○ 技術의 進步에 對應한 改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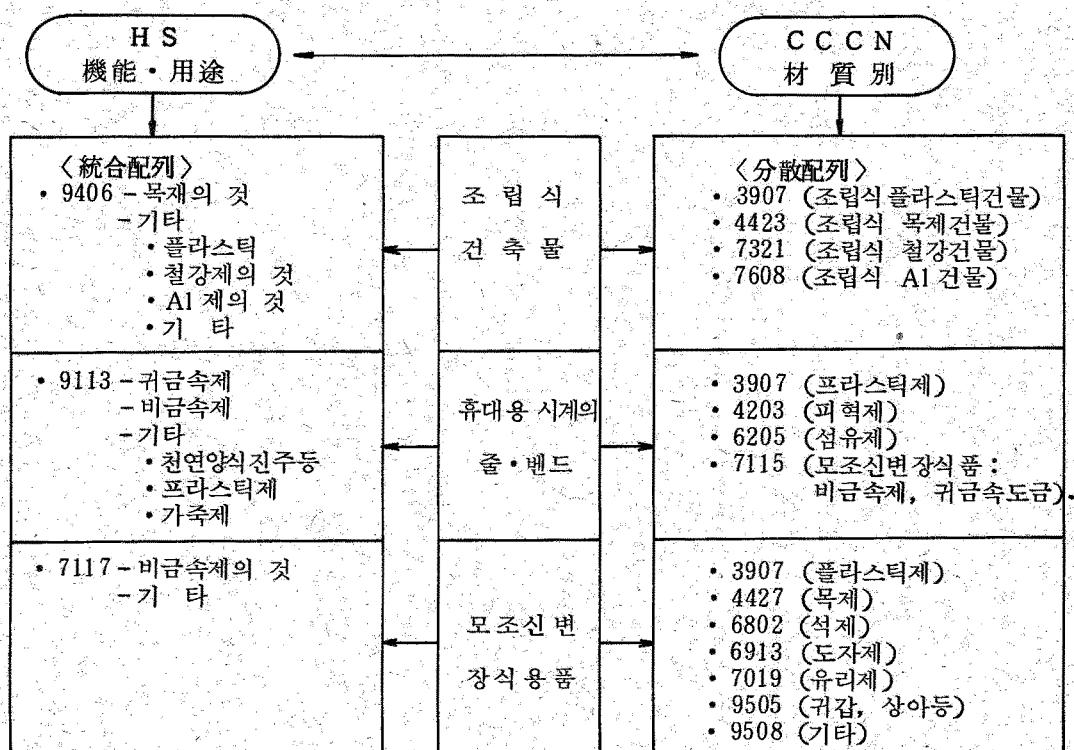
品目例	CCCN 分類	HS 分類
光화이버 等	品目이 特掲되어 있지 않기때문 材質等에 의해 分類하고 있다. 유리類 : <u>70.18</u> (光學유리) 等 프라스틱類 : <u>90.01</u> (光學用品) 等	品目을 特掲하고, 分類의 明確化 를 도모하고 있다. <u>8544.70</u> (光화이버케이블) <u>9001.10</u> (光화이버等)
人工衛星, 로켓 等	品目이 特掲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類似한 物品에 該當하는 號에 類하고 있다. <u>88.02</u> (飛行機, 滑空機, 연 및 비로트슈트)	品目을 特掲하고, 分類의 明確化 를 도모하고 있다. <u>8802.50</u> (우주비행체 및 그 발 사용 로켓)
同位元素 分離用機 器	品目이 特掲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機能別로 分類하고 있다. <u>84.17</u> (溫度變化에 따라 材料을 처리하는 機械) <u>84.18</u> (遠心分離機等) <u>85.22</u> (電氣機器)	品目을 特掲하고 一括分類하기로 한다. <u>8401.20</u> (同位元素 分離用機器)

○ 貿易構造의 變化에 對應한 改善

品目例	CCCN 分類	HS 分類
프라스틱 :		39.01~39.14 (素材 - 化學構造別)
素 材 (塊, 粒等)		6 案品目數 : 55
半製品 (板, 管等)	39.01~39.06 (프라스틱) → 39.07 (프라스틱製品) →	39.15~39.21 (설及 및 半製品 - 形狀別) 6 案品目數 : 47
製品 (食卓用品等)		39.22~39.26 (製品 - 用途別) 6 單位品目數 : 21

다. 分類容易度 提高

〈例〉 機能同一商品群의 統合



4. HS의 主要 變更部分

〈整 理〉

品目表의 主要改正・變更部分

區 分	所 屬	內 容
① 定義明確을 위하여 신설 한 註 - 科學技術의 進步副應 - 무역구조變 化에 따른 재편성	1類 註2 30類 註3 33類 註3 39類 註4 39類 註5 11部 小號 註1 11部 註12 11部 註1(시)	냉동건조의 정의 피임약 화학조제품 콘택트렌즈 또는 義眼用의 夜 共重合物의 정의 화학적으로 변성한 重合物의 정의 彈性絲의 정의 폴리아미드에 아라미드를 포함 탄소섬유 및 그 제품은 6815號에 분류
② 類編屬 號 의 擴大 - 무역구조의 變化 반영	7類 15類 26類 39類 50 ~ 63類 72.73類	신선·냉장한 채소 (0701호에서 9개호로) 식물성유지 (1507호 1개호에서 9개호로) 金屬鑄 (2601호 1개호에서 17개호로) 플라스틱 및 그 제품은 6815號에 분류 방직용 섬유 및 그 제품 (類의 배열변경 - 動物性→植物性→인조섬유 등) 철강 및 그 제품 (72号 - 素材 半제품 → 73号 - 製品으로 区分

區 分	所 屬	內 容
	〈註〉	
③ 新規商品의 特掲 및 定 義의 明確化 — 料學의 發達 出現新規商品 의 반영	4 類 註 2 22 類 註 3 56 類 註 1 28 類 註 6 30 類 註 2 42 類 註 2 1515.10 2403 2933 2936 3006.60 3307 3701 및 3702 3807 4906	「밀크」의 범위 축소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의 분류에 관한 定義 (0.5 % 기준) 섬유탄성 加工劑 방사선원소 및 동위원소의 범위 명확화 혈액응고저지제 손잡이가 있는 가방 (장기간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호호벼油 제조담배 代用物 핵산과 그 염 비타민 B ₃ , B ₅ , E 및 그 유도체 피임용 화학조제품 부직포 등에 침투 도포하거나 피부한 것 〈香水 등〉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섬유완성 加工劑 肉筆冊字 (hand written Text) (.....CCCN 에서 사용된 手製文書 (manuscript) 라는 용어가 애매모호하므로 대체)

區 分	所 屬	內 容
	8401	원자로, 동위원소 분리기용 기기
	8417	소각로
	8457	미시닝센트 등
	8802	우주비행체 (인공위성 등) 로켓
	8544.70	광섬유케이블
	9001.10	광섬유
	8515	초음파 용접기 (CCCN 8459)
	9001.30	콘텍트렌즈
	9010.9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자동현상기
	3918	바닥깔개, 벽지복재 (주요 특제품)
	3924	식탁·주방용품 및 기타 家庭用品 (〃)
	3925	창문 등 건축용품 (〃)
	4002.70	에틸렌, 프로필렌, EPOM
④ 商品概念의 變化에 따른 再編	8403	중앙난방보일러 (CCCN 7337 → 8403)
	8426	크레인트럭, 스트레들캐리어 (CCCN 8707 → 8426)
	8427	포크리프트 트럭 (CCCN 8707 → 8427)
— 類所屬移轉	8427	권양하 장비를 갖춘 작업트럭 (CCCN 8714 → 8427)
	7008	絕錄用 복층유지 (유리의 복층절연유니트) (위 물품은 CCCN 7007의 경우 「가공을 한것, 레디드 라이트 기타 이와 유사한
⑤ 併列掲記品		
目을 單獨號		
로 분리 特掲		

區 分	所 屬	內 容
	7102	<p>유리」등과 餅列 계기되어 있음)</p> <p>다이아몬드</p> <p>(위 물품은 1개 CCCN 7102의 모든 貴石과 半貴石에 포함·분류되었던 것을 HS 7102는 다이아몬드, 7103은 귀석, 반귀석으로 분리했음)</p>
	9203	<p>전반식 오르간 (9208의 오르간과의 구분 을 위하여 明示)</p>

第5章 HS의 協約

1. 協約의 構成

- CCCN : 前文, 本文(20個條), 附屬書 및 改正議定書
- HHS : 前文, 本文(16個條), 附屬書 및 개정의정서

HS協約의 構成

構成	内 容
前文	<ul style="list-style-type: none">• HS의 目的 <p>제 1 조 : 용어의 정의 (DEFINITION)</p> <p>제 2 조 : 부속서 (THE ANNEX)</p> <p>제 3 조 : 체약국의 의무 (OBLIGATIONS OF CONTRACTING PARTIES)</p> <p>제 4 조 : 개도국에 대한 부분적 적용 (PARTIAL APPLICATION BY DEVELOPING COUNTRIES)</p> <p>제 5 조 :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p> <p>제 6 조 : HS 위원회 : H.S.C(HARMONIZED SYSTEM COMMITTEE)</p> <p>제 7 조 : 위원회의 기능 (FUNCTIONS OF THE COMMITTEE)</p> <p>제 8 조 : 이사회의 역할 (ROLE OF THE COUNCIL)</p> <p>제 9 조 : 관세율 (RATES OF CUSTOMS DUTY)</p> <p>제 10 조 : 분쟁의 해결 (SETTLEMENT OF DISPUTES)</p>

構成	内 容
	<p>제 11 조 : 체약국의 자격 (ELIGIBILITY TO BECOME A CONTRACTING PARTY)</p> <p>제 12 조 : 체약국 가입절차 (PROCEDURE FOR BECOMING A CONTRACTING PARTY)</p> <p>제 13 조 : 효력의 발생시기 (ENTRY INTO FORCE)</p> <p>제 14 조 : 속령에 대한 적용 (APPLICATION BY DEPENDENT TERRITORIES)</p> <p>제 15 조 : 탈퇴 (DENUNCIATION)</p> <p>제 16 조 : 수정절차 (AMENDMENT PROCEDURE)</p> <p>제 17 조 : HS에 대한 체약국의 권리 (RIGHTS OF CONTRACTING PARTIES IN RESPECT OF THE HARMONIZED SYSTEM)</p> <p>제 18 조 : 유보 (RESERVATIONS)</p> <p>제 19 조 : 사무총장의 통지 (NOTIFICATIONS BY THE SECRETARY GENERAL)</p> <p>제 20 조 : UN에 등록 (REGIST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p>
附屬書	품목표 (HS Nomenclature)

2. 締約國의 義務

- HS 코드의 확대금지
- HS 코드의 축소금지

3. HS委員會와 잠정 HS委員會

- 2個의 HS委員會
- 잠정 HS委員會

4. HS의 發効

一 施行計劃

- 1985. 1
- 1987. 1
- 1988. 1

- 1988. 1 實施確保 (1986.6. CCC 종회) ... 협약상 發効규정 수정

- 당초: 「3개월을 초과하는 1월 1일(즉, 1988년 1월 1일부터)」
- 수정: 「12개월을 초과하고 24개월 이내에 속하는 1월 1일」

二 發効

- 要件: 17個國 이상 1988. 9월까지 署名, 批進書 기탁
- 加入현황

年月別 加入國家 (경제동맹 포괄)

연도	구분	국가(일자)	국가(일자)	국가(일자)	국가(일자)	국가(일자)
1985	Jordan	(6/10) Mauritius	(6/10) Swaziland	(11/26) Czechoslovakia	(12/9) Zambia	(6/10) Lesotho
1986	India	(6/23) Zimbabwe	(11/5) Botswana	(6/22) Israel	(8/5) Norway	(6/10) 4
			Yougoslavia(9/10)	Australia (9/22)	Austria (9/22)	Bangladesh (9/22)
1~9	Belgium	(9/22) EEC	(") Sweden	(") Netherlands	(") New Zealand	(8/23) (")
	Pakistan	(")	(") Finland	(") Switzerland	(") United Kingdom(")	
	Denmark	(")	(") Spain	(") France	(") Germany(F.R.)	(")
1987	Iceland	(10/28) Tunisia	(10/28) Portugal	(11/4) Zaire	(11/10)	21
10	S.Africa	(11/25) Korea	(11/29) Canada	(12/14) Malasia	(12/15)	
이후	IRELAND	(12/22) Madagascar	(12/22) Saudi Arabia	(3/10) Nigeria	(3/15) 10	
1988	Srilanka	(5/3) Cameroon	(5/16)			4

* 資料 : CCC Doc. 34.831E(1988.7.25)

第4部

HS 의 品目分類

第1章 HS의 3大構成要素

1. 3大構成要素
2. 通則 (GRI)
3. 註 (Note)
4. 號 (Heading)

第2章 HS상 通則

1. 通則의 骨格
2. 通則의 適用要領

第3章 註 (Note)

1. 註의 形態
2. 定義 規定의 類型 例
3. 競合品目の 附屬明示
4. 品目分類原則

第1章 HS의 3大構成要素

1. 3大構成要素

- 해석에 관한 通則 (GRI)
- 註 (Note)
- 號 (Heading)

2. 通則 (GRI)

— 定義

品目表 解釋에 관한 通則 (GRI : General Rules for Interpretation

of Nomenclature : 이하 GRI 라 한다) 은 HS 品目表의 머리에 게
재, 品目表의 전체에 통용되는 分類指針을 규정한 것으로 어떤
한 品目 (商品) 도 品目表上 오직 하나의 號에 分類 적용되어
야 하고 分類 가능한 다른 號에 중복 분류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것이 그 주된 機能이다.

하나의 物品은 品目表上 하나의 號 (1개 處) 에 분류되어야 한
다는 원칙을 우리는 一意性의 原則이라 한다. HS (CCCN도 마
찬가지) 의 경우, 一意性의 原則를 보장하기 위하여 GRI 를 두고
있는데 이를 규정은 法的拘束力이 있다.

— 特色

- 一意性을 위한 分類指針
- 通則의 可變性

• 非論理的 分類原則 채택

3. 註 (Note)

一 定 義

이들 註는 하나의 물품은 하나의 號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一意性分類의 原則에 따라 (CCCN도 마찬가지) 品目表上 用語의 定義와 部・類・節・號 (小號포함)의 정확한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것을 말한다 (어떤 註는 註 관련 用語의 定義와 限界를 규정한 경우가 있다).

이 註는 HS 協約에 가입한 모든 締約 當事國들에게 法的拘束力を 가지므로 法力이 없는 HS 解說書 및 HS 品目分類意見書와 구별하여 특히 註의 경우 「法註」(Legal Note) 라 부른다.

4. 號 (Heading)

一 定 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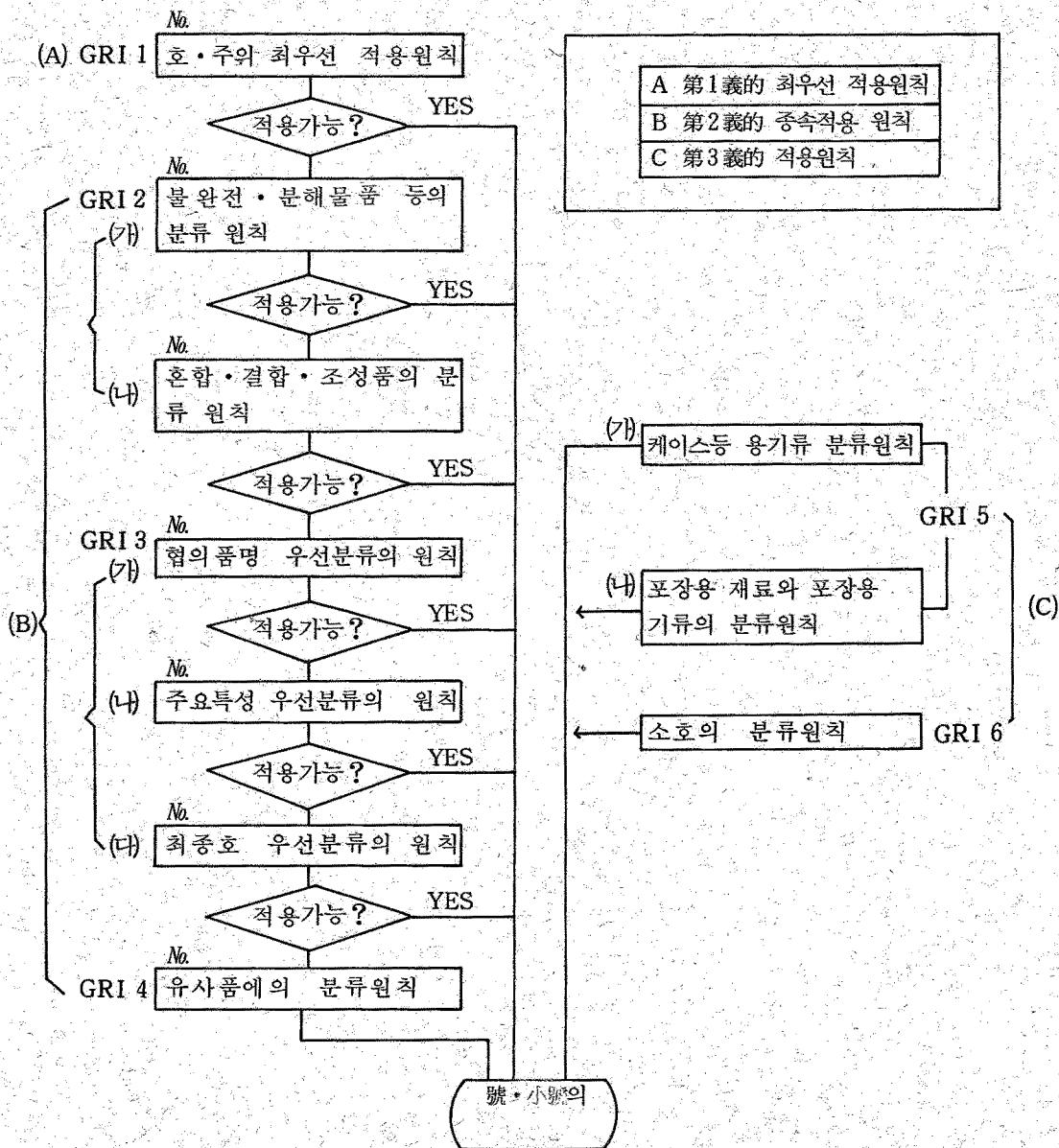
號・小號 (Sub - Heading) 背番이란

HS는 CCCN의 分類基準에 따라 同種・類似商品끼리 체계적으로 배열한 品目の 리스트에 4單位 (例 : 0101), 또는 6單位 (例 : 0101,11)의 數字符號를 부여하고 있다. 品目에 붙여진 숫자부호를 '背番'이라 일컫는다. 이 경우, 4單位의 背番을 號 (Heading) 라 부르고, 6單位의 背番을 小號 (Sub - Heading) 라 칭한다. 그러나 號, 小號는 4單位 또는 6單位 背番을 의미할

뿐 아니라 背番과 品目名(品名)의 結合(4 or 6 digit descriptors or heading) 形態를 뜻한다(例: 4單位수준에서의 號란 「텔레비전 수상기」, 6單位 수준에서의 小號란 「8528.10 : 칼라 텔레비전 수상기」, 「8528.20 : 흑백텔레비전 수상기」, 즉 背番 8528과 品目名 TV의 結合體 등)

第2章 HS 상 通則

1. 通則의 骨格



2. 通則의 適用要領

〈通則1〉 通則1은 다음과 같다.

이 表의 部・類 및 節의 表題는 오르지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法的인 目的上의 品目分類는 各部 各類 各番號(이하 “號”라 한다)의 用語 및 關聯部 또는 類의 주에 의하여 決定하되 이러한 各號 또는 註에서 따로 規定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通則 第2號 내지 第6號에서 規定하는 바에 따라 決定한다.

通則1의 첫째규정은 部, 類, 節의 表題는 단지 參照를 위한 것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表題는 品目分類에 있어서 法的拘束力이 없다.

例를 들면

第15部의 表題는 “卑金屬 및 卑金屬製”品이지만 卑金屬 製品中에는 다른 部에 分類되는 것이 아주 많다. 즉 第16部에 屬하는 第84類의 각종 機械類나 第85類의 전기 기기들은 거의가 卑金屬製品인 것이며 第17部에 屬하는 各種 車輛이나 航空機・船舶 또한 마찬가지다.

第62類의 表題는 “衣類와 그 附屬品(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의 것을 除外한다)”이지만 사실상 第62.12號에는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한 特定物品이 分類된다.

그러나, 品目分類上 法的拘束力を 갖지 않은 것은 오직 表題인 것

이며 部, 類와 節 그 自體는 法的地位를 가진다는 事失을 注意해야 한다.

類註에서 흔히 部나 類에 屬하는 品目全體에 對해서 言及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第 15 部의 註 1에는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1. 이 部에서는 다음의 것을 除外한다.

마. 第 71 類의 物品

바. 第 16 部의 物品

차. 第 94 類의 物品

通則 1은 이에 계속하여 品目分類를 決定하는 基準을 適用할 順序를 規定하고 있다.

즉 通則 1의 두번째 部分에 의하면 品目分類는 우선 各號의 用語 및 이에 關聯되는 部나 類의 註에 따른다.

여기서 號라 함은 4 單位 號罿 아니라 2 以下 單位로 特掲된 號를 包含한다.

이는 自明한 原則으로서 이에 따라 많은 物品을 分類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말 (live horse) 은 第 0101 號에 揭載되어 있다.

또한 냉장살구는 第 0808 號로 分類되는데 왜나하면 이 號의 用語는 “신선한 살구”로 되어 있고 第 8 類 註 2에는 “냉장한 果實과 견과類는 신선한 것이 該當하는 號에 分類한다.”고 規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通則 2 (前文)〉이 通則 前文은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이 通則 第 1 號에 의하여 品目分類를 決定할 수 없는 것
에 대하여는 다음에 定하는 바에 따른다.

〈通則 2. 가〉

各 號에 게기된 物品에는 不完全 또는 未完成의 物品이 제
시된 상태에서 完全 또는 完成된 物品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
니고 있으면 그 不完全 또는 未完成의 物品이 包含되는 것
으로 보며 이 경우 未組立 또는 分解된 狀態로 제시된 物
品이 있는 때에는 完全 또는 完成된 物品(이 通則에 의하
여 完全 또는 完成된 것으로 分類되는 物品을 包含한다)에
包含되는 것으로 본다.

通則 2. 가는 號의 用語의 範圍를 擴大시킨다.

即 未完成, 不完全한 物品 또는 未組立 分解된 상태로 提示된 物
品의 경우에도 그것을 完成品 完全品이나 組立品: 未分解品으로 看
做하여 그 完成品等이 分류되는 號에 이들 未完成品等을 分類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 通則은 다음 두가지 部分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部分은 不完全 또는 未完成 物品도 完成物品으로 取扱할 수
있는 것이다.

이 原則은 未完成, 不完全한 狀態에 있는 物品이 完全 또는 完
成品의 主要 特性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條件을 갖추었을 境遇

에만 適用할 수 있다.

이 “本質的인 特性”의 概念은 後述하는 通則 3 나에서도 問題 가 되는 重要的 論點인데 이를 一意的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일단 다음과 같이 그 基準을 定義해 본다.

즉 어떤 不完全・未完成物品이 完全・完成品의 本質的인 特성을 갖 추었는지를 判別할 때에는

- ① 이를 구성하는 材料・要素의 부피・量・重量・價格과
- ② 完全・完成品의 機能 용도와 關聯한 그 구성하는 材料・要素의 役割을 考慮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實務的으로 從來에는 Frame이나 重要機能部分의 存在여부를 基準 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價格構成比率을 重要한 參考資料로 하기도 하였다.

HS 해설서에 例示된 事例들을 보면 이중 價格構成比가 매우 重要的 考慮要素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關稅率素上 品目分類가 規定된다.

이 規定은 商品들이 包裝, 取扱, 輸送의 必要에 의하여 未組立 또 는 分解된 狀態로 去來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考慮한 것이다. 이 通則에서 “未組立 또는 分解된 狀態로 提示된 物品”이라 함은 單純히 固定시키는 裝置(나사, 너트 및 볼트등)에 의하거나 또는 리벳팅・용접에 의하여 해당 完成品의 構成要素가 組立되는 것을 말하며 다만 該當組立은 간단한 組立으로서 조작만을 수반하는 것에 한 한다. 그리고 輸入後 즉시 組立되는 것이여야 한다.

부피가 크거나 깨지기 쉬운 物品(例를 들면 bridges, lamps, 照

明器具, 組立式 建物 等) 은 종종 未組立 또는 分解된 狀態로 提示되는데 이러한 物品을 組立된 物品과 달리 取扱할 수는 없을 것이다.

〈通則 2나〉

各號에 계기된 특정한 材料 또는 物質에는 該當 材料 또는 物質에 다른재료 물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한 物品을 포함하고, 특정한 材料 또는 物質로 조성된 物品에는 該當 材料 또는 物質의 전부 또는 일부로 조성된 物品을 포함하며, 2종 이상의 材料 또는 物質로 조성된 物品은 이 通則 第 3號에 規定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現實的으로 去來되는 物品은 製品의 경우는 물론 原材料의 경우에도 純粹·單一한 物質·材料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별로 없다.

通則 2나는 材料나 物質의 混合物, 複合物 및 2種以上의 材料 또는 物質로 構成된 物品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다.

어떤號가 하나의 材料나 物質에 관하여 言及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物質이나 材料가 다른 物質 또는 材料와 混合되거나 結合된 境遇를 包含한다. 例를 들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添加된 우유도 우유로 分類한다.

또한 特定材料 또는 物質로 構成된 物品을 包含하는 號는 全體가 特定材料나 物質로 構成되지 않은 物品에도 適用한다.

예를 들면 파라핀으로 덮힌 코르크도 45.03 號 (天然코르크製品)로 分類한다.

이 通則은 號와 部·類의 註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물론 適用할 수 없다.

例를 들면

第 9 類 커피, 차, 향신료에 있어서 서로 다른 號나 物品間의 混合物은 第 9 類 註 1의 規定에 따라 第 9010 號 기타의 향신료에 分類한다.

第 15.03 號에는 混合한 lard oil 을 分類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 號는 混合하지 않은 라아드 오일만을 分類하도록 規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混合織物材料의 分類는 第 11 部 註 2에서 特別히 規定하는 바에 따라 2 以上의 紡織用纖維로 構成된 物品은 最大重量을 차지하는 物品으로 分類하게 되므로 通則 2. 나는 適用될 수 없다.

비금속의 合金에 關한 細部條項은 第 15 部 註 3에 規定되어 있다. 그러므로 通則 2. 나를 適用하기에 앞서 언제나 關聯 號와 部·類의 註가 混合物 또는 複合物에 관해 特別히 規定하고 있는지를 檢討해 보아야 한다.

〈通則 3 (前文)〉

이 通則 第 2 號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同一한 物品이 2 以上의 號에 分類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品目分類는 다음에 規定하는 바에 따른다.

이 通則에서는 通則 2. 나 또는 그밖의 다른 理由로 相異한 號에 分類可能한 物品에 關하여 세가지 分類基準을 設定해 놓고 있

다.

이 基準들은 여기에 規定된 順序대로 適用된다.

따라서 通則 3. 나는 通則 3. 가에 의해 品目分類問題를 해결할 수 없는 境遇에만 適用되고 通則 3. 다는 3. 가 및 3. 나로 해결되지 않는 境遇에 限하여 適用된다.

즉 優先順位는 다음과 같다.

- ① 가장 협의의 表現
- ② 主要 特性
- ③ 最終 號

通則 2에서와 마찬가지로 通則 3은 號와 部・類註가 規定하는 바에 따라 物品을 分類할 수 없는 境遇에 限하여 適用한다.

따라서 언뜻보기에도 몇個의 號에 分類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언제나 通則 3이 規定하는 바에 따라 分類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通 則 3 가〉

가장 협의로 表現된 號가 一般的으로 表現된 號에 우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號가 混合物 또는 複合物에 包含된 材料나 物質의 一部 또는 小賣用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物品의 一部에 料하여만 각각 規定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號가 다른 號보다 그 物品에 對하여 더 完全하거나 明確하게 表現하는 때에도 이들 號는 그 物品에 對하여 同等하게 협의로 表現된 것으로 본다.

一見 둘이상의 號에 分類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대
 한 첫번째 分類方法은 가장 협의로 表現하고 있는 號가 보다 一
 般的으로 表現하고 있는 號에 優先하여 適用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號가 다른 號보다 협의인가를 決定할 수 있는 分明한 原
 則을 提示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일단 다음과 같이 定議해 볼 수
 있다.

1) 品名 (Name) 으로 된 表現이 種類名 (Class) 으로 된 表現보
 다 협의이다.

物品名과 品種名

분류상품	물품명 (Name)	품종명 (Class)	협의품명
철제 포크	HS 8215 스푼·포크	HS 7323 식탁용제품	HS 8215 포크
전동기자장 이발기	HS 8510 이발기	HS 8508 수지식 전동공구 HS 8509 가정용 전기기기	HS 8510 이발기
차량용 타이어	HS 4011 고무제의 공기타이어 HS 4012 고무제의 재생타이어	HS 8708 자동차 부품	HS 4011, 4012 타이어
코르셋	CCCN 6109 코르셋	CCCN 6104 여자용 내의	CCCN 6109 코르셋

2) 物品을 分明하고 正確하게 區分하는 表現은 不完全한 表現보

다 협의이다.

表現의 분명도에 따른 品名 表示例

분류상품	표현의 분명도 (높다)	표현의 분명도 (낮다)	협의내용
• 양탄자 (자동차용으로 인정)	HS 5703 양탄자	HS 8708 자동차부분품	HS 5703 양탄자
• 틀에 장착되지 아니한 안전유리 (항공기용)	HS 7007 안전유리	HS 8801.8802 항공기·우주선용 부품들	HS 7007 안전유리

3.) 兩者 同等한 表現으로 看做한다.

하나의 混合物品 또는 復合物品이 두가지 以上의 號에 關聯하던
지 또는 小賣 包裝하여 셋트로 되어 있는 物品의 各 部分이 각
기 다른 號에 해당될 때에는 비록 그중 하나가 보다 完全하거나
正確한 表現이더라도 各 構成品과 關聯되는 各 號는 同等하게 表
現된 것으로 看做한다.

이같은 경우에는 通則 3나 또는 通則 3다를 適用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面은 플라스틱으로 다른 面은 加黃(加黃)한 고
무로 된 콘베이어벨트에 關하여 다음 두개의 號가 고려될 수 있
다.

즉 第 3926 : 기타 플라스틱 物品

第 4010 號 : 加黃고무로 만든 콘베이어벨트

이 두 號는 同等하게 表現된 것으로 看做해야 한다.

비록 하나의 號 (第 4010 號) 가 보다 完全하고 正確한 表現 (콘베이어벨트) 을 하고 있지만 이 兩號는 벨트의 製造에 使用된 2 가지 材料를 각각 規定하고 있으므로 第 39.26 號보다 第 4010 號가 보다 협의라고 할수는 없다.

따라서 이 物品에 對하여는 通則 3 가를 適用시킬 수 없고 通則 3 나 또는 다를 適用하여 分類하여야 한다.

〈通則 3 나〉

混合物 서로 다른 材料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製造된 複合物과 小賣用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物品으로서 가의 規定에 따라 分類할 수 없는 것은 可能한 한 이들 物品에 本質的인 特성을 부여하는 材料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取扱하여 分類한다.

- 通則 3 나는 둘 以上的 號에 分類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대한 두번째 分類方法은 規定하고 있는데 이 方法은 다음과 같은 物品에 對하여만 適用된다.

通則 3 (나) 適用對象品

대 성 물 품		예 해
HS 해설서	원 문	
혼합물 (배합물)	• Mixture	- 70%의 밀 HS 1001) 과 30%의 보리 (HS 1003)로 구성된 양조용 혼합물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 (상이한 재료로 된 물품)	• Composite goods Consisting of different material	- 플라스틱 (HS 39류) 과 고무 (HS 40류)로 제조된 컨베이어 벨트 - 금속링이 달린 목제 양복걸이 - 'Cat eyes': 철로 덮이고 고무쿠션의 유리반사경을 갖춘 도로표지 Stud
서로 상이한 구성 요소로 구성된 복합물 (상이한 구성 요소로 만들어진 물품)	• Composite goods Consisting of different Components	- 재털이 (착탈 가능한 재 (灰) 용 통과 이를 지지하는 스탠드로 된 것) - 소형의 양념선반 [특수하게 설계된 틀 (보통 나무로 됨) 과 적당한 모양과 크기로 된 여러 개의 빈 양념 통으로 된 것]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	• Goods Put up in Sets (for retail)	- 製圖用 커트 - 이발용 세트 - 음료 세트

一 세트 物品의 主要特性

〈例〉 세트물품의 주요 특성여부 구성요소별 분류

셋트별	構 成 品		商 品 分 類	
	品 名	CCCN NO	品 名	CCCN NO
식품 Set	• 삶기전의 스파게티 디발 • 같은 치즈 향가루 • 소형 토마토 소스깡통 • 카톤 박스	1902 0406 2103 4816	◦ 주요 특성부여 구성요 소(物品) - 스파게티	1902
이발기구 Set	• 전기 Hair Clipper • 빗 • brush • 직물수건 • 프라스틱의 Case	8510 9615 8213 9603 3907	◦ 주요 특성부여 구성요 소(物品) - 전기이발기	8510
제도기구 Set	• 尺 (자) • 디스크 계산기 (계산반) • 제도용 콤파스 • 연필 • 연필깎기 • Plastic Sheet 제 Case	9017 9017 9017 9609 8214 4202	◦ 주요 특성부여 구성요 소 및 數量 —자 —계산반 —제도용 콤파스	9017
아기용식 탁 Set	• Stainless Steel로 만든 물통과 사발 • 냅킨 링 • 스플과 포크 • 두꺼운 판지 (Paper Board	7323 7323 8215 4816	◦ 주요 특성부여 구성요 소 및 數量 —물통사발 —냉킨링	7323

〈例 外〉

그러나 세트包裝物品에 關한 規定은 비록 함께 提示되는 때에라도 다음과 같은 物品에는 適用하지 않는다. 즉 「셋트」 包裝物品의 概念은 農水產物의 경우에 다른 物品보다 좀 더 해석 적용한다. 이는 GRI 3(나)의 適用으로 農產物交易에 特別하게 適用되는 「物價平衡關稅」등의 운용이 방해되지 않도록 政策的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商品種類의 선물용 包裝은 셋트로 조합되었더라도 FRI 3(나) 適用對象의 셋트 包裝物品 으로 볼 수 없다.

- 새우통조림 (HS 1605) · 빠뜨드파 통조림 (HS 1602) · 치이즈 통조림 (HS 0406) · 넓게 썰은 베이콘 통조림 (HS 1602) 및 칵테일 쏘세이지 통조림 (HS 1601)
- HS 2208의 병입술 · 동 2204의 병입포도주

〈通 則 3 다〉

가 또는 나의 規定에 따라 分類할 수 없는 物品은 同一하게 分類가 可能한 號中에서 그 順序上 最終號에 分類한다.

通則 3 가, 나의 規定에 따라 分類할 수 없는 物品은 해당 號 가운데 最終號로 分類한다.

즉 2 以上의 號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物品에 關하여 그 號 들中 그 物品에 本質的인 特性을 부여하는 材料 또는 構成要表가 分明치 않을 境遇에는 이 規定이 適用된다.

예컨대, 밀가루(第 1101 號) 50 %와 호밀가루(第 1102 號) 50 %로 된混合穀粉은 第 1102 號에 分類되며, 室內 또는 自動車內에 놓아두는 나침판(第 9014 號), 溫度計(第 9025 號) 및 時計(第 9105) 가結合되어 있는 物品은 第 9105 號에 分類된다.

〈通則 4〉

이 通則 第 1 號 내지 第 3 號의 規定에 의하여 分類할 수 없는 物品은 당해 物品과 가장 유사한 物品이 해당하는 號에 分類한다.

이 通則은 通則 1 ~ 3 號의 規定에 따라 分類할 수 없는 物品에對하여 適用된다.

이 通則에 따라 分類할 때에는 그 物品과 가장 유사한 物品을 찾아내어 그 類似物品이 分類되는 號에 分類한다.

여기서 類似物品이냐의 여부는 品名(description), 特性 및 用途 등을 基準으로 判定하게 된다.

이 原則은 原則的으로 어떤 特定號에도 該當되지 않는 新商品을 分類하기 위하여 像備的으로 마련된 것이지만 大部分의 類에서는 나머지 稅番(Residual headings)이 마련되어 있어서 각 號에 明白하게 分類되지 아니하는 物品을 여기에 分類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實際로 이 規定은 適用될 여지가 거의 없다.

〈通則 5(前文)〉

다음에 規定된 物品에 對하여는 이 通則 第 1號 내지 第 4號의 規定을 適用하는 外에 다음 事項을 適用한다.

이 通則은 從前의 CCCN에는 없었던 것으로 HS에 새로이 導入 된 規定이다. Case, 箱子, 또는 이와 유사한 容器나 包裝材料·包裝容器 따위는 内容物과 함께 提示되는 경우에는 이 通則에 따라 그 内容物과 同一한 號에 함께 分類한다.

〈通則 5가〉

사진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체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 및 이와 類似한 容器는 특정한 物品 또는 物品의 세트를 수용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製造되어 있으며 長時間 使用하기에 적합하고 그 内容物과 함께 提示되는 경우에는 그 内容物과 함께 正當的으로 販賣되는 種類의 物品에 分類한다. 다만, 容器로서의 本質的인 特性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内容物 該當號에의 分類條件 —

- 特定한 形狀을 가지고 있거나 特定한 物品 내지 세트로 된 물품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것 즉 이들 容器는 그들이 소용 될 예정인 物品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設計되어 있다. 어떤 容器는 그들이 수용하는 物品의 형태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즉 이들 容器는 그들이 所用될 예정인 物品에 대응하여 耐久性을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이들 용기는 사용되고 있지 않는 物品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한다 (例: 운송 또는 보관등)
- 그들이 소용될 예정인 内容品과 함께 제시되는 것 (輸送의 편의상 분리 포장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内容品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
- 내용물과 용기의 統一體 (例: 치약入 튜브 등)로서 容器의 주요한 特性이 없는 것

- 内容物 해당 號 分類例

- 비누용 플라스틱 박스 (제 340 호)
- 신변장식용품 박스와 케이스 (제 7113 호)
- 전기면도기 케이스 (제 8510 호)
- 쌍안경·망원경 케이스 (제 9095 호)
- 악기의 케이스·박스 및 가방 (예: 제 9202 호)
- 엽총 케이스 (예 9303 호)

- 容器類 해당 號 分類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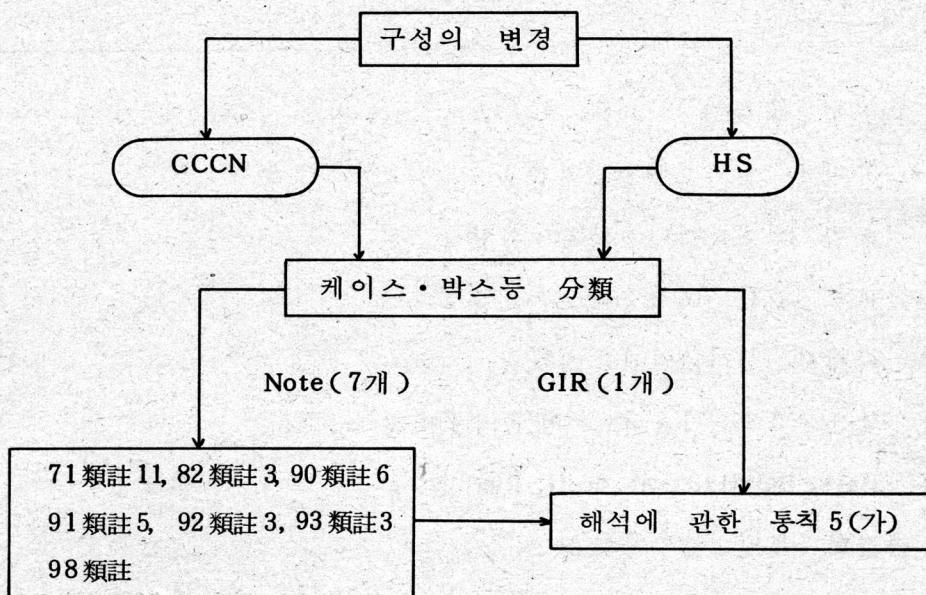
- 내용물에 비해 包裝容器의 價值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다든가 하는 이유로 그 내용물과 함께 販賣할 수 있는 것이 못 되거나
- 包裝物이 일반적으로 내용물의 포장에 사용되는 類型과 상이하고, 포장 이외에 내구적이고 독립적인 용도를 따로 가질 때 또 는

- 내용물과 함께 판매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완전한 物品의 본질적인 特性을 갖는 種類의 것이거나
- 關稅逋脫을 위하여 포장이 사용된 경우
- 내용물이 없는 空容器 등, 예를 들면 商品의 포장용기인 동시에 장식 또는 換價保存財產으로 이용되는 二重用途包裝 (Dual-use-Packaging) 수단은 내용물의 해당 號가 號가 아닌 容器의 해당號에 分類된다.
 - 茶가 담겨 있는 「銀製 통」 (Silver Caddy)
 - 甘露酒가 담겨 있는 「장식용 도자기」
 - 銀과 보석 등으로 장식된 「술병」 등

— 通則 5(가) 的 新設

- CCCN → HS

通則 5(가) 新設過程



• CCCN의 註의內容

「이 類의 物品과 함께 輸入되어 일 반적으로 같이 판매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용기는 당해 物品(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분리하여 수입되는 케이스·상자 기타 이와 유사한 容器는 각각 케이스 등이 해당되는 號에 分류한다.」

〈通 則 5 나〉

가의 規定에 該當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内容物과 함께 提示되는 包裝材料와 包裝容器는 이들이 그러한 物品의 包裝用으로 正常的으로 使用되는 種類의 것에 한하여 그 物品과 함께 分類한다. 다만 그러한 包裝材料 또는 包裝容器가 明白히 반복적으로 使用하기에 適合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内容物 該當號 分類例

- 유리제 술병 (個裝・外裝)
- 編製 신발주머니 (個裝・外裝)
- 紙裝 연필 포장 (個裝・外裝)
- 緩衝材 플라스티렌 (內裝)
- 생선상자에 사용되는 방습지 (內裝)
- Bale, Bundle, Coil, Roll, Real 등

— 容器類 해당 號 分類例

- 반복 사용하기에 명백히 적합한 철강재 드럼・실린더 등
 - 압축가스용 금속제 실린더 Bomb, Flask
 - 액화가스용 금속제 드럼, Cylinder

〈通則6〉

法의인 目的上 어느 號中 小號의 品目分類는 同一한 水準
 의 小號들만을 서로 比較할 수 있다는 點을 條件으로 그 小
 號의 用語와 關聯 小號의 註에 따라 決定되며 上記 諸通則
 을 準用하여 決定한다.
 또한 이 原則에서 文脈上 달리 規定한 境愚를 途外하고 關
 聯・部・類의 註도 適用한다.

- 先號 後小號

HS 體系에서 小號에 의한 品目分類를 하려면 먼저 4 單位 號
 예의 分類가 先行되어야 한다.

- 通則2나・通則3의 適用

- 木材와 金屬으로 제조된 부엌家具
 - 第 94.03,20 號 : 其他 金屬 家具
 - 第 94.03,40 號 : 부엌用 나무 家具

- 文脈上 다른 規定

- 第 71 類 註 4(나) : 이리듐이 白金에 포함
- 小號註 : 「 7110.11 」 「 7110.19 」의 白金에 이리듐이 포함
 않는 다.

第3章 註(Note)

1. 註의 形態

一 註規定의 3個類型

이 註를 구성하고 있는 規定의 형태를 살펴보면 ① 定義의 表現, ② 競合品目의 所屬明示, ③ 個別的 品目分類에 관한 原則을 説示한 것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가. 定義表現의 類型

(1) 一般的 定義를 規定

HS 品目表 全體 또는 特定의 部・類・號의 부분에 관련된 用語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2) 號의 內容, 簡潔化

定義로서의 共通文型을 註에 규정함으로 號의 長文化와 여러 號에 反復・記述되는 것을 排除하고 있다.

나, 競合品目所屬明示의 類型

(1) 除外・包含品目 明示

(2) 特定號(또는 小號)에 분류되는 品目の 列舉 또는 例示

(3) 特定類・節・號에 限定 分類되는 品目の 明示

(4) 特定部・類・號(또는 小號)에의 分類 指定

다. 品目分類原則 規定의 類型

(1) 一體(本體)에의 分類規定

(2) 分離分類의 規定

- (3) 主用途・主機能에 의한 分類規定
- (4) 歸屬度關數에 의한 分類規定
- (5) 定型規格에 의한 分類規定
- (6) 通則 (GRI) 的 規定에 의한 分類規定
- (7) 包裝品 세트에 관한 分類規定

- HS 상 註의 項目

CCCN과 HS의 註 項目 比較

部								類							
CCCN			HS					CCCN			HS				
項 目	비고 (追加 註)	項 目	追加 註	小號註		項 目	비고 (追加 註)	項 目	追加註	小號註		項 目	追加註	項 目	小號註
				項	目					項	目				
28	93	2 (예: 5 ·15부)	38	99		2	12	269	573	8 (예: 37·71· 87류 등)	319	660	5 (예: 37· 91류 등)	33	22

2. 定義 規定의 類型 例

가. 定義만의 規定 例

(1) HS 全分野 適用

- ① 이 表 (HS品目表를 지칭)에서 '아이보리' 라 함은 코끼리, 해마, 밀각고래 또는 산돼지의 엄니, 서각 및 모든 動物의 이

를 말한다 (5類 註 3)

② 이 表에서 '콤파지션 레더' 라 함은 제 4111 호에 규정한 물

품만을 말한다 (41類 註 2).

③ 이表에서 '유리' 라 함은 석영유리를 포함한다 (70類 註 5).

(2) 部分分野 適用

① 이 部에 게기된 動物의 特성의 屬이나 種은 별도로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屬이나 種의 어린 것도 포함한다

(1部 註 1)

② 이 類에서 '트랙터' 라 함은 주로 다른 車輛, 機器 또는 貨
物을 끌거나 밀기 위하여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87類 註 2)

③ 第 9702 號에서 '오리지널 版畫, 印刷畫 및 石版畫' 라 함은
한 개 또는 수 개의 原版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製作한
흑백 또는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이의 製作工程 및 材質 여
부는 불문한다 (97類 註 2).

나, 用語・文句의 定義와 限界포함 規定例

用語・文句의 意義와 限界規定例

區分 體系別	例 文	區分 體系別	例 文
表	<p>〈 43 類 註 1 〉……定義例 이 表에서 ‘毛皮’ 라 함은 털모하지 아니한 수피를 유연처리 또는 완성 가공한 것을 말한다.</p> <p>〈 54 類 註 1 〉……限界例 이 表에서 ‘인조섬유’ 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 공정에 의하여 제조되는 유기중합체의 스테이플 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말한다.</p>	號	<p>〈 87 類 註 3 〉……定義例 제 8702 號에서 ‘대중 수송형 승용차’ 라 함은 운전사를 포함하여 10인승 이상으로 설계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p> <p>〈 19 類 註 4 〉……限界例 第 1904 號에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이라 함은 第 10 類, 第 11 類의 각호 또는 註에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 또는 가공한 것을 말한다.</p>
	<p>〈 2 部 註 1 〉……定義例 이 部에서 ‘펠리트’ 라 함은 직접 압착하거나 또는 전중량의 100 분의 3이내의 접결제를 첨가하여 직접 용결한 물품을 말한다.</p> <p>〈 11 部 註 11 〉……限界例 이 部에서 ‘침투’는 침자된 물품을 포함한다.</p>		<p>〈 10 類 小號註 1 〉……定義例 ‘듀럼種의 밀’이라 함은 트리티컴 듀럼種의 소매 및 당해 種間交雜에 의하여 생긴 雜種 중에서 염색체 수가 트리티컴 듀럼種과 同數 (23) 의 것을 말한다.</p>
部	<p>〈 37 類 註 2 〉……定義例 이 類에서 ‘사진用’이라 함은 광선 또는 복사선에 의하여 감광선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可視像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한다.</p> <p>〈 48 類 註 5 〉……限界例 이 類에서 ‘크라프트紙와 版紙, 라 함은 황산 또는 소다처리 공정에 의한 페퍼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 분의 80 이상인 紙와 版紙의 것을 말한다.</p>	小號	<p>〈 17 類 小號註 1 〉……限界例 제 1701.11 및 1701.12 小號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p>

다. 共通文型 規定에 의한 號 本文의 간결化

(1) HS 상 號

- 第 5101 號「羊毛……………」
- 第 5103 號「羊毛……………웨이스트」
- 第 5105 號「羊毛……………가네스톡」

(2) 第 51 類 註 1

「‘羊毛’라 함은 羊 또는 어린 羊의 天然職維를 말한다.

3. 競合品目的 附屬明示

가. 除外・包含 規定

(1) 除外品目 明示 (文型 : 除外한다, 包含・適用・分類하지 아니한다)

HS 註에서의 除外規定 例

區分 體系別	例 文	區分 體系別	例 文
類	<p>< 22 類 註 1 >……文型 1 이 류 (음료 . 알코올 및 식초) 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해수 (제 2501 호) 나. 증류수 . 전도수 기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다. 생략 라. 생략 마. 조제향료와 화장품류 (제 33류)</p> <p>< 7 類 註 1 >……文型 2 이 류에는 제 1214 호의 사료용 식물을 제외한다.</p> <p>< 8 類 註 1 >……文型 3 이 류에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 니한 견과류와 과실을 제외한다.</p>	號	<p>< 13 類 註 1 > 제 1301 호 (락과 천연검 . 수지 . 검수지 및 발삼) 에는 감초엑스 . 제충주엑스 . 흡엑스 . 알로에엑스와 아편을 포함하여 다음 것을 제외 한다. 가. 감초엑스로서…… 나. 맥아엑스로서…… : 자. ……</p>
		節	<p>< 63 類 註 2 > 제 1절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 의 기타물품) 에서는 다음 것을 제외한다. 가. 제 56 류 내지 제 62 류의 물품 나. 제 63 류의 中古의류 및 제품</p>

(2) 包含品目 明示 (文型 : 包含 · 適用 · 分類한다)

註에서의 包含規定 例

區分 體系別	例 文	區分 體系別	例 文
表	<p>〈 1 部 註 2 〉 이 표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조한 것이라 함은 탈수·증발 또는 냉동건조한 것을 포함한다.</p>	部	<p>〈 11 部 註 12 〉 이 부에서 폴리아미드는 '애러미드'를 포함한다.</p>
		類	<p>〈 60 類 註 2 〉 이 류에서 衣類·室內用品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금속製의 직물을 포함한다.</p>

나. 品目的 列舉 또는 例示

註에서의 品目列舉와 例示規定

內容別 區分	列 舉	例 示
例文	<p>〈 30 類 註 3 〉 제 3006 호는 다음의 물품에 한해서 적용하며 그러한 물품들은 제 3006 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 표상의 다른 호에는 분류되지 않는다.</p> <p>가. 살균한 외과용의 캇것과 이와 유사한 봉합재 및 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p> <p>나.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라미나리아의 텐트</p> <p>다. 살균한 흡수성 외과용 지혈제와 치과용 지혈제</p>	<p>〈 86 類 註 2 〉……文型 1 제 8607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p> <p>가. 차축·차륜·차륜세트(주행장치)·윤축·외륜과 윤심 및 기타의 차륜 부품</p> <p>나. 프레임·언더 프레임·보우기(대차)와 비셀 보우기(비셀대차)</p> <p>다. 차축함 및 제동기</p> <p>라. 차량의 원충기, 후크 및 기타의 연결기와 통로연결기</p> <p>마. 차체</p>

다. 特定號 등에 限定分類되는 品目의 明示

限定分類되는 品目明示 規定例

區分 體系別	例 文	區分 體系別	例 文
表	〈 41 類 註 2 〉 이 表에서 “콤퍼지션레더” 라 함은 제 4111 호에 규정한 물품만을 말한 다.	號	〈 85 類 註 3 〉 제 8509 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 서 사용하는 다음의 電氣機器만을 분류한다. 가. 진공소제기, 바닥광택기, … 나.
部			
類	〈 61 類 註 1 〉 이 類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小號	〈 84 類 小號註 1 〉 제 8482.40 號는 단지 직경이 5 밀 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최소한 직 경의 3 배 이상인 원통률러를 갖춘 베어링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節	〈 63 類 註 1 〉 第 1 節에서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품으로 된 物品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指定 部・類・號・小號에의 分類

指定 部・號・小號에의 分類規定例

部 區分 類別	例 文	區分 體系別	例 文
部	〈 6 部 註 3 〉 2 종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 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部에 해당 하고 제 6 부 또는 제 7 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혼합한 것은 제 6 부 또는 제 7 부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한다.	號	〈 62 類 註 8 〉…文型 2 이 류에서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 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 한다.
類	〈 91 類 註 4 〉 시계 및 기타의 물품 (예; 정밀기계) 에 함께 사용하기에 적당한 무브먼트 및 기타 다른 부분들은 이 류에 분류 된다.		〈 48 類 註 10 〉…文型 3 제 4823 호에는 자카드 직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되는 천공 한 紙와 판지제의 카드 및 지제의 레이스를 적용한다.

4. 品目分類原則

가. 本體에 의 分類原則 (一體의 分類原則)

〈例文〉

(1) 16 部 註 3 (主機와 補助機)

두 가지 이상의 機械가 함께 結合되어 하나의 完全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補助機能 또는 選擇機能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解釋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상기 要素들로 구성된 단일의 機械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機械로 분류한다.

(2) 16 部 註 4 (主機 + 補助機)

하나의 機械(數種의 機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여러 개의 個別器機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따로 分離되어 있거나 配管・電動裝置・電力케이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第 84 類 또는 第 85 類 중의 어느號에 명백하게 규정된 機能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全部를 主機能에 따라 該當號에 분류한다.

나. 個別 分類의 原則

(1) 85 類 註 6 (錄音器와 테이프)

第 8523 號 또는 第 8524 號의 레코드판・테이프 기타의 記錄用媒體는 이들 物品이 사용되는 機器와 함께 提示된 것인지의 여

부를 불문하고 당해 각號에 분류한다.

(2) 94類 註3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제 9404 호에掲記한 物品이 제 9401 ~ 9403 호의 物品의 部分
品에 해당될지라도 단독으로 輸入된 경우에는 제 9401 ~ 9403 호
에 분류하지 아니한다.

(3) 93類 註1 (武器와 火當, 雷管…)

이 類(武器 등)에서는 다음의 것을 除外한다.

(1) 36類의 物品(예: 화관·뇌관·신호용 조명탄)

(4) 생략

다. 主用途・主機能에 의한 分類原則

(1) 主用途에 의한 分類

① 17部 註3

第 86 類 내지 第 88 類(철도…기관차…와 그 部分品 등)의
“部分品” 또는 “附屬品” 규정은 이들 類의 物品에 專用 또는
는 主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部分品과 附屬品에는 적용
하지 아니하며, 이들 類 중 둘 이상의 號에서 규정한 내용이
함께 적합할 경우에는 그 部分品이나 附屬品의 主用途에 따라
이를 분류한다.

② 84類 註7(前段)

2 가지 이상의 用途에 사용되는 機械類의 分類에 있어서는
그 主用途를 유일한 용도로 취급하여 이를 분류한다.

(2) 專用 또는 主用途機器에의 分類

① 90類 註2

上記 註 1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類의 機器의 部分品과 附屬品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7) 생 략

(4) 기타의 部分品과 附屬品으로서 특정한 機器 또는 동일한號에 해당하는 數種의 機器 (第 9010 號・第 9013 號 및 第 9031 號의 機器를 포함한다.)에 專用 또는 主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 機器와 함께 분류한다.

③ 95 類 註 3

上記 註 1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類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部分品과 附屬品은 당해 物品과 함께 분류한다.

(3) 共用 (共通使用) 部分品의 分類

① 16 部 註 2 나 (단서)

다만, 主로 第 8517 號와 第 8525 號 내지 第 8528 號의 物品에 共通的으로 사용되는 部分品은 第 8517 號에 분류한다.

(4) 主用途 不明確品의 分類

① 84 類 註 7 (後段)

어느 號에도 主用途가 서술되어 있지 않거나 主用途가 불명확한 機械類는 이 類의 註 2 또는 16 部 註 3의 규정에 따라 分離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解釋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第 8479 號에 분류한다.

(5) 主機能 (또는 主機)에 의한 分類

① 16 部 註 3

2 가지 이상의 機械가 함께 結合되어 하나의 完全한 機械를 구성하는 復合機械와 기타 2 가지 이상의 補助機能 또는 選擇機能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機械는 문맥상 따로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上記 要素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主된 機能을 수행하는 機械로 분류한다.

② 16 部 註 4

하나의 機械 (數種의 機械가 結合된 것을 포함한다) 가 數種의 個別機器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따로 分離되어 있거나 配管・電動裝置・電力케이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與否를 불문한다.) 이들이 第 84 類 또는 第 85 類 중의 어느 號에 명백하게 규정된 機能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는 그 전부를 主機能에 따라 該當號에 분류한다.

라. 歸屬度 關數에 의한 分類原則

(1) 最大重量 우선 分類

① 11 部 小號 註 2 (가) (섬유의 分類)

둘 이상의 紡織用 纖維로 구성된 第 56 類 내지 第 63 類의 物品은 동일한 紡織用 纖維로 구성된 第 50 類 내지 第 55 類의 物品分類에 관한 이 部의 註 2의 규정에 의거 최대의 重量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

② 15 部 註 3 (合金의 分類)

合金의 分類 (第 72 類 第 74 類의 註에 규정한 폐로얼로이와 마스터얼로이를 제외한다.)

(1) 卑金屬 合金은 含有重量이 重量比로 각각 다른 금속보다 가
장 많은 금속의 合金으로 分류한다.

(2) 指定關數值에 의한 分類

- ① 上限關數值 100 분의 0.5 이하 (22類 註 3)
- ② 下限關數值 100 분의 50 초과, 100분의 80 이상 (48類 註 5)
- ③ 上·下限關數值 100 분의 70 이상 85 이하

마. 定型規格에 의한 分類原則

(1) 체 (Sieve) 通過 重量比率

① 11類 註 2

(1) 生략

(4) 前 “(가)”의 규정에 의하여 이 類에 해당하는 物品은
아래 表 제 4 란 또는 제 5 란에 표시한 구명을 가진 金屬綱의 체
를 빼져 나가는 重量比率이 당해 곡물에 관하여 표시된 比率 이
상의 경우에 한하여 第 1101 號 또는 第 1102 號에 分류하며, 그 이
외의 것은 第 1103 號 또는 第 1104 號에 分류한다. (例: 밀 · 호밀
· 쌀 등은 315 미크론의 체 通過比率이 80 %, 옥수수와 수수는
500 미크론 체 通過比率이 90 %).

(2) 發熱量에 의한 分類

① 27類 小號 註 2

第 2701.12 小號에서 “유연탄”이라 함은 乾操하고 鐵物質이
없는 狀態에서 撻發性 物質의 합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4 를 초과하
고 鐵物質이 없는 含水 狀態에서 發熱量이 1 kg 당 5,833 킬로칼로리 이상의
石炭을 말한다.

(3) 1 평방미터 당 重量에 의한 分類

① 48類 註 3

이 類의 “新聞用紙”라 함은 新聞印刷에 사용되는 것으로
서 機械工程에 의한 페퍼의 함유량이 全纖維重量의 100分의 65
이상, 사이즈를 아니하거나 極小量 사이즈한 것으로 양면의 평활
도가 200/초 백크이하, 1 평방미터의 重量이 40 그램 이상 및 57
그램 미만으로 灰分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分의 8이하의 것
인 塗布하지 아니한 紙의 것에 한한다.

(4) 데시텍스 (decitex) 및 시엔 / 텍스 (CN/TEX)에 의한 分類

① 11部 註 3 …데시텍스

(1) 이 部에서 다음에 계기한 실 (單絲 · 復合絲 (연합사) 또는
케이블絲)은 註 3의 “나”에 揭記한 物品을 제외하고, 끈 · 코디
지 · 로프 및 케이블로 취급한다.

① 견 또는 견웨이스트의 것으로서 20,000 데시텍스를 초과
하는 것.

② 人造纖維의 실 (第 54 類의 두 가닥 이상의 모노필라멘
트로 제조한 실을 포함한다.)로서 10,000 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2) 11部 註 6 …시엔 / 텍스

이 部에서 “強力絲”라 함은 強度를 갖고 있는 실을 말
하며, 시엔 / 텍스 (센티뉴우톤퍼텍스)로 표시하고, 다음에 揭記한
것보다 커야 한다.

(1) 나일론 · 기타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의 單絲 …… 60
시엔 / 텍스

(4) 나일론·기타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에스테르의复合絲(聯合絲) 또는 케이블絲 …… 53 시엔/텍스

(5) 길이에 의한 分類

① 48類 註 8

第 4814 號에서 ‘壁紙 및 이와 유사한 벽 被覆材’는 다음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7) 벽 또는 천정의 장식에 적합한 폭이 45 cm이상이고 160 cm 이하인 룰狀의 紙로서 다음에掲記한 것.

바. 最終號·類似品 分類와 先類, 後號의 分類原則

(1) 最終號 分類의 原則

① 29類 註 3

이 類에서 2 이 상의 號에 해당하는 物品은 그 該當號 중 最終의 號에 분류한다.

② 29類 註 5

第 1 節 내지 第 10 節 또는 第 2942 號의 有機化合物 상호간에 형성된 염은 이 類의 最終號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그 鹽이 형성된 염기 또는 酸(페놀관능화합물 또는 에놀관능화합물을 포함한다.)이 해당하는 號 중 最終號에 분류한다.

(2) 類似品에의 分類原則

① 17部 註 5

空氣緩衝式 車輛은 이 部 내에서 분류하되 다음에서 정한 바에 가장 유사한 車輛으로 보아 이를 분류한다.

(가) 가이드 트랙 위를 주행하도록設計된 것은 第 86 類 (호버
어 트레인)

(나) 陸上 또는 水陸兩用으로 설계된 것은 第 87 類

(다) 물 위를 주행하도록 설계된 것은 第 89 類 (해변 또는 발착
장 위로 상륙할 수 있거나 얼음 위를 走行할 수 있는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② 72 類 註 3

電解法・壓搾鑄造 또는 燒結法에 의하여 제조한 철강제품은
그 形狀・構成・모양에 따라 유사한 열간압연제품에 알맞은 이 類
의 각 號에 분류한다.

(3) 先類, 後號 分類原則

① 11 部 註 2 (4)

該當號의 決定은 우선 類를 결정하고 그 다음 그 類에 속
하는 적절한 號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類에 분류되지 않는 材
料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第5部

品目分類의 演習

第1章 HS의 分類要領

1. 問題點
2. 分類要領

第2章 HS상 紛爭解決

1. 概 要
2. HS委員會
3. 行政救濟制度

第3章 演 習

1. CCCN分類상 紛爭例
2. HS分類상 紛爭例
3. 機械部品의 分類例
4. 實行關稅率表와 HS補助資料

第1章 HS의 分類要領

1. 問題點

가. HS 등 品目表의 不完全性

- 貿易商品, 地球村의 全物品 列舉困難
 - 300 萬 - 500 萬種
 - 新規商品의 계속 등장
- HS 品目表
 - 約定品目表 (HS協約)
 - 混合分類 (本質的分類 + 應用分類)

나. 分類의 相異要素 介在

- 號 (Heading) 用語의 多義
 - 말 (馬)
 - └ 말 (0101)
 - └ 얼룩말 (0106)
 - 소 (牛)
 - └ 소(물소) (0102)
 - └ 코뿔소 (0106)
 - 도토리
 - └ 식용 (08 類?)
 - └ 사료용 (2308.10)
- 註 (Note) 適用의 複雜
 - 汎用部分品의 例

범용성 部分品의 경우 第 16 部 註 1 (사) → 第 15 部 註 2 (다) <8301> →
第 83 類 註 1 → 第 76 類 등 3 個의 註와 1 個의 類 순서로 要件 규정들

을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通則 (GRI) 思考的 判斷基準의 相異

〈事例〉

- △ 「完成品의 認定」
- △ 「主要特性에 의한 分類原則」
- △ 「類似品에의 分類原則」

〈例解〉

GRI 3(나)의 「主要特性에 의한 分類原則」에서는 얼핏 보기에는 2個以上의 號에 分類됨직한 混合物 및 複合物이 그 製品에 主機能을 부여하고 있는 材料 또는 構成要素만으로 기준하여 思考的 判斷에 따라 號의 소속을 決定하는 것이 쉬운듯하나 定量的判斷을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個人的 思考의 差異에 따라 實際적인 適用은 달라질 수 있다.

2. 分類要領

가. 分類對象 商品의 類型

HS·SITC의 品目分類의 대상이 되는 貿易商品은 다음과 같이 7個類型으로 区分되는데 여기서는 部分品을 研究對象으로 選定하였다.

(1) 同一·同種의 素材와 그 製品〈例：면(100%) 직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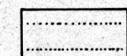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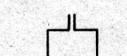
(2) 2種 이상의 다른 素材로 구성(또는 合成·組成)

된 混合物과 그 製品〈例：밀(50%)과 호밀(50%)

의 混合物, 면(40%)과 나일론(60%)으로 직조된

나일론 직물〉



- (3) 機械本體와 部分品 및 豫備部分品 <例: 냉장고와
..... 
등축기 또는 증발기>
- (4) 機械本體와 附屬品 <例: 손목시계와 줄, 소총과
..... 
벨트>
- (5) 複合機械 <例: 크레인, 운반기와 양하기> 
- (6) 세트로 포장된 物品 <例: 洗面道具, 미용기구
..... 
세트>
- (7) 포장·容器類에 내장된 物品 <例: 비누와 그
..... 
통, 고압가스실린더>

나. 商品의 分類

一 基礎知識

- HS 品目表의 分類體系
 - HS 解說書의 內容
 - 商品에 관한 윤곽
- 一 商品의 確認
- 單一·複數物品 與否
 - 特性 (製法, 原料, 成分, 構成, 機能, 用途等)
 - 方法
 - ① 카다로구
 - ② 제품설명서
 - ③ 일반文獻 (商品辭典等)
 - ④ 질의·상담 (전문가·생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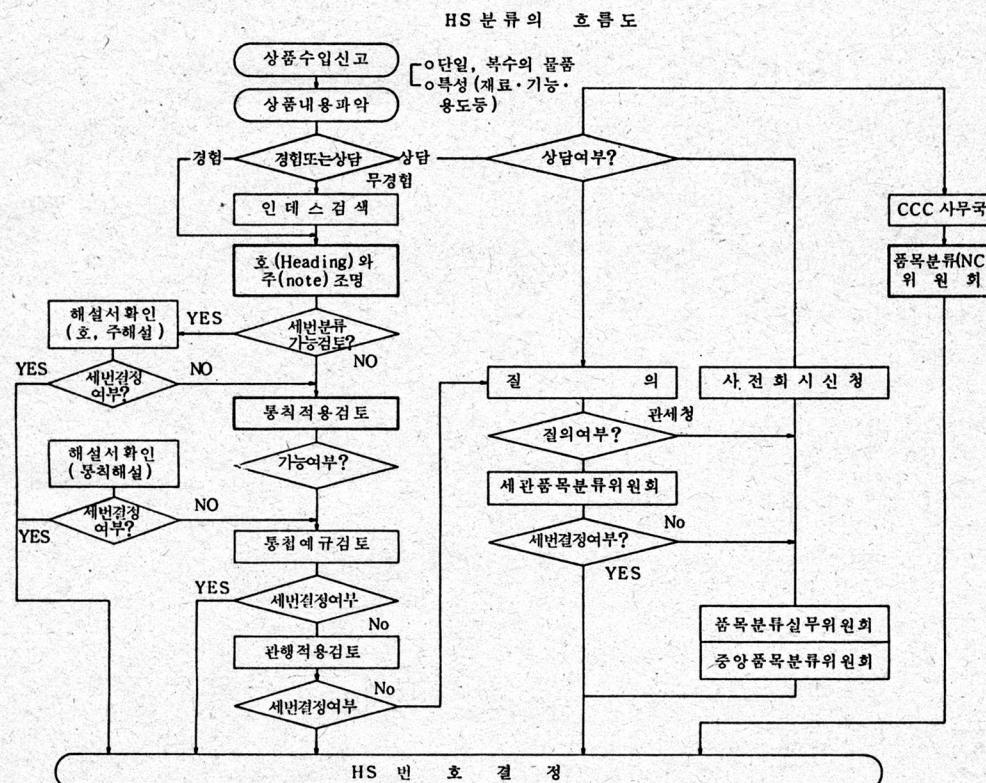
다. HS 分類에의 接近

一 商品・品目

- 商 品：商的物品，交換價値가 있는 財貨
- 品 目：品目表상 계기된 物品
- 品目分類：商品（物品）이 品目表상 계기된 物品과 一致하는가

一 接近方法

- 概 要



— Index 揭記品

• Index

① CCC 發刊 (例, Alphabetical Index to H.S. and its
Explanatory Notes)

② KCRI 發刊 (例, 輸出入商品 HS 分類索引書[☆])

(☆ : CCC, Index + 輸出入實績商品)

• 商品名

① 製造會社 固有의 商標名, 商品名

② 一般 貿易商品名, 學名 Index 개기

• 接 近

Index 개기된 관련號 → HS 本文對查 → 註 → 通則

— Index 非揭記品

• 질의 · 相談에 의한 接近

주요 HS 상담기관

구분	기관명	담당부서	특기사항	전화
서울	관세청	○감정과 ○분석소 ○민원실	- HS 전반 - 주로 화공약품 - 사전회시등 안내	(대표) 542-7141
	관세연구소	○HS 연구실	- 분야별로 담당자 지정	(대표) 544-3032
	무역협회	○상담소	- 특별상담코너	(대표) 771-41
지방	각세관	○민원실 또는 수입과	- 세면회시제도운영	
	관세사무소	○각사무소		

※ SITC, 경제기획원에서 주관

• 自力에 의한 接近

△ 分類하고자 하는 物品이

① 部題 : 部題의 商品, 商品群名과 同一·類似한가

② 類題 : 類題 " "

③ 號 : 號에 계기된 品目과 一致하는가

④ 註 : 除外 與否

⑤ 通則 : 2個以上의 號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除外例 :

號除外 < 0307 달팽이 (바다달팽이 除外) >

註除外 < 8 類註 1 (이류에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견
과류와 과실을 제외한다.

HS 解說書除外 < 8528.10 칼라TV (비디오 기록기 및 재생기
(8521) >

第 2 章 HS 상 紛爭解決

1. 概 要

— CCC 主管

- △ 個人·組合 → 政府關稅當局(財務部 關稅局) → HSC (NC는
1回期間 20-30件 檢討處理)
- △ 個人·組合 → CCC事務局(品目表·分類局)(事務局은 每年
300-500件 接受處理)

— 國內 政府機關 主管

- △ 稅關·關稅廳
- △ 國稅審判所
- △ 法院

2. HS 委員會

— 紛爭 해결

① 當事者간 解決(協約 §10-1)

2개국 이상의 締約國 사이에 HS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관련국 政府들은 가능한 한 자체 내에서의 交涉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직접적인 協商에 의하여 紛爭을 해결한 정부는 同 決定에 관하여 理事會 事務局에 통지할 수 있으며 理事會 事務局은 HS에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② HSC의 분쟁 해결

직접 協商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분쟁은 사무국에 위탁되며, 사무국 (品目・分類局 : Nomenclature and Classification Directorate) 은 이를 검토하여 HS委員會에 상정하며, HSC는 그에 따라 분쟁내용을 심사하여 해결책에 관한 적당한 勸告를 行한다.

③ CCC의 분쟁解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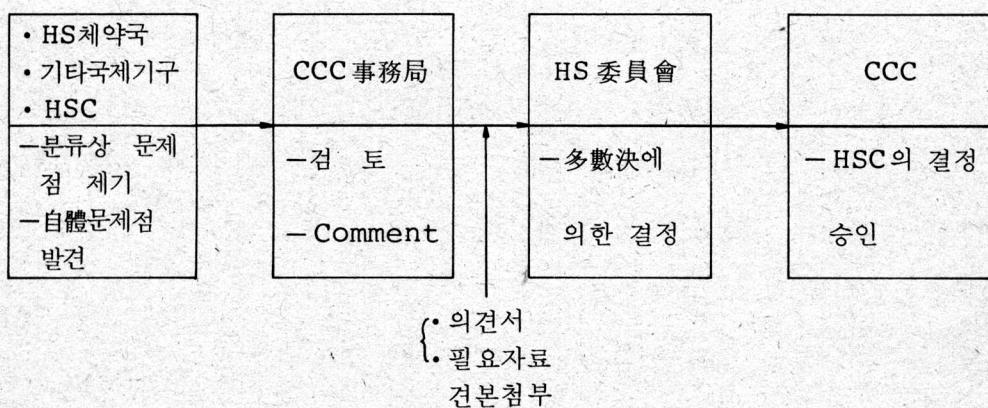
만약 H.S.C가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H.S.C는 그 문제를 이사회에 넘기며, 동 이사회는 이사회 설립에 관한 협약 제3조에 의거해서 권고를 한다.

④ HSC의 紛爭外 解決 (§7-1)

또한 사무국이 직접 締約國에서의 分類上의 相異點을 발견하는 경우에도 사무국은 關聯會員國과 협의하여 의견의 차이가 있음이 확실한 경우에 正常的인 절차에 따라 HSC (또는 NC) 에 議題로 상정한다.

— HS委員會의 品目分類 決定

① 處理節次



② 決定의 樣式

• HS 文脈상 自明

品目分類가 HS(CCCN)의 文脈 또는 HS解說書의 内容에 따라 自明한 경우에는 문제를 취급한 委員會 회기의 보고서에 決定事項을 단순히 언급할 뿐이고 더 이상의措置는 취하지 않는다.

• HS 解說書와 競合

品目分類가 解說書의 현존하는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는 있으나 分類決定이 곤란할 경우에는 品目分類 의견서를 作成한다. 이와같이 작성된 品目分類 의견서는 HS 순에 따라 品目分類意見要約書에 수록된다.

• HS 解說書의 不充

解說書가 特定物品의 분류에 관하여 충분히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訂正(Corrigendum)의 형식으로 解說書를 구체화하거나 修正하는 案을 마련하여 理事會의 승인을 얻은 후 출판하여 會員國 또는 一般人에게 配布한다.

• HS 解說書의 不合理

委員會에서의 검토의견이 技術的으로 가장 合理的이라 생각하는 분류가 HS(또는 CCCN)의 일부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HS 일부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 못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 HSC에서도 결정할 수 없을 때는 CCC에 최종적으로 이들 紛爭解決을 위해 勸告를 요청할 수 있고, HS 改正案을 理事會에 제출한다.

〈事例〉 品目分類委員會 檢討決定例

트리니다드 토바고 政府에서 NC事務局에 "Liquid Paper"로 불리는 訂正液(Correction Fluid)에 대하여 品目分類를 의뢰하여

第39次～第40次 品目分類委員會에 上程·決定된 事例를 정리해 본다.

一 商品說明

가. 組 成

25%의 안료, 5%의 합성수지 접착제, 70%의 有機溶媒로構成된
白色液體(분홍색, 짙은 갈색 등의 것도 있음)

나. 包 裝

18.5cc짜리의 조그만 병 속에 包裝販賣하며, 캡에 조그만 브러시
가 附着 포함되어 있음.

다. 用 途

타이핑의 誤字 등을 덮어서 지움.

- 誤字 등의 表面에 이 Correction fluid를 도포하면 이 液體
는 迅速히 乾燥되어 얇은 皮膜을 形成함.

- 병 속의 Correction fluid가 너무 진할 경우는 用途說明에
따라 Correction fluid用 희석제(thinner)에 희석하여 使
用하는 바, 희석제는 조그만 병에 包裝된 複合有機溶媒임.

一 事務局의 品目分類意見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檢討되었다.

- ① 조그만 병에 包裝된 Correction fluid
- ② 조그만 병에 包裝된 thinner
- ③ 조그만 병에 包裝된 Correction fluid와 조그만 병에 포
장된 thinner를 한 개씩 묶어 세트로 포장한 物品

이 경우 조그만 병에 包裝된 thinner는 별도로 수입된다면 이

물품이 여러 가지의 有機溶媒混合物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第 3818 號에 분류될 것인 바, 여기에서는 Correction fluid 자체와 Correction fluid와 thinner가 세트로 포장된 物品의 분류만이 문제가 될 것임.

가. 誤字訂正用 Correction fluid

小賣包裝된 Stencil corrector (등사원지 修正劑) 는 第38類 註 2(d)의 規定에 따라 第 3819 號에 분류되도록 되어 있으며, 第 3819 號 解說書에서는 Stencil corrector로 小賣包裝되지 않은 바니시는 第 3819 號에서 제외하도록 規定하고 있음.

Correction fluid에 대하여는 品目分類表나 解說書에 별도로 規定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第 3819 號 이외의 特定號 예컨대 第 3209 號나 第 39 類의 特定號에 分類될 가능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이 物品이 第 3819 號에 分類될 수 있기 위하여는 第 3209 號나 第 39 類에 分類되지 않음이 明白해져야 할 것임.

(1) 第 3819 號

이 號에는 특히 “페인트와 에나멜”을 분류하는 바, CCCN 解說書에 의하면 “페인트”의 概念을 “非溶解性 着色物質……을 特定의 接着劑(binder) 및 통상 特定의 溶媒에 分散시킨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 物質의 一般的인 用途나 機能에 대하여는 說明이 없음. 이를 證據로 하여 Correction fluid가 안료, 接着劑 및 溶媒로構成되었음을 이유로 “페인트” 또는 “에나멜”로 간주될 수 있다 고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각종의 科學書籍에서는 페인트의 機能을 着色·장식 및 또는 保護로서 說明하고 있음. 반면에 문제의 Cor-

rection fluid는 타이핑 등의 誤字를 덮어 없애는 데 사용되는 것이지 着色·장식 또는 保護目的에 사용되는 것이 아님. 더우기 이 物品은 페인트와는 달리 急速히 (數秒內에) 乾燥되어 皮膜을 形成함으로써 타이핑을 다시 하거나 다시 쓸 수 있게 함. 이러한 用途上의 差異에 따라 “페인트 및 에나멜”과는 다르며, 더우기 小賣包裝된 Correction fluid는 用途說明書에 의해 쉽게 그 用途를 識別할 수 있음.

(2) 第 3209 號

이 號에서는 또한 “……페인트 또는 에나멜 媒體에 混合된 顏料”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Correction fluid는 特定用途에 卽時使用할 수 있는 最終製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될 수 없을 것임.

(3) 第 39 類

第 39 類 註 3(a)에서는 第 3901 號 내지 第 3906 號에 合成樹脂의 溶液 및 分散液이 포함됨을 規定하고 있음. 그러나 事務局의 意見으로는 Correction fluid가 合成樹脂를 단지 少量 接着劑로서 포함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第 39 類 註 3(a)에서 의미하는 합성수지 溶液 또는 分散液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第 39 類에서除外될 것임.

결국 이 Correction fluid의 分類는 第 3819 號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類似物品인 小賣包裝된 Stencil corrector의 分類와 부합되는 것임.

나. 작은 병의 Correction fluid와 작은 병의 thinner를 세트로 包裝한 物品

1978.1.1, 개정된 關稅率表 解釋에 관한 通則에 따라 이 세트로
포장한 물품은 이 物品에 主特性을 부여하고 있는 要素인 Correction fluid의 해당 호에 分類되어야 할 것임.

一 品目分類委員會의 決定

가. Correction fluid

分類 가능한 號로서 第 3819 號와 第 3209 號의 의견이 있는 바, 즉
第 3209 號를 主張하는 代表들의 見解는 다음과 같았음.

① 통상의 페인트와 같이 Correction fluid는 종이에 色
을 칠하고 불필요한 表示 등을 지우는 데 사용되며

② 이 液體의 조성이 解說書 第 3209 號에 설명되어 있는 페
인트의 組成과 부합되며 組成과 부합되며

③ 이 液體는 迅速히 乾燥한다 하여 페인트와 다른 特性의 것
이라 할 수 없는 바, 페인트類 중 어느 것은 동일하게 迅速히 乾
燥하는 特性이 있음.

④ 또한 Stencil corrector로 包裝된 바니시 第 3209 號로
부터 제외하는 것에 대하여는 法的 規定이 있지만, 問題의 液體와 같
이 페인트로 취급될 수 있는 物品을 이 號에서 제외한다는 明白한
規定이 없음.

- 반면에 第 3819 號를 主張하는 見解는 다음과 같았음.

① Correction fluid가 단지 타이핑誤字 등을 지우기 위
해서만 사용되는 것임은 레이블을 보면 明白함. 이 物品은 “페인
트”로서 去來되지 않으며, 또한 “페인트”로서 使用되지 않음.

② 第 38 類 註 2 에 Correction fluid에 대하여 言及이 없
다 하여 이 物品을 第 3819 號에 分類할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음.
결국 投票에 불인 結果 委員會는 22 對 6 의 多數로 Correction
fluid를 第 3819 號에 分류하기로 결정함.

나. Thinner

委員會는 滿場一致로 Correction fluid用의 有機化合物의 混合
體인 thinner가 第 3818 號에 分類되어야 함을 決定함.
다. Correction fluid와 Thinner를 세트로 包裝한 物品
만장일치로 改正解釋에 관한 通則에 따라 이 物품을 第 3819 號로
分類키로 決定함.

一 解說書 插入

第 40 次 品目分類委員會에서는 上記 Correction fluid의 分類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CCCN 解說書를 改正하기로 하였음.

가. 第 3209 號 解說書에 다음과 같이 除外規定을 삽입함.
“ 風料接着劑 등으로 조성되어 小賣包裝한 物品으로서 타이프文書, 手
製文書, 寫眞複寫物, 오프셋, 프린트마스터, 其他 이와 유사한 것의 誤
謬를 修正하기 위해 사용되는 物品 ”

나. 第 3819 號에 다음 規定을 삽입

小賣包裝한 訂正液 (correction fluid) : 白色 또는 其他 色彩의
불투명한 流體로서 風料, 合成樹脂接着劑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타
이프文書, 手製文書, 寫眞複寫物, 오프셋, 프린트마스터 기타 이와 유사
한 것의 誤謬를 修正하기 위한 物品, 이 物品种은 보통 작은 병 또

는 펜의 形狀으로 포장되며, 통상 캡에 조그만 브러시가 附着되어 있음. 그러나 訂正液用의 複合 thinner는 第 3818 號에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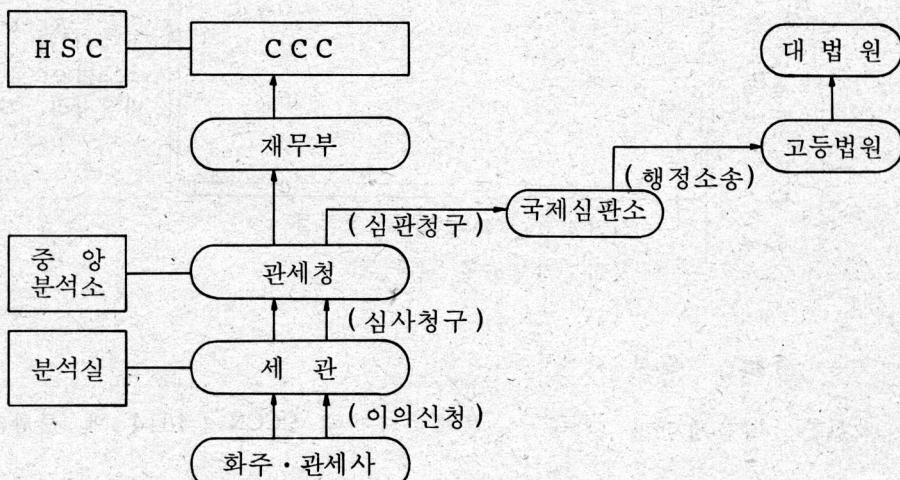
3. 行政救濟制度

一 概 要

수출입통관시에 이루어지는 HS 분류에 대한 최종결정은 하나의 세관장의 처분에 해당되어 행정상 불복의 대상이 된다. 즉 HS 분류결정에 대해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부당한 경우에는 관세법상 마련되어 있는 행정구제절차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시에 자신의 지식으로는 충분치 못한 경우 관세사의 도움을 받거나 관세사에게 의뢰해서 행정상 불복을 진행 할 수도 있다.

一 行政救濟節次

行政 구 제 절 차 圖



第3章 演習

1. CCCN 分類上 紛爭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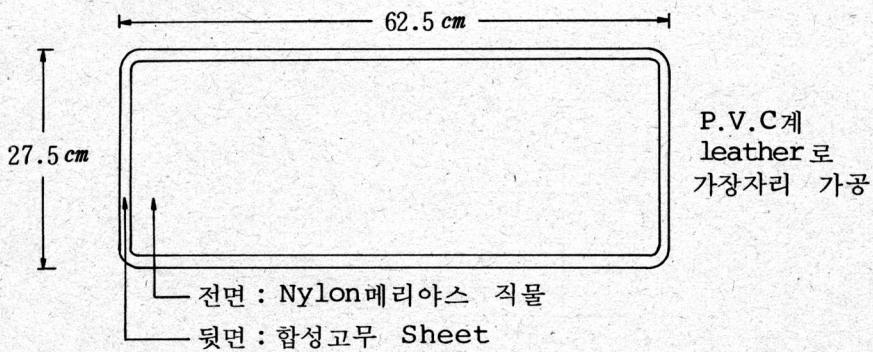
〈事例 1〉 Car-mat[1986. 관세심사청구 (109-11)]

— 註解

GRI 3 '나'의 「主要特性 優先分類의 原則」은 實제로 當該 物品의 주요특성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입장에 부딪쳤을 때 그 의미가 모호하고 適用限界도 불명확하여 어떤 決定을 위한 理論을 전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다음에 동 原則과 관련하여 品目分類에 관한 關稅審查請求 등에서 다루었던 事例를 살펴본다.

— 商品說明

본 物品은 승용자동차의 床에 깔 매트류로서 4 각형으로 성형한 고무제 시트면에 나일론材質의 메리야스織物을 부착시키고 가장자리를 가공한 것이다.



— 分類上 異見

本品은 납품재질인 기타 고무제품의 號 CCCN 「4014」에 분류하여야

하나, 紡織用 纖維製의 매트의 號 「5802」에 分류하여야 하나, 또는 자동차용의 床매트이므로 자동차 부속품의 該當 號 「8706」에 分류하여야 하는가.

◇ 決定號

本品은 사용하는 면이 표면을 조성하는 나일론 섬유제 메리야스(또는 파일)로서, 그 纖維의 特性을 살려 만든 매트류이다. 고무 Sheet는 다만 자동차의 상에 닿는 부분을 구성한다. 따라서 主要 特性을 결정하는因子는 사용면에 있는 표면을 형성하는 纖維材質로 본다. 同旨로 關稅率表解說書上 5802에 「紡織材料로 사용면을 구성하는 매트로서 충분한 두께 (thick), 경직성 (stiff), 강도 (strong)의 物品…」이라는 解說이 있다.

58類 註 2의 규정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5802」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自動車用 部屬品의 분류에 관해서는 關稅率表解說書上 GRI 3 (가)의 해설부분에서 自動車用 카페트(매트류)가 자동차용 부속품이 아니고 紡織用 카페트에 분류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또한 同解說書 8706 I 2(b)의 해설에 따르면 同號 「8706」에는 纖維製 매트를 제외하고 있다. 이에 本品은 「5802」에 분류한다.

〈事例 2〉 裁縫세트 (1983, 東京稅關 分類事例 [83-12-3]).

- 商品說明 -

본 物品은 케이스(금속제의 프레임으로 구성된 직물제 : \$ 173), 가위 (1개 : \$ 2.23), 裁縫絲 (18 본 - 1 ~ 1.5 m : \$ 0.28), 단추 (4 개 : \$ 0.28), 안전핀 (2개 : \$ 0.26), 바늘 (3 본 : \$ 0.26), 종이자

(65 cm : \$ 0.16) 가 들어 있는 여행 휴대용의 재봉 세트이다. 構成品의 總價格은 C&F US \$ 5.20 이다.

— 問題點

本品은 주요특성에 의하여 一括 (一體) 分類가 가능한가, 이 경우 어느 物品이 主要特性을 부여하고 있는가.

— 分類上 異見

本品은 여행할 때 떨어진 단추를 달는 등 간단한 재봉을 위한 용구를 휴대용기에 넣은 것으로서 통칙 3 (나)의 「세트로 된 物品」에 적용시켜 本品의 중요特性을 부여하는 物品이 속하는 號에 一括 分類하여야 할 것이다.

本品의 경우 特性判斷의 基準・因子를 수량・중량・가격・부피・역할 등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여야 하는가 고려되어야 한다. 數量・重量은 모두가 적은 量이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으로는 부적합하고, 本品을 구성하는 物品의 각 역할도 모두가 개개 사용목적에 불가결의 物品들이라 할 것이므로 特定의 物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점에 비추어 주요 특성의 결정은 價格에 의하여 定量的 判斷을 하는 것이 合理的이다. 따라서 본품의 경우 최고가격의 가위 (\$ 2.23) 가 해당하는 CCCN 8212에 분류한다.

〈事例 3〉 California Cooler, Wine Spritzer

— 註 解

캘리포니아 쿨러는 CCCN의 通例上 어느 항에 적용하여 분류하는 가가 NC에서 검토되었다.

一 商品說明

‘콜러’란 포도, 풀럼 등各種 과일原液에 탄산수를 섞은 농도 4%의 저알콜의 음료성製品으로 ‘캘리포니아 콜러’란 同地域 포도원액으로 만들어진 음료제품을 일컫는다.

一 通例 1에 의한 分類

이 物品과 ‘와인 스프릿저’가 CCCN상 어느 號에 分류되느냐가 문제되었다. 즉, CCCN상 「22類」의 어떤 號에도, 예를 들면 맥주, 와인, 발효음료 또는 종류수 등의 어느 號에도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通則 1에 의거 분류할 수 없다.

또한 「20類」(과일쥬스)에도 본품이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느 號에 분류될까.

一 通則 2개 및 4에 의한 分類

뿐만 아니라 不完全 分解物品도 아니므로 이들 物品에 관한 分類原則을 규정한 通則 2개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품과 같은 混合物의 분류는 通則 3의 分류원칙을 적용한다라는 通則 2(4) 후단 규정에 의한다.

一 GRI 3개·4 및 4에 의한 分類

이 製品은 하나의 混合物로서 각각은 단지 이 混合物의 1개 부분을 가리킬 뿐이며, 이들 각각은 같은 정도로 製品을 대표하고 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通則 3개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製品의 주요 특성을 결정하기가 불가능하여 通則 3(4)의 적용도 할 수 없다. 이어 通則 3(4)의 적용에 있어서도 CCCN 「22類」(음료·알코올...)의 어떤 號도 고려할 만한 號가 없기 때문에 최종호 우선분류의 원

최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 GRI 4에 의한 分類

이리하여 결국에 通則 4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에 귀착한다. NC는 이 物品에 대하여 通則 4에 근거하여 CCCN 「2207」 (HS 2206)의 기타 발효음료들이 속하는 物品(例를 들면 사과酒와 별꿀술)에 가장 유사한 製品으로 분류하였다.

2. HS 分類上 紛爭例

〈事例 1〉 위스키 源液 木材桶 (OAK BARREL)

[1988, 관세심사청구 (76-7)]

- 爭點

甲論: 목재통은 内容物(원액)과 同一小號(HS 2208.30)에 분류한다.

乙論: 목재통은 HS 4416.00, 内容物 HS 2208.30에 각 別個로 분류 한다.

관 세 청

수 입 : 1246-1588

1975. 4.25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주류저장용 목준의 세번적용

1. 브랜디 저장용 목준 (LIMOASIN OAK CASKS: 350 ℥)에 브랜디 원액 (BRANDY CONCENTRATED)을 담아 동시에 수입신고된 경우,

2. 목준이 통상적인 판매 용기가 아니고 주류저장용 용기이며,
3. 상거래상 내용물과 일체로 거래된 것이 아니고 각기 독립된 상품으로 거래되었고,
4. 상거래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용기가 아닌 설비자산으로서 인정되는 경우는,
5. 브랜디 원액과 목준을 각각 분리하여 세번을 적용하기 바람.

- 商品說明

첫째, 수입 위스키원액을 담아 수입신고하는 목제통의 수입신고 당시의 상태는 크기가 높이 88cm, 직경 약 66cm, 두께 약 3cm이고 재질이 OAK인 목제술통으로서 내용물인 위스키원액의 숙성·저장기간인 약 5~12년의 표기와 주종, 용량, 제조자 등의 표시가 된 완전히 중고상태의 목제술통이며,

- 목재통의 제조과정

- 수령이 140~200년된 Dia 40cm 이상인 원목을 1년간 산에서 저장한다.
- 원목을 목재술통에 적합한 부분을 선별 제재하여 약 10일간 천연건조시켜 습도를 10~20%로 내리게 한다.
- 굴곡작업후 목재술통형으로 조여 묶고 내부의 굽음을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내면을 가볍게 태우는 조작을 하여 완성시킨다.
- 완제품은 원목 기준하여 10%만이 제품이 되므로 목준값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크다.

※ 資料：日本 「양조협회지」 제60권, 1965.

둘째, 위스키 원액의 숙성·저장용 목재술통인 OAK BARREL의 기능과 용도를 보면 주발효후 또는 증유후의 유액을 OAK BARREL에 넣어 약 5년 내지 12년 또는 최장기 30년간 밀폐시켜 숙성·저장시키면 OAK BARREL의 목재성분, 향과 증류원액과 상호 화학반응 Breathing을 통하여 대기중 산소와 상호결합, 치환반응을 일으켜 위스키 본래의 색깔과 향미를 내고 강한 알콜농도를 순화시키게 되며 (일본 양조협회지 1965년 제60권 제8호 및 일본 위스키 박물관지 1979.5. 15) 이렇게 숙성이 완료된 후 위스키원액의 본래의 맛과 향미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재술통에 담겨진 상태로 한물품으로 거래가 되므로 목재통은 포장용기와 운송용기의 기능을 함께 하는 것이다.

- 기능과 용도

- 목제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향미나 성격이 만들어낼 수 없는 주류-위스키, 브랜드 등 대부분의 증류수와 과실주
- 주발효·증효후 또는 증류후의 유액을 목재술통에 넣어 저장하는데 이들은 단순한 저장과 달리 저장기간중에 목준의 재질의 성분이 용출하여 주류의 성분과 복잡한 반응을 일으켜 숙성이 진행된다.
- 증류액의 향미가 조잡하나 이것을 목재술통에 저장하면 비로서 숙성된 위스키가 되며, 극히 미량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당류나 바니린 등의 방향족화합물이 존재하여 그 향미에 크게 영향을 준다.
- 목재술통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고 직접 그의 향미의 형성

에 영향을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음이 확실해졌다.

※ 資料：前掲書 「양조협회지」

— 決定號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목제통인 OAK BARREL은 내용물인 위스키원액과 함께 저장, 운송 및 판매되는 성질의 물품이고 통상적으로 내용물과 포장용기가 별개의 물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목제통인 OAK BARREL은 용기의 기능인 내용물의 포장과 운송을 위한 기능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스키원액의 생산을 위한 주발효후 또는 종류후의 유액의 숙성과 저장을 위한 기능이 주기능이고 수입되는 목제통은 내용물인 위스키원액을 숙성·저장한 후 동 위스키원액과 함께 수입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5의 나호의 단서의 “포장용기로 재사용하기에 명백히 적합한 용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수입후 국산양주의 숙성·저장용으로의 활용은 중고자재의 재활용에 불과하고 본건 품목분류와 직접 관련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本品 목재술통은 甲論과 같이 내용물인 위스키원액 해당의 HS 2208.30에 분류한다.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다음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케이스, 악기케이스, 총케이스, 제도기케이스, 목걸이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

되어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에 분류한다. 다만, 용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事例 2〉 地球儀 (Globe) [관세심사청구 (74-4)]

一 概 說

〔 地球儀 〕

지구 표면의 상황을 나타낸 구체. 통상적으로 지축 (地軸) 을 연직 방향에서 $23^{\circ}27'$ 경사시키고 지축 둘레를 자유로이 회전할 수 있게 한 자오환 (子午環) 이 있다. 자오환 이외에 적도환 (赤道環) 이 달린 것도 있다. 지구의 표면은 다원추도법 (多圓錐圖法) 에 의하여 만들어진 배모양의 지도들이 구위에 붙여 모아져 있다. 구의 표면에는 경위도 (經緯度) · 수륙분포 · 지형, 그 밖의 지구 표면의 상태를 나타낸다.

〔 구조와 제작법 〕

지구의 주체는 금속 · 석고 · 종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속이 빈 구 (球) 이며, 이것이 북극과 남극의 부분에서 자오환이 서로 부착되고 지축 둘레를 자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완전원 (安全圓)

인 자오환(子午環)이 지주(支柱) 상의 지평환(地平環)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형태의 것과 반원인 자오환(子午環)이 직접 지주에 고정된 것이다. 자오환에는 적도에서부터 극까지에 90° 로 눈금이 되어 있다. 지구의 표면에는 보통 일정한 경도대마다에 작성된 배 모양의 지도편(地圖片)을 붙여 모아서 작성한다.

[지구의의 역사]

지구의는 지구구체설(地球球體說)이 제창되었던 고대 그리스와 그 과학을 계승한 중세 아라비아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구의는 1492년에 M. 베하임이 만든 지름 51cm의 금속제 지구의이며, 독일의 뉘른베르크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이 지구의는 기본적으로는 마르코폴로의 견문에서 상상된 카타이(中國)와 지팡그(日本)를 아시아의 동단(東端)에 표시하고 B. 디아스의 아프리카 항해결과를 넣어 아프리카를 희망봉에서 끝나는 대륙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나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도와 같이 유라시아의 동서 길이가 과대하게 되어 있다. 이 때부터 신대륙발견시대에 들어가 지구의가 많이 만들어져서 그 내용도 점차 정확하게 되었다. <鄭鳳日>

※ 資料：동아원색 世界大百科사전, p.598.

— 商品說明

청구물품은 두께 약 2mm, 직경 약 30cm의 판지제의 반구형(2개 조립하면 지구의)에다가 지도가 인쇄된 종이를 부쳐서 지표의 높이를 양각으로 부조된 기복의 지구의로서 철강제의 받침대, 경도표시를 하는 철강제 지구의테 및 반구형의 지구의를 운송의 편의상 미조립의 분해된 상태대로 수입된 지구의임.

- 爭點 (CCCN 과 HS 의 配列位置相異)

- CCCN 4905 : 인쇄된 (부조여부불문) 지구의
(다만, 부조된 (인쇄되지 아니한 것) 지구의는 CCCN 9021
에 분류)
- HS 4905 : 인쇄된 (부조되지 아니한 것) 지구의
(다만, 부조된 (인쇄여부불문) 지구의는 HS 9023에 분류)

- 決定號

CCCN 해설서 제 4905 호는 인쇄된 지구의는 부조된 것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CCCN 4905-0100 (무세) 호로 분류토록 하고 인쇄되지 아니하
고 부조된 지구의는 CCCN 9021-0200 (20 %) 호로 분류되게 되어 있어
청구물품은 부조된 지구의이긴 하나, 인쇄된 것이므로 CCCN (87 년도
시행) 분류체계에 있어서는 4905-0100 (무세)로 분류되었으나, H.S
해설서 제 4905 호는 부조되지 아니하고 인쇄된 지구의는 H.S 4905-
10-0000 (무세) 호에 분류되고 부조된 지구의는 인쇄된 것인지의 여
부에 관계없이 H.S 9023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HS
9023에 분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 관세율표

CCCN 「 4905 」		H S 「 4095 」	
번 호	품 명	번 호	품 명
4905	지도 · 해도 기타 이와 유사한 차트 (제본한것 · 벽걸이 용의것과 지 형도를 포함한다)와 지 구의 및 천구의 (인쇄 한 것에 포함한다)	4905	지도 · 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 (제본한것 · 벽걸이용의것 · 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에 한한다).
10		4905.00.00	1. 지구의
01.00	* 지구의와 천구의	4905.9	2. 기타
		4905.91	가. 책자로 된 것
02.00	* 지도와 해도	4905.91.10.00	지도와 해도
03.00	* 기타	4905.91.90.00	기타
		4905.99.00.00	나. 기타

- 관세율표 해설서

• CCCN 해설서 (일부발췌)

- ① CCCN 4905 - 지도, 해도 기타 이와 유사한 차트 (제본한
것, 벽걸이용의 것과 지형도를 포함한다)와 지구의 및 천

구의 (인쇄한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 (a) 지도 또는 도면을 단순히 부수적으로 합유하고 있는 서적 (제 49.01 호)
- (b) 수제의 지도, 도면 등과 이들의 사진복사물 (제 49.06 호)
- (c) 완성된 지도, 차트 또는 도면으로서 만들어지지 아니한 항공측량도 또는 지형사진 (지형학상 정확성 여부를 불문한다) (제 49.11 호)
- (d)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의 특정산업, 관광 또는 기타의 활동, 철도망 등을 적당한 도해로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략적인 지도 (제 49.11 호).
- (e) 장식을 목적으로 지도를 인쇄한 스카프, 손수건 등의 직물제품 (제 11 부)

- (f) 인쇄되지 아니하고 부조된 지도, 설계용, 지구의 및 천구의 (제 90.21 호).

② CCCN 9201 - 교육용·전시용 기타의 실물설명용에만 적합한 기기와 모형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주로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 (1)
- (2)
- ⋮
- (9) 기복지도 (지방·도시·산악 등) · 기복도시 계획도 · 기복지구의 및 천구의 (인쇄 이외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에 한한다)

• HS 해설서 (일부발췌)

① HS 4905 - 지도·해도 또는 이와 유사한 차트 (제본한 것·
벽걸이용의 것·지형도 및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
에 한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 (a) 지도 또는 도면을 단순히 부수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서적 (제 49.01 호)
- (b) 수제의 지도, 도면 등과 이들의 카본복사 및 이들의 사진복사물 (제 49.06 호)
- (c) 완성된 지도, 차트 또는 도면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항공측량도 또는 지형사진 (지형학상 정확성 여부를 불문한다) (제 49.11 호)
- (d)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의 특정산업, 관광 또는 기타의 활동, 철도망 등을 적당한 도해로 표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략적인 지도 (제 49.11 호).
- (e) 장식을 목적으로 인쇄된 지도가 있는 스카프, 손수건 등의 직물제품 (제 11 부).

② HS 9203 - 실물설명용 (예: 교육용 또는 전시용)에만 적합한 기기와 모형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 (2)
- :

(10) 기복지도 (지방·도시·산악 등) · 기복도시계획도 · 기복지구의 및 천구의 (인쇄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 機械部分品의 分類例

가. 機械部品의 定義

一般的으로 部品이라 하면 完成機械를 構成하는 갖가지 要素를 지칭하고 있으나 完成機械를 構成하는 각 要素는 機能에 따라 또는 加工方法이나 使用形態, 組立段階 등에 따라 그 類型이 多樣하기 때문에 部品의 定義를 一律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部品이란 그 自體가 서어비스를 創出할 수 있는 獨立的인 機能을 갖지 못하고 다른 部品 또는 構成品과의 結合을 통하여야만이 그 機能을 발휘할 수 있다. 完製品의 각 機種은 무수한 部品의 結合에 의해 構成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든 完製品을 分解하면 각기 部品과 細部 部分品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部品은 完製品을 生產하는 過程에서 素材부터 最終 加工段階인 組立段階 이전까지의 모든 中間生產物이다.

機械部品은 英語로, Parts, Components, Units 등으로 表記되어 있다. ① Parts는 機械要素를 최대한으로 分解할 경우의 最小單位이며 이와는 달리, ② Components는 概念上으로는 Parts와 類似하나 機械要素의 最小單位라고만은 볼 수 없고 2個以上의 Parts로도 構成될 수 있다. ③ Units는 몇개의 部品이 結合되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機能을 갖는 것이 一般的이다. 통상적으로 ④ 組立部品 (assembly)

이라는 말도 使用되고 있는데 이는 部品의 概念을 떠나 部品들의
結合體로서 獨自的인 機能을 갖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엔진의 피
스톤 部分은 피스톤링과 피스톤, 피스톤핀, 커넥팅로드 등으로 구성되
어 실린더내의 行程運動을 이루게 할 수 있는 機能을遂行한다. 따
라서 피스톤링, 피스톤핀, 커넥팅로드 등은 Parts라 할 수 있고 엔
진의 Component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들 Parts들은 여러개가
結合하여 피스톤을 이루고 피스톤 이외의 크랭크샤프트, 실린더헤드,
링기어, 실린더, 실린더라이너 등이 모여 組立部品이라 칭하는 엔진이
構成된다. 이와 같은 部品의 多樣性과 異質性 때문에 部品의 分類를
위해서는 部品의 정확한 定義와 그에 따른 分類基準이 主要한 問題
로 대두된다.

나. 部品의 分類體系

(1) 一般商品學

一般商品學에서는 後述과 같이 部品의 分類를 ① 構成形態, ② 業
種, ③ 製造工程, ④ 機能, ⑤ 組立段階, ⑥ 投入素材, ⑦ 流通過程을 基準
으로 分類하거나 機器(機械器具)를 기능에 따라 本機와 그 部分
品을 大別하여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있다.

① 機械要素

- A. 축받이 (베아링)
- B. 체인
- C. 기어 (톱니바퀴)
- D. 벨
트·변속기
- E. 潤滑장치
- F. 밸브
- G. 스프링
- H. 나사·헬리셔어트
- 파이프조인트 (管接手)

② 動力 利用機械 및 이들 部分品

A. 内燃機關 B. 가스터어빈 · 過給器 C. 제트엔진 D. 로켓
엔진 E. 보일러 F. 증기원동기 G. 水力機械 H. 空氣機械
I. 油壓機器

③ 工作機械 및 이들 部分品

A. 금속 공작기계 B. 塑性加工機械 C. 熔接機 D. 工具 ·
다이스 · 로울

④ 產業機械 및 이들 部分品

A. 광산 · 選礦機械 B. 건설토목기계 C. 荷役 · 運搬機械 D.
화학공업용 장치 E. 冷凍機, 空氣調和機器 F. 재봉틀 G.
섬유기계 H. 農業用기기 I. 수산기계 J. 기타산업기계

⑤ 精密器機, 計測器機 및 이들 部分品

A. 광학기기 B. 시계 C. 계측기기 D. 시험기 E. 分析用
器機 F. 측량용기기 G. 과학기기

⑥ 사무용기계 · 기구 및 이들 部分品

A. 데이터처리기계 B. 계산기, 회계기 C. 등사기, 복사기,
사무용 인쇄기, 마이크로 사진기 D. 시간기록기계 E. 연락
기계 F. 타이프라이터 G. 금전등록기 유사기계 H. 파일링
시스템용기구 I. 우편기계 J. 기타의 사무용 기계 · 기구

⑦ 電機 · 電子器機 및 이들 部分品

⑧ 운수 · 운반기기 및 이들 部分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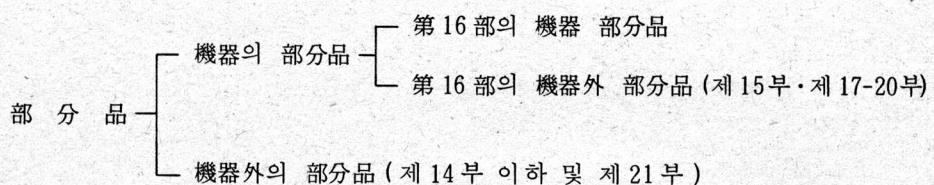
⑨ 兵器 및 이들 部分品

⑩ 宇宙 開發器機 및 이들 部分品 등

※ 資料 : 유봉노, 「商品大百科辭典」 同志社, 1972. 3.25.p.523.

(2) HS·CCCN 상품학

HS(CCCN도 거의 같음)上部分品의 分類體系는 ① 機器(제 15부~제 20부)의 部分品 ② 同機器以外(제 14부 이하 및 제 21부)의 部分品으로 区分되고 나아가, 機器는 ① 第 16部의 機器部分品(협의의 기계부분품) ② 第 16部以外(제 15부·제 17부~21부) 機器의 部分品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부분품은 特掲部分品과 非特掲部分品으로 연 구의 편의상 나누어 볼 수 있다.



(3) 機器의 部分品과 同機器外의 部分品

- HS上 機器의 部分品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HS 부	品 目
第 15 部	卑金屬과 그 製品 該當機器의 部分品
第 16 部	機械類·電氣機器 및 이들의 部分品과 녹음기 등의 部分品
第 17 部	차량·항공기·船舶과 수송기 關聯品 等과 이들의 部分品
第 18 部	光學機器·사진용기기·측정·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기기·시계·악기 및 이들의 部分品
第 19 部	무기·총포 및 이들의 部分品
第 20 部	雜品(가구·조명기구·조립식건축물 등)該當機器의 部分品
其 他	第 39 類·第 40 類·第 42 類·第 43 類·第 59 類·第 68-71 類 製品으로서의 部分品(p-60 參照)

— HS 上 同機器外의 部分品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HS Code	
3925.30	셔터 · 블라인드 (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部分品
3926.90	기 타 <20.00> 부채 · 핸드스크린 (機械式이 아닌 것에 한한다) 과 이들의 살 및 빗자루 (살 및 자루의 部分品을 包含한다)
4416	목제의 통 · 배럴 · 배트 · 텁 및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部分品
4421.90	기 타 <50.00> 부채 · 핸드스크리인 (機械式이 아닌 것에 限한다) 이들의 살 및 자루 (살 및 자루의 部分品을 包含한다.)
6117	衣類 및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6217	其他의 製品으로 된 의류부속품 및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
6406	신발류부분품,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 및 이와 類似한 物品, 각반 · 레깅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部分品
第 65 類	모자류와 그 部分品
6507	모자용의 밴드 · 내장재 · 커버 · 해트파운데이션 · 헤트프레임 · 챙 및 턱끈
7011	밀폐되지 아니한 유리제의 외피 (벨브와 튜브를 包含한다) 및 이들의 部分品 (전구 · 음극선과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에 限한다)

다. HS 상 기계부품의 分類方法

일반적으로 事案의 問題解결을 위하여 ① 狀況分析 → ② 原則 적용 →

③ 特例적 용→④ 條理적 용 등 論理的 順序를 따르듯이 HS·CCCN 상 기계 部分品의 配列 · 所屬의 확인도 상황분석에 해당하는 ① 物品確認 단계 (單一 · 복수 · 完成品 與否) → ② 5 個型의 號 확인 단계 (HS상 部分品의 揭註形態검토) → ③ 原則的 分類단계 (分類原則적 용) → ④ 特例的 分類단계 (例外규정적 용) → 조리적 용에 해당하는 ⑤ 通則적 용 단계 등 5 단계 순서로 이루어진다. 즉, 기계 部分品의 分類方法은 다음 圖表와 같이 要約된다. 이와 같은 총론적 체계적인 分類方法의 提示는 HS상 部分品의 構成형태, 分類原則, 分類指針을 쉽게 理解케 함으로 각자 部分품의 分類시마다 필요한 규정들을 原初的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행정적 비능률을除去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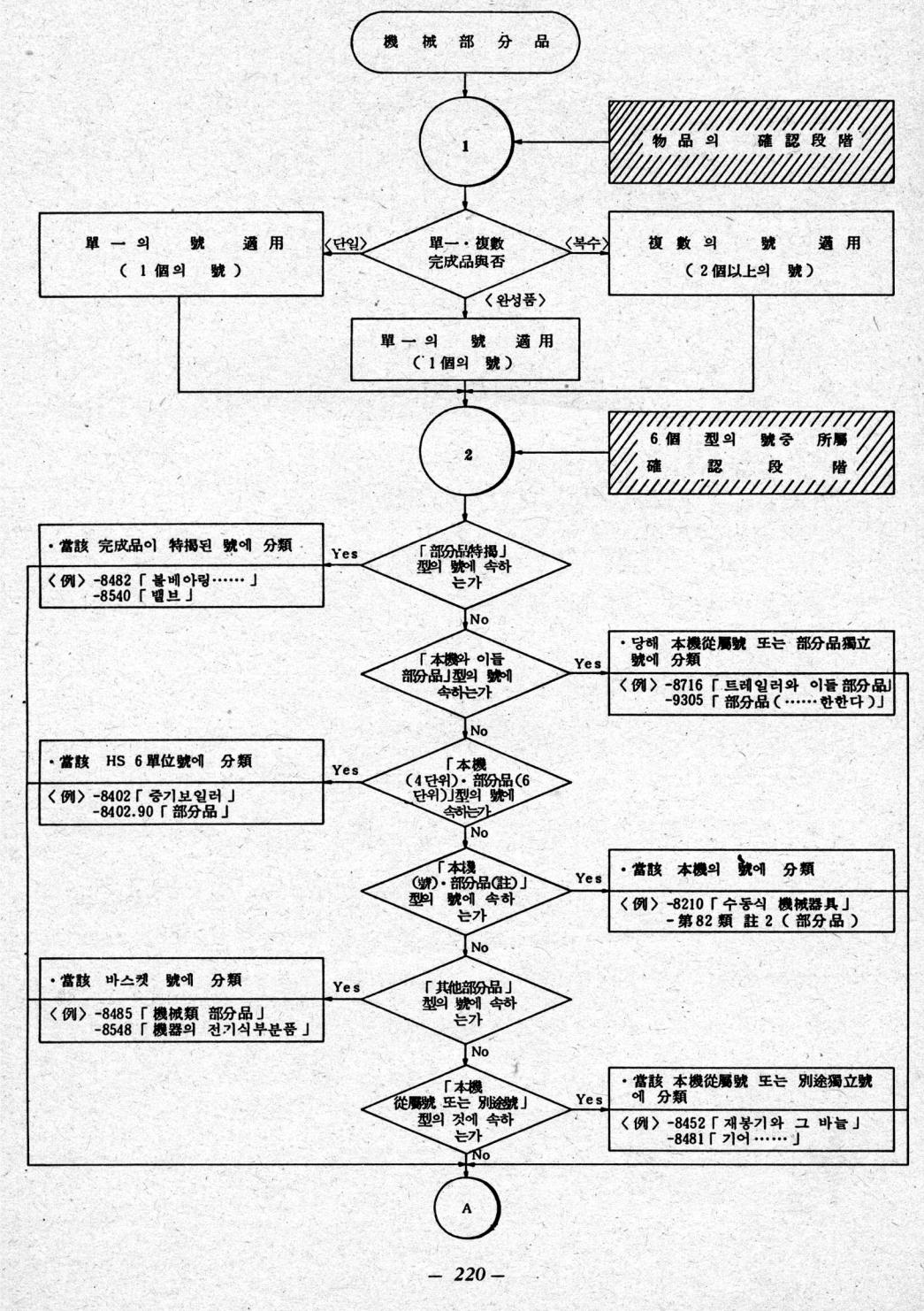
4. 實行關稅率表와 HS의 補助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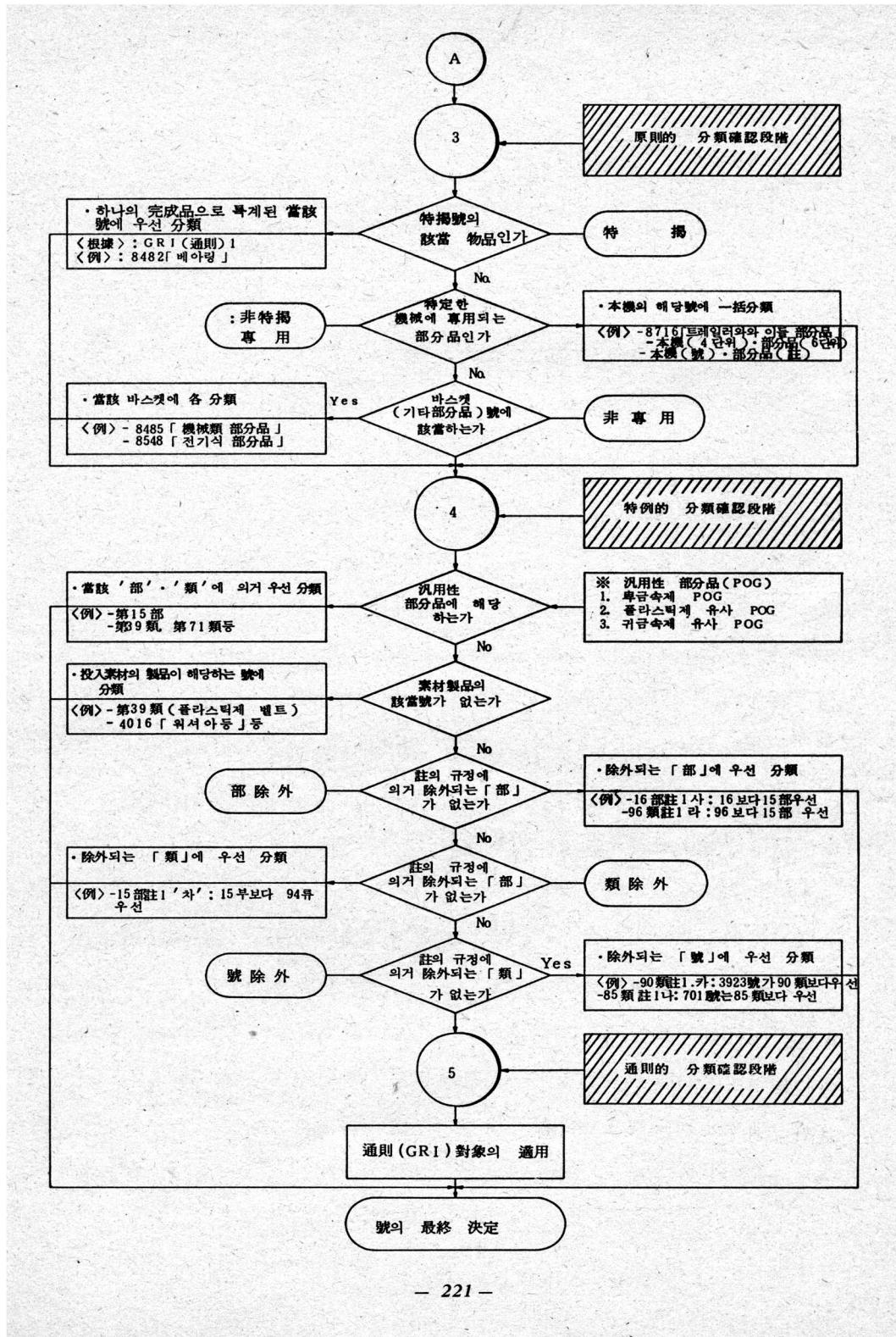
가. 統合關稅 · 統計品目表 (CTS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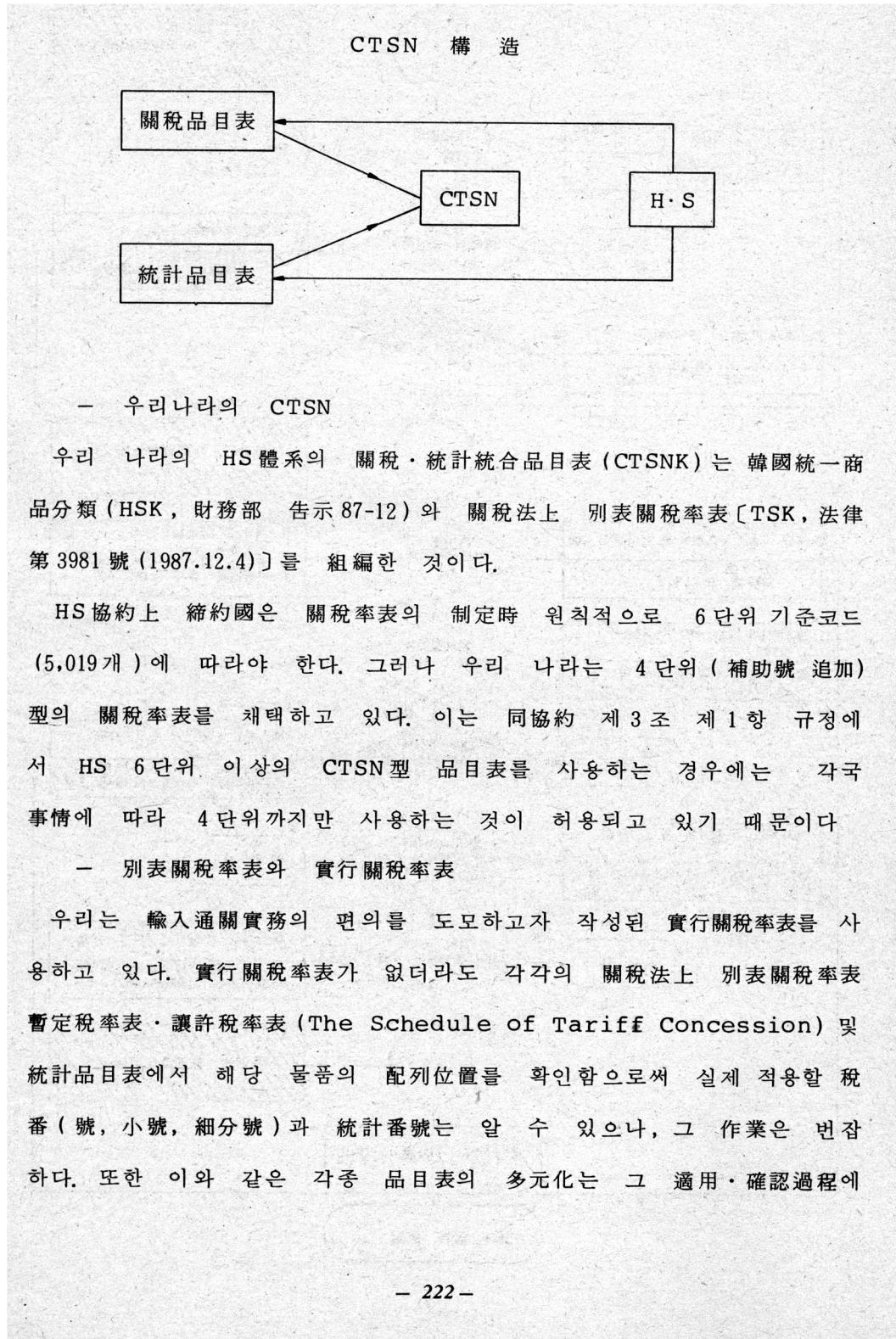
一 概 念

CTSN(Combined Tariff Statistical Nomenclature)이라 함은 輸入物品의 稅關通關을 위하여 법적으로 요구하는 關稅品目分類表 (Custom Tariff Nomenclature) 와 법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으나 輸出入統計資料의 蒐集을 목적으로 制定한 統計品目分類表 (Statistical Nomenclature) 를 統合 (Integrating) 한 品目分類表를 말한다. CTSN이 HS協約 § 3-a의 (i) 내지 (iii)에 일치하면 締約國은 그 關稅品目分類表上 HS 小號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HS 상 機械部分品의 分類接近圖







착오 발생의 요인이 된다. 따라서 實行關稅率表는 실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HS 코드 番號別로 각종 자료를 정리하여 必要事項을 연결·수록함으로써 實務遂行의 正確과 便宜를 도모하고 있는 品目表라 할 수 있다.

- 稅番과 統番

關稅率과 點線으로 연결되어 있는 품목은 稅目 (關稅項目 : Triff Item) 으로 본다. 稅目에 부여된 코드番號를 稅番이라 한다. 統番은 關稅率表上 5 單位 이하의 번호로서 稅率과 연결되지 아니한 번호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關稅法 別表上 關稅率表는 원칙적으로 關稅率과 New CCCN 體系의 코드番號 (4 단위) 및 品目을 점선없이 연결시킨 形態를 가졌으며, 예외적으로 4 次元의 補助號 (例 : 1次元 : 1, 2 …, 2 次元 : 가, 나, …, 3 次元 : (1), (2)…, 4 次元 : (가), (나)…) 및 細分品目과 關稅率을 연결시키고 있다. 따라서 同 別表 關稅率表上 稅番은 HS의 4 單位, 同 4 單位와 1 次元, 2 次元, 3 次元 및 4 次元의 補助號 등으로 조합된 5 種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實行關稅率表는 HS 體系의 코드 4 … 10 單位의 品目과 關稅率을 연결시킨 형태이므로 同 關稅率表上 稅番은 4 單位 … 10 單位로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兩關稅率表간의比較

別表關稅率表			實行關稅率表			Description			稅率表			
品目番號	品名	稅率	品目番號	品名	稅率				기본	감정	협정	單位
0306	갑각류 (.....)	20	0101	말·당나귀·노새와 벼새	Live horses, asses, mules and hinnies	20						
0307	연체동물 (.....) 과 수생무척추동물 (.....)	20	0101.11	말	말	말	말	말				
			0101.19	종마	종마	종마	종마	종마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1.	굴	20	0307.10	1. 굴	1. Oysters	1. Oysters	1. Oysters	1. Oysters	20			
			0307.10	10	산것·신선 또는 냉장	Live, fresh or chilled	Live, fresh or chilled	Live, fresh or chilled				
			0307.10	1010	한것 굴치페	oyster spat	oyster spat	oyster spat				
						
2.	가리비과의 조개 (.....)	20	0307.20	2. 가리비과의 조개 (.....)	2. Scallops, (.....)	20						
			0307.21	0000	산것·신선 또는 냉장	Live, Fresh or Chilled	Live, Fresh or Chilled	Live, Fresh or Chilled				
			한것	한것	한것	한것	한것				
3.	홍합(미틸루스 종·페르나종)	20	0307.30	3. 홍합(미틸루스종· 페르나종)	3. Mussels (Mytilus spp., pera spp.)	20						
						

別表關稅率表			實行關稅率表			Description			稅率表		
品目 番號	品 名	稅 率	品目番號	品 名	稅 率	品目番號	品 名	稅 率	基本	複計	合計
			0307.31 0000	산것·신선 또는 냉장 한 것	7 . 기 타	7 . 기 타	Live,Fresh or Chilled	Live,Fresh or Chilled			
7 . 기 타 가·산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1) 연체동물		20	0307.91 1	가·산것·신선 또는 냉 장한 것 (1) 연체동물	7 . 기 타		7 . Other				
			0307.91 11	백합			가.Live,Fresh or Chilled (1) Molluscs	kg	20	kg	kg
			0307.91 1110	치파			Hard Clams	kg		kg	kg
			0307.91 1190	기타			Hard Clam Spat	kg		kg	kg
			0307.91 1200	전복			other				
(2) 기 타		30	0307.91 90	(2) 기타			Abalone	kg			
			0307.91 9010	성게			(2) other		30		
			0307.99	나.기타			Sea-urchins	kg			
나.기 타			0307.99 1				나.other				
(1) 냉동한 것 (7) 연체동물		20	0307.99 11	(1) 냉동한 것 (7) 연체동물			(1) Frozen (7) Molluscs	kg	20	kg	kg
			0307.99 1110	새조개			cockles				
(나) 기 타		30	0307.99 19	(나).기 타			(나) other		30		
			0307.99 1910	해삼			Sea-cucumbers	kg			
							HSK	C.T.S.N.K			
							T.S.K				

나. HS의 補助資料

— 概 要

HS(CCCN도 마찬가지)는 모든 貿易商品(또는 물품)을 어떤 하나의 號(小號)에 통일적으로 분류하도록 작성되었다(一意性原則의 確保). 이에 따라 統一된 해석과 적용을 위하여 이들 품목표에는 同表의 전체를 커버하는 分類原則을 규정한 「GRI(통칙)」과 부분 또는 전체에 적용되는 分류원칙을 규정한 部·類·小號의 「註」를 설정하여 각號(小號)의 내용을 가능한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號의 分類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品目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補充資料를 出刊하여 사용하고 있다.

어떤 論者는 이들 補助資料 가운데 解說書와 品目分類意見要約書를 HS 또는 CCCN의 구성요소로 표현하고 있다.

- HS(또는 CCCN) 解說書(Explanatory Notes)
- 品目分類意見要約書(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
- 알파벳 인덱스(Alphabetical Index)
- HS·CCCN·SITC 相關表
- 商品品名目錄(Commodity Descriptor List)
- 細目인덱스(Detailed Index)
- 各國 品目分類例規(7차 잠정 HS 위원회, 美國제안)
- HS 解說書

解說書란 品目表(HS 또는 CCCN)協約의 일부는 아니지만 CCC(關

稅協力理事會)가 승인한 HS(또는 CCCN)의 品目分類에 관하여 公的인 해설을 한 설명서로서 品目分類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分類方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HS(CCCN도 마찬가지)의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 各號(또는 小號)의 대상을 설명하고 關聯品目的技術的인 說明·外樣·特性·製造方法과 用法, 실제적인 구별방법들을 說示하고 있다.

〈例〉

HS 解說上 說示 例

區分 內容別	HS 原 典		HS解說書(說明例)	備 考	
	해당번호	品 名			
1.號(小號) 의 정의· 범위 說示	2902	환식 탄화수소	-순도 96% 이상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젠과 벤졸의 구분은 純度 기준에 따른다는 說示를 하고 있음. ◦ 미국은 TSUSA에서 양자 구분 않고 있음. 	
	2902.20	-벤젠			
	2707	고온 콜타르의 종류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방향족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순도 96% 미만의 것		
	2707.10	-벤졸(또는 벤젠으로 칭함)			
2.號(小號) 의 포함규정	8528	텔레비전 수상기(영상모니터와 영상프로젝트를 포함하며, 라디오 방송수신기음성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동일하우징내에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포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분류기준 제시 ◦ 8528 포함되는 물품(상품)과 제외품을 열거 	
			1) 각종의 가정용 텔레비전수상기 2) 항공기 유도미사일로켓 등에 설치하는 텔레비전기기 3) 공업용의 텔레비전기기 4) 비디오 프로젝트 5) 팩시밀리 무선전송기기 등		

區分 內容別	HS 原 典		HS解說書(說明例)	備 考
	해당번호	品 名		
3.號(小號) 의 제외규 정	10	- 칼라텔레비전 수 상기	〈제 외〉 1)비디오기록기 및 비디오 재생기 (제 8521 호)	
	20	- 흑백텔레비전 수 상기 또는 단색 텔레비전 수상기	2)제 8528 호의 텔 레비전 수상기등 을 갖춘 특수용 도차량(일반적 으로 8705 호)	

- BTN 해설서, 1955, 全 3 卷 英佛文 출판
- HS 해설서, 1985. 5. 6 全 4 卷 英佛文 출판